民間主導防衛

Civilian - Based Defence

Gene Sharp 著
韓 昇 助 監譯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著者序文/韓國語版에 부쳐●

CBD이론의 효용성과 적실성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1990년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란 著述의 영문판이 간행된 이후 많은 변화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소련이 소멸되고 그 나라 안의 共和國들이 독립하였다. 東西冷戰동서냉전이 끝난 후 유럽 안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東西獨동서독이 극적으로 재통일되었다.

이러한 것이 몇가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또 한편에는 더 냉정해야 할 이유도 있다. 전 Yugoslavia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유혈전쟁으로 쪼개졌으며 Bosnia와 기타 지역의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잔학행위를 겪어야 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분쟁에서 UN에게 군사개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비록 냉전은 끝났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이 세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되지 못해왔다. 1992년 한 해만 해도 29개의 큰 전쟁들이 일어난 것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記錄기록이었다. 전쟁사망자의 수도 지난 17년동안 최고의 숫자를 기록했다. 1992년에 적어도 여섯개의 쿠데타가 성공하였으며 10개이상의 쿠데타기도가 있었다. 이것만 보아도 세계적으로 防衛방위나 安全保障안전보장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은 매우 희망적이나 또 어떤 것은 너무나 해결되기 힘든 事件사건들이어서 우리의 안전보장이나 방위에 대하여 종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가까운 將來장래에는 어떠한 유형의 안보위협이 발생할 것인가.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는 시기에 와서 전쟁억지나 방위를 어떻게 유지하며 또 강화할 수 있겠는가. 특히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었거나 지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던 나라가 강력한 군사시설을 구축하려다가 權力慾권력욕에 사로잡힌 軍閥군벌의 가혹한 지배를 겪게 되는 함정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는가?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쿠데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변화하는 정책에 좌우됨이 없이 보다 더 자주적인 방위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또는 그 외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 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전쟁억지와 방위를 위해서 직접 나라의 사회·정치·경제적 힘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것이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민간주도의 방위는 외부침략이나 국내의 권력탈취를 저지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보이콧, 대중의 비협력과 같은 사회·경제·정치적 또는 심리적 무기들을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이 지난 몇년동안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는데 특히 발틱주변국가들에서 그러하였다. 우리는 이 머리말에서 몇가지 사건의 진전들을 약술해 보려고 한다. 민간주도방위의 정책이 오늘의 문제를 다루는데 얼마나 직실성을 갖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소련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최근의 투쟁에서 Estonia, Latvia, Lithuania 사람들은 테러나 게릴라전술의 사용을 거부하였고 대신 다

양한 시민적 비폭력방법을 활용하였다. 때로는 독립적인 Baltic정부 기관들까지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조직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예를 든다면 1991년 1월에 Estonia 정부관리와 人民戰線의 회원들은 市民不服從시민불복종이라는 이름의 저항계획을 꾸며냈다. 거기서 소련군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 계획은 주민들에게 에스토니아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명령을 정당성이 없는 명령으로서 외면하게 만들었다. 소련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모든 기도에 불복종·비협력의 자세를 유지할 것. 소련당국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또 가능하다면 거리의 이름, 교통신호, 집주소 등을 치워버릴 것. 무분별한 행동을 할 정도로 흥분하지 말 것. 소련당국의 활동을 문서나 필름으로 기록에 남기며 그런 기록을 모든 가능한 통로를 통하여 보관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배포할 것. Estonia의 정치 사회조직체의 기능수행을 보전한다. 그에 대한 지원조직을 만들거나 중요한 장비를 감추어주는 등의 방법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적절한 시기에 대중활동을 실천할 것. 잠재적 적대세력과도 창조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 등등.

Lithuania에서는 1991년 1월 Landsbergis정부가 소련군의 공격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였다. 소련군대가 vilnius T.V.塔탑에서 14명을 사살했고, Lithuania 전역의 몇몇 빌딩을 접수하려고 들자 Lithuania의 最高會議최고회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소련군이 완전 점령한 경우 모든 정부기관과 그 정권에 봉사하는 개인들은 점령군에 협력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도 불복종·비폭력저항 내지 정치 사회적 비협력의 원칙들을 <u>독립투쟁의 주요 수단으로서</u> 준수하도록 지시받았다. (밑줄은 필자)

Latvia도 소련군 공격을 예상해서 민간주도방위 정책을 준비하였다. 1991년 6월 Latvia 최고회의는 비폭력 방위센터의 설치를 인준하였다. 그 센터가 기초한 Latvia 공화국 비폭력방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

이 선언하고 있다. "비폭력방위는 Latvia독립을 지지하는 모든 주민을 비폭력투쟁으로 동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다" 그의 기본원리는 절대적 비협력이며 적대세력의 타협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련측이 지원하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국가기관·사설단체·개인들이 무엇을 하며, 나라가 완전히 점령되었을 때는 어떻게 저항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상세한 지시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시와 권장사항들이 19921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소련내부 쿠데타 시기시에도 만들어지고 배포되었다. Lithuania나 Estonia, Latvia의 정부와 정치단체들도 신속하게 그 반란에 대항하여 비협력과 거부방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쿠데타가 생각보다 빨리 실패하였기 때문이 저항이 더 지속될 필요가 없어졌다.

독립적인 발트연안국가의 정부들이 취했던 이러한 행동들은 위기에 대비해서 민간주도의 방위를 실천한 최초의 공식적 조치였다. 민간주도방위가 발달한 곳에서는 이러한 정부결정이 조직된 저항의 하위구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고, 또 비협력과 저항의 기술로 훈련된 주민들이 있음으로써 유효할 수가 있다. 발틱3국에서는 민간주도방위를 위한 제도적 기초가 1990년과 1991년까지만 해도 발달되어 있지 못했다. 앞으로 발틱국가들이 초기적 민간주도방위의 활용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1991년 소련에서 強硬派강경파들에 의한 쿠데타기도가 실패했다는 것은 민간주도방위가 내부로부터의 공격도 방어해 낼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소련의 부통령, 내각총리, 국방장관, KGB의장, 내무장관 등이 주도했던 쿠데타는 Gorbachev 대통령을 내쫓고 新스탈린체제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다. 그 쿠데타세력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자원이 막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쿠데타는 대중의 공공연한 반대와 소련군의 공개적인 비협조 때문에 실

패하고 말았다. 그것이 계획되지도 조직화되지도 않았지만 (이런 점에서 사전계획과 훈련을 요구하는 민간주도방위에는 별로 모범이 되지 않지만) 민간인들의 저항이 쿠데타세력이 내세우는 正當性정당성주장을 불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안의 반대의견을 확산시키는데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의 저항행태에 관한 위와 같이 劇的극적인 사례는 오래되었지만 흔히 잊혀져 있었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타난 사례들이다. 그것은 외부나 내부에서 오는 잠재적인 공격을 걱정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 이 책 속에서 다루어진 사례들과 함께 이런 사례들도 장차 강력한 새 방위 형태로 간주될 것이다.

그 연구, 조사, 분석, 계획, 훈련의 확장을 통하여 민간주도방위 정책은 외국군대의 침략이나 점령이나 내부의 권력탈취를 억제하고 좌절시키는 국가적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 本書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또 환영한다.

民間主導防衛의 한국어판은 지난 수년동안의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여 본래의 영어판을 약간 수정 보완해서 간행된다. 우리는 高麗大學校 平和硏究所長 韓昇助 교수와 그 동료들에게 심심한 謝意사의를 표하고 싶다. 韓博士님은 정력적으로 또 참을성있게 이 연구분야의 어려운 용어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주었으며 그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그의 도움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1. Ruth Leger Sivard,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93 (Washington, D. C.:World Priorities, 1993), p. 20을 보라.

2. Data on coups taken from Reuters wire service reports for

1992.

3. Steven Huxley, "Civilian Disobedience and the Defense Estonia," unpublished article(February 21, 1991), p. 3에 인용되어 있음.

●著者序文●

민간주도방위라는 저술은 민가주도방위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알찬 지침서를 만들 목적으로 쓰여졌다. 민간주도방위란 국내의 권력탈취나 외국의 침략등을 억제하고 방어하는데 있어서 군사적 무기를 대신하여 사회자체의 힘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무기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무기들이며 일반국민이나 사회기관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 저술의 命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내적 권력탈취나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간주도의 방위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재권력이나 억압행위가 비폭력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에 의하여 방지 내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비협력과 거부활동을 통하여 방위하고자 하는 사회를 공격자들로부터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그들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하며 아울러 공격자들 측의 행정 공무원이나 군부대까지지도 믿을 수 없게 만드려는 것이다.

本書를 간행하는 목적은 앞으로의 연구, 조사를 위해서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그

정책의 일부가 기존 방위정책 속에 흡수·통합되어 왔었다.

나의 목표는 한편, 우리의 방위문제에 보다 현명한 해답을 바라는 국민대중의 관심을 고무하는 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주도방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위분석가, 안보전문가, 정부관리, 군대장교, 비폭력전략가, 학자와 학생들, 임의단체의 회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지식, 개념, 선택방안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었다.

본 저술은 내가 앞서 간행했던 『유럽을 정복할 수 없게 하려면』(*Making Europe Unconquerable*)이라는 책과는 달리 세계의 일부부만이 아닌 많은 나라들과 관련된 광범한 안전보장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정치와 독립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민간주도방위 책의 출간은 많은 다른 나라들의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의 정치, 경제적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어떤 나라도 외침이나 국내의 권력탈취의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어질 문제들이다. 광범위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므로 각기 자신의 전통이나 안보위협, 군사적 선택을 안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민간주도방위가 그 특정 사회와 어떠한 타당성을 갖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본래 이 책은 몇년 전에 Princeton대학 출판부의 Sanford Thatcher가 권유했던 것이었다. 그의 격려와 예리한 충고, 비판적인 논평, 지원과 인내가 끝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Thatcher씨가 대학 출판부를 떠난 후에는 사회과학 편집책임자 Gail Ullman부인이 원고를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유능하게 보살펴 주었다. 또한 Chanles Ault씨도 훌륭한 편집상의 조언을 해주었다.

지난 해 동안 내가 이 책을 준비하는데 Albert Einstein財團의 매우 유능한 Bruce Jenkins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幸運이었

다. 그의 연구열, 예리하고 실질적인 비판과 충고, 편집상의 기술등의 도움덕분에 이 책을 훨씬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 책의 간행을 가능케 해준 Albert Einstein재단과 그 기증자 및 사무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이런 기관의 폭넓은 지원으로 인하여 침략, 독재, 집단살인, 억압과 같은 폭력을 대신할 수 있는 비폭력투쟁의 성격과 그 잠재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걸쳐 우리는 비폭력투쟁의 사용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목격하였다. Tallinn으로부터 Nablus로, Rangoon으로부터 Santiago로 Pretoria에서 Prague, 북경에서 Berlin으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 독립, 정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비폭력 투쟁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을 이해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문적 연구와 조사, 엄정한 평가, 고도의 전략적 분석 등이 필요하다. 이 책은 비폭력투쟁의 성격, 문제점, 잠재력에 관하여 저술되어야 할 많은 책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서들은 비폭력투쟁과 민간주도방위가 독재권력, 집단살인, 억압과 전쟁의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평가・사정하는데 기여해 줄 것이다.

1990년 1월 10일

Gene Sharp

Albert Einstein Institution

Cambridge, Massachusetts

●發行에 즈음하여●

Gene Sharp 교수의 「民間主導防衛」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명저이다. 이 점은 이 책이 이미 20개 국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말해준다.

책의 主題 자체가 時宜에 맞을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참신한 사실에 입각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서 독자에게 많은 참고사실을 제공해 준다. 민간주도방위의 논리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어서 방어문제에 관심있는 실무자와 연구자에게 크게 참고가 될 것임을 믿어마지 않는다.

이 책의 번역을 감수해 주신 韓昇助 교수와 번역을 직접 맡아주신 李相根, 朴炳一, 金煉喆, 白寅鶴, 洪敏植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1995년 8월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所長 朴 椿 浩

●民間主導防衛/次例●

第 1 章

戰爭전쟁 없이 하는 防衛방위

방어의 필요성

미래의 政治정치와 國際關係국제관계의 미래에도 확실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葛藤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國內的국내적 權力奪取者권력탈취자들 對外的대외적 침략자들에 대처하려면 효과적인 방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어떤 정치사회도 이러한 공격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이들에 대항하는 安保政策안보정책과 武器體系무기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 정책이나 무기체계는 전쟁억제와 방위라는 두 가지 임무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武器體系는 충분히 강력하고 잘 준비되어 있어서 국내의 權力권력 奪取탈취나 외부로부터의 侵略침략을 능히 억지할 수가 있어야 한다. 抑制억제(deterrence)의 목표는 潛在的잠재적 侵略者침략자로 하여금 침략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치를 뿐이며 바라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침략을 방지하는 데 있다. 抑制억제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說得설득(dissuasion)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과정에는 合理的說得합리적설득과 道德的도덕적인 호소, 혼란조성,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 등과 같이 攻擊공격 意思의사를 포기케 하는 여러 방식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說得은 실패할 수도 있으며 어떤 억제수단도 抑制力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비록 抑制力이 실패하여도 선택한 무기체계는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또 다시 구제될 수가 있어야만 한다.

둘째로, 만약 억제책이 실패하는 경우라도 무기체계는 효과적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防衛방위는 문자 그대로 保護보호, 保存보존, 危險을 물리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방위에 사용하는 수단은 상대방의 공격을 無力化무력화시키고 中斷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방위하고자 하는 사회를 파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防衛能力방위능력이란 공격자를 물러나게 하거나 패배시켜서 前부터 누려오던 사회의 平和평화, 自立자립, 선택된 憲政體系헌정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정부들도 여태까지 오로지 군사적 수단만이 외국으로부터의 侵略침략을 抑止억지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抑止나 防衛방위를 위해서 軍事的군사적 政策정책이 적합한 것인가 또한 억지와 방위의 임무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深刻性심각성등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려 왔다. 어떤 極端的극단적 見解견해는 國際的국제적 危機위기에 직면할 때는 오로지 강력한 軍事的군사적 手段수단만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그런 수단들을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政治的정치적으로나 道德的도덕적으로나 너무 無責任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극단적인 平和主義者평화주의자의 見解는 전쟁이란 그 어떤 政治惡정치악보다도 더 나쁜 것이며 개인은 물론 전체 사회가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준비하는 데 참여함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종류의 극단적인 견해들외에도 折衷的절충적 見解나 여러 다른 見解들이 있다.

이 책은 그런 다양한 견해들 중에서 어느 한 견해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의 分析분석의 長點장점과 타당성에 대한 評價평가도 軍事政策군사정책의 좋고 나쁨에 대한 어느 한쪽의 견해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또한 "正當정당한 戰爭전쟁"과 "平和主義평화주의" 중 어느 한쪽의 주장에만 기울어져서도 안된다. 사실 위에서 본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들은 오늘날 政治的, 道德的으로 모두 不適切부적절하고 不完全불완전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무도 군사적 수단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군사적 수단에도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존재함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아무도 군사적 수단이 항상 目的達成목적달성에 성공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大量破壞대량파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패배도 언제나 가능함을 의식해야 한다.

現代현대 軍事技術군사기술의 엄청난 破壞力파괴력은 수많은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을 촉발하여 왔다. 그러나 그 시도들도 攻擊공격이나 破壞파괴를 예방·억제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방위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해 왔다.

어떤 사람은 군부대를 오로지 방어적인 형태로 재구성하자고 주장해 왔다. "防禦的방어적 防衛방위"(defensive defense), "非攻擊的비공격적 防衛방위"(nonoffensive defense) 또는 "非挑發的비도발적 防衛"(non-provocative defense)라고도 불리우는 이 접근법은 서유럽에서 발달되어 왔으며 스위스에서 오래동안 유지되어온 방위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스위스에 무기 및 전략계획도 전적으로 방어적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 있어서 침략자의 영토를 반격할 능력도, 준비도 갖추고 있지 않다.

여러 변형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런 접근법의 주장들은 군사력이 제한된 이동성, 기동성을 가지며 공격적 목표를 수행하는데 부적합이며 덜 파괴적인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예를 들면, 이들은 탱크보다는 對戰車武器대전차무기를 선호하고 장거리 폭격기나 로케트보다 단거리 전투기를 더 선호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防禦的방어적 武器무기를 사용하는 방위전략을 제안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이나 공격적인 작전 또는 反擊반격을 위한 계획이나 준비를 빼놓고 있다. 그처럼 防禦爲主방어위주의 軍備體系군비체계는 다른 나라에게 위협을 주지 않으므로 豫防예방 攻擊공격의 발생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독일에서처럼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사고방식들을 신뢰하여 왔다. 이러한 제안들은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도 없는 가운데 방위와 전쟁억지를 도와줄 수 있는 제안으로서 진지하게 검토받을 만하다.

"防禦的防衛방어적방위"에 관한 상세한 비판은 여기서 논하기 어렵기는 하나 그런 접근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戰爭擴大전쟁확대의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공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위적인 군사 조치들이 공격의 성공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면 공격력의 강도나 가혹성을 훨씬 더 강화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방어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방위 조치에 부족함을 느낄수록 보다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토록(그 능력이 있다거나 빨리 더 파괴적인 무기를 개발하거나 사들일 수만 있다면) 壓力압력을 받게 된다.

둘째로, "防禦的방어적 防衛방위"는 엄청난 민간인 殺傷살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종래처럼 戰線전선도 없는 가운데 수많은 소부대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싸우는 군사적 대립은 많은 사상자를 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정 도시지역을 군사적 수단으로 방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都市開放도시개방"(open cities)案안도 있으나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 보기에 따라서 防禦的 防衛란 기본적으로 침략

자에게 대한 정확한 공격을 위한 하이테크 군사기술을 사용하는 防衛用 게릴라전쟁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위를 위한 게릴라전의 문제점이 방어적 방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정책이 채택되면 과거 게릴라전이 벌어졌던 소련 점령하의 유고, 소련내의 나찌 점령지역, 알제리, 월남같은 지역들의 경험과 유사성을 보게 된다. 이 지역들의 방어에서는 사상자가 보통 전체인구의 10%이상이였으며 대대적인 物的물적, 社會的사회적 破壞파괴가 뒤따랐다. 人口密度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유럽에서 방어적 방위 전략이 채택되면 사상자의 수나 파괴는 엄청나게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령 그런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해도 전쟁 자체로 인한 장기적인 社會的사회적, 經濟的경제적, 政治的정치적, 心理的심리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며, 사회조직 전체와 군사체계 자체에 해독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군사력에 의존하는 방어적 방위는 억지 혹은 방위와 현존 군사기술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만족할 만한 解決策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군사적 수단 전반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어떠하든간에, 외부의 침략이나 국내의 권력탈취를 억제하고 방어하려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비군사적 수단이 존재하는지 혹은 개발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비군사적 수단으로 전쟁을 억제하며 나라를 방위하는 방법들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의 비협조 및 거부운동이 外侵외침이나 국내의 무력사용에 對抗대항할 방어 수단으로써 벌써부터 사용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事例사례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防衛手段방위수단으로의 潛在的잠재적 重要性중요성도 철저하게 檢討검토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비군사적 수단은 엄연히 존속되어 왔으며 적어도 어떤 상황하에서는 國家安保국가안보를 위한 軍事的군사적, 準軍事的준군사적 수단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

다. 따라서 비군사적 투쟁의 가능성을 어떻게 개발함으로써 여러 다른 상황에서 침략을 억지하며 필요하면 성공적인 방위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現代戰현대전의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전쟁억지와 방위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脫軍事的탈군사적 防衛政策방위정책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民間主導민간주도의 防衛방위(Civilian-based Defense)

이와 같은 방위 정책을 미국에서는 민간주도의 방위(civilian-based defense)라 하며 유럽에서는 흔히(軍事的군사적, 準軍事的준군사적 수단과 구별하여) 市民防衛시민방위(civilian defense) 또는 社會的사회적 防衛방위(social defense)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용어는 민간인의 투쟁수단(군사적이고 준군사적 수단과는 구별되는)을 사용하는 민간인(군인과 구별하여)에 의한 방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외국군대의 침략이나 점령, 국내의 권력탈취를 억제하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권력탈취 행위란 행정부에 의한 것도 있으나 보통 쿠데타, 즉 기존 정부의 안팎에 있는 정치, 군사, 준군사 엘리트 집단이 국가기구에 대한 政治的정치적·物理的물리적 통제권력을 掌握장악함을 말한다. 그러한 쿠데타는 순전히 국내적일 때도 있으나 외세에 의해 사주도거나 그 도움을 받아 수행되기도 한다.

외침이나 권력찬탈에 맞서는 억제나 방위행위는 社會的사회적, 經濟的경제적, 政治的, 그리고 心理的심리적 무기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무기"라 함은 군사적, 비폭력적 투쟁이나 전투에 사용되는 手段수단을 말하지만 꼭 어떤 物體물체만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 민간주도방위는 이러한 비폭력 무기들을 전반적 비협조나 대규모의 대중 저항을 전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목적은 侵害者침해자들의

목표달성을 방해하고 외국 정부든, 傀儡政府괴뢰정부든, 혹은 쿠데타 정부든간에 그들의 통치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非協助비협조와 抵抗저항은 다른 형태의 행위들과 결합하여 공격자들의 군대나 공무원의 충성심을 약화시키며 명령이나 억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不信感情불신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서 그들을 反亂반란으로 유도한다.

민간주도의 방위는 비폭력 행위나 비폭력 투쟁의 일반적인 기법을 한층더 발전된 형태로 국가방위 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그 방위는 전체 국민 아니면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어떤 집단들 또는 사회의 여러 기관들에 의해 실천된다. 이들 중 어느 집단이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가는 침해자의 (經濟的경제적, 理念的이념적, 政治的정치적 및 기타의) 目標목표에 따라 다르다.

민간주도의 방위는 주민이나 그 사회 기관들의 事前사전 準備준비, 計劃계획, 訓練훈련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전준비, 계획, 훈련들은 비폭력 저항에 대한 기초적 연구결과와 침략자의 정치제도에 관한 深層分析심층분석, 극심한 탄압아래 계속 저항하는 민중의 능력이나 탄압하에서도 효과적인 통신망을 유지하는 방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치밀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런 비폭력투쟁을 최대한 效率的으로 추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와 침략자의 脆弱點취약점을 확대·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민간주도방위의 성공적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민간주도의 방위는 國內的국내적인 것이든 外部的외부적이든간에 정치권력이 사회 내부의 근원(힘의 뿌리)으로부터 나온다는 理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힘의 뿌리를 거부하거나 차단해야만 국민들이 統治者통치자를 통제하고 侵略者침략자를 격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제2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되겠고 제3장에는 이와 같은

"依存的의존적인 統治者통치자"이론을 민간주도방위를 적용하는 비폭력 행위의 여러가지 실천기법을 통해 시험될 것이다. 제4장은 가능성 있는 민간주도 방위정책의 개요를 개관한다. 이 정책은 대부분의 방위조치와 더불어 사전 준비, 계획, 그리고 훈련에 기초하여 실천될 것이다. 제5장은 민간주도 방위정책을 연구, 준비, 수행하는데 취해야 할(또는 몇몇 경우에서 처럼 이미 취해진) 단계들을 검토할 것이다.

歷史역사에 나타난 原型원형들

우리는 장차 침략에 대항하는 미래의 민간주도 방위를 준비하는데 있어 과거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鬪爭투쟁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는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폭력 투쟁의 본질과 그의 잠재력 등을 배울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비폭력 투쟁의 遺産유산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국가 방위 목적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비폭력 행위는 反獨裁반독재 抵抗저항이나 보다 많은 자유의 획득을 위한 투쟁, 압제에 저항하는 운동,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대, 反植民반식민 民族獨立鬪爭민족독립투쟁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일반인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抵抗저항, 非協助비협조, 放害工作방해공작 등 이런 투쟁수단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경험들 중에는 투쟁과 동시에 발생하거나 투쟁의 후반기에는 발생했던 폭력에 대해서만 역사의 관심이 집중된 사례들도 있다.

국내적 압박이나 독재에 대항한 최근의 저항운동이나 혁명에는 1956년, 1970-71년, 그리고 1976년의 폴란드 운동 ; 독립노조와 정치

민주화를 위한 1980-89년의 폴란드 노동자운동 ;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El Salvador와 Guatemala의 비폭력혁명 ; 1950, 60년대의 미국민권운동 ; 1978-79년의 이란의 王政反對왕정반대 革命혁명 ; 1953년의 東獨동독의 봉기 ; 1956-57년의 헝가리 혁명의 주요 국면 ; 월남에서 불교도에 의한 1963년의 Ngo Dinh Diem 반대 운동과 1966년의 反體制반체제 運動운동 ; 1953년 소련 Vorkuta와 여타 수용소에서의 스트라이크 운동 ; 1970, 80년대의 소련에서의 民權運動민권운동과 유태인 운동가들의 투쟁들이 있다.

국내적 압정과 외국지배에 저항하는 비폭력 투쟁으로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는 미국인들에 승리를 가져오고 북미식민지역에서 대부분의 영국 행정부를 대치해버린 미국의 비폭력혁명(1765-1775) ; 특히 1850-67년 기간의 Austria지배에 맞섰던 헝가리의 소극적 抵抗저항 ; 1898-1905년의 러시아에 맞선 Finland의 不服從불복종, 非協助運動비협조운동 ; 1905년의 러시아 혁명의 주요부분과 1917년의 2월혁명(볼셰비키 10월 구테타 이전) ; 1919-22년 실패했지만 일본통치에 맞선 한국민의 비폭력 저항 ; 특히 1930-31년의 Gandhi지도하의 독립운동 등을 들 수 있다.

1970, 80년대에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중요한 비폭력 투쟁은 칠레, 이란, 브라질, 멕시코, 중국, 소련, 아이티, 필리핀, 인도, 남아프리카, 미얀마, 헝가리, 한국, 뉴칼레도니아, 체코, 파키스탄, 파나마, 그리고 이스라엘 점령 팔레스타인 지역들에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1989년의 비폭력 투쟁은 중국인의 民主化運動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특징일 수가 있다. 몇주동안 대중들은 파업했고,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천안문 광장을 비폭력적으로 점거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6월 4일의 잔인한 대학살은 공산당 지도부가 이 비폭력 저항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동시에 비폭력행위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89년 말에 비폭력적 혁명은 놀라운 속도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를 뒤흔들었으며, 결국 이들 국가에서 공산당 통치가 끝나고 말았다(그리고 종국적으로 동독이 해체되어 서독과 재통합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내에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들은 주로 비폭력 수단을 이용하여 공산당의 정통성과 모스크바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나갔다. 이런 움직임은 1990년 3월 11일 Lithuania가 과감히 독립을 선포하는 등, 특히 발틱해 연안공화국들에서 일어났다. 1991년 8월에 소련내 강경파가 일으킨 쿠데타도 폭넓은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소련군부의 비협조로 인해 불발로 끝났다. 소련내의 기타 민족운동도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었고 급기야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다.

위에서 예를 든 事例사례이외에도 세련되지 못한 형태나마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이 외국의 침략과 국내적 압제에 저항하는 국가방위의 중요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사실은 대부분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장에서 우리는 국가 방위를 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의 네 가지 사례를 요약하고자 한다. 처음 두 가지 사례는 국내 쿠데타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둘은 외국 군대의 침략과 점령에 저항한 사례이다. 쿠데타에 저항한 것은 1920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Kapp 반란에 저항한 사례가 있고 1961년 드골정부를 전복시키려던 Algeria주재 프랑스 군장교단들의 기도에 대한 반대를 들 수가 있다. 외국침략에 저항한 사례로는 1923년 Franco-Belgian의 침공과 점령으로부터 Ruhr를 방어하려던 독일인들의 기도가 있었다. 1968-69년 동안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의 침공과 점령에 맞섰던 체코의 國民的

국민적 鬪爭투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憲政헌정과 國家防禦국가방어를 위한 가장 명백한 비폭력투쟁이었고 또한 그 전모에 관한 史料사료기록들이 비교적 많이 있으므로 이곳에 인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네 가지 경우 모두에서 저항은 우발적이었으며 정부, 국민, 사회기관들은 비폭력 저항에 대한 아무런 사전 준비, 조직, 훈련, 시설, 비상계획들을 갖지 못하였다.(이런 것들은 보통 군사적 방위조치가 갖추고 있는 요소들이다.)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것이 이 네 事例사례의 약점이다. 전쟁에서 사전에 조직된 군대, 훈련된 군대, 무기와 兵站병참의 擴充확충과 발달, 군사전략의 연구, 장교단의 준비, 輸送수송과 通信통신을 위한 조정, 비상 혈액공급과 의약 제공 등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아래에서 다루게 될 네 사례는 그런 조건이 결여된 가운데 발생하였다.

국가 방위를 위한 우발적인 비폭력 투쟁의 다른 예들이 있는데, 1940-45년 동안의 Netherland의 反반나찌저항(1944년의 Copenhagen의 총파업 포함), 덴마크의 독일 점령에 대한 저항, Quisling체제에 대한 노르웨이의 저항과 불가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같은 나찌 동맹지역이나 점령국가에서의 반유태인 조처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정부나 대중의 저항들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우발적이며 無計劃的무계획적인 防衛방위는 세심한 조사와 연구 분석을 해볼 만하다. 이런 방위노력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군사적 투쟁이라고 모두 목표달성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들은 단지 그것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형태의 방위투쟁이 방위를 위해 強力강력하고 效率的효율적인 방위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이 그런분쟁의 진행과정이나 문제점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쿠데타에 저항했던 즉흥적인 鬪爭투쟁들

여기서 기술되는 쿠데타에 저항하는 市民鬪爭시민투쟁의 두 가지 사례는 매우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正統性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일반 민중이나 公務員공무원 또는 正規軍정규군의 비폭력 행위를 통해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들도 많은 것 중 한 가지 사례만 든 것이다.

1917년 10월 정권을 장악한 레닌은 그 후 몇년동안 옛정부 官僚組織관료조직의 非協助的비협조적 저항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臨時政府임시정부나 競爭的경쟁적인 革命政黨혁명정당으로부터 볼세비키가 국가기구들을 장악한 후에는 정부 관리들이 새 共産政府공산정부에 심각한 골치거리였다. 이런 골치거리는 그후에도 4년이상 계속되었다. 1922년 3월 11차 러시아 共産黨大會공산당대회에서 레닌은 말하기를 1921년의 정치적 교훈은 권좌를 장악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료조직을 統率통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저런 명령을 난발했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술회하였다.

연구와 분석을 할 만한 다른 사례들로는 Haiti에서 1957년 Pierre-Louis 임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總罷業총파업, 1978년 Bolivia 군사쿠데타에 성공적으로 대항한 비협조운동, 1981년 쿠데타 이후(비록 관료와 군경에서는 널리 호응받지 못했으나) Jaruzelski장군의 정부에 대항했던 Poland의 유명한 비협조운동 등이 있다.

국민적 鬪爭투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憲政헌정과 國家防禦국가방어를 위한 가장 명백한 비폭력투쟁이었고 또한 그 전모에 관한 史料사료기록들이 비교적 많이 있으므로 이곳에 인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네 가지 경우 모두에서 저항은 우발적이었으며 정부, 국민, 사회기관들은 비폭력 저항에 대한 아무런 사전 준비, 조직, 훈련, 시설, 비상계획들을 갖지 못하였다.(이런 것들은 보통 군사적 방위조치가 갖추고 있는 요소들이다.)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것이 이 네 事例사례의 약점이다. 전쟁에서 사전에 조직된 군대, 훈련된 군대, 무기와 兵站병참의 擴充확충과 발달, 군사전략의 연구, 장교단의 준비, 輸送수송과 通信통신을 위한 조정, 비상 혈액공급과 의약 제공 등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아래에서 다루게 될 네 사례는 그런 조건이 결여된 가운데 발생하였다.

국가 방위를 위한 우발적인 비폭력 투쟁의 다른 예들이 있는데, 1940-45년 동안의 Netherland의 反반나찌저항(1944년의 Copenhagen의 총파업 포함), 덴마크의 독일 점령에 대한 저항, Quisling체제에 대한 노르웨이의 저항과 불가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같은 나찌 동맹지역이나 점령국가에서의 반유태인 조처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정부나 대중의 저항들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우발적이며 無計劃的무계획적인 防衛방위는 세심한 조사와 연구 분석을 해볼 만하다. 이런 방위노력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군사적 투쟁이라고 모두 목표달성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들은 단지 그것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형태의 방위투쟁이 방위를 위해 強力강력하고 效率的효율적인 방위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이 그런분쟁의 진행과정이나 문제점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쿠데타에 저항했던 즉흥적인 鬪爭투쟁들

여기서 기술되는 쿠데타에 저항하는 市民鬪爭시민투쟁의 두 가지 사례는 매우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正統性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일반 민중이나 公務員공무원 또는 正規軍정규군의 비폭력 행위를 통해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들도 많은 것 중 한 가지 사례만 든 것이다.

1917년 10월 정권을 장악한 레닌은 그 후 몇년동안 옛정부 官僚組織관료조직의 非協助的비협조적 저항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臨時政府임시정부나 競爭的경제적인 革命政黨혁명정당으로부터 볼셰비키가 국가기구들을 장악한 후에는 정부 관리들이 새 共産政府공산정부에 심각한 골치거리였다. 이런 골치거리는 그후에도 4년이상 계속되었다. 1922년 3월 11차 러시아 共產黨大會공산당대회에서 레닌은 말하기를 1921년의 정치적 교훈은 권좌를 장악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료조직을 統率통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저런 명령을 난발했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술회하였다.

연구와 분석을 할 만한 다른 사례들로는 Haiti에서 1957년 Pierre-Louis 임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總罷業총파업, 1978년 Bolivia 군사쿠데타에 성공적으로 대항한 비협조운동, 1981년 쿠데타 이후(비록 관료와 군경에서는 널리 호응받지 못했으나) Jaruzelski장군의 정부에 대항했던 Poland의 유명한 비협조운동 등이 있다.

1920년. 독일

1920년 독일의 새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정치, 경제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Wolfgang Kapp 박사와 Walter von Luttwitz중장에 의해 주도되고 1917년 독일의 사실상 독재자이던 Erich Ludendorff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를 겪어야 했다. 대부분의 독일 군대는 참여도 반대도 않고 中立중립을 지키는 동안에 "自由軍團자유군단"(Freikorp) 소속의 퇴역군인과 시민들은 3월 12일 베를린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합법적인 민주 정부인 Friedrich Ebert정부는 Stuttgart로 피신해야만 하였다.

베를린에서 Kapp추종자들이 새정부를 선포하였지만 합법적인 정부는 피신하던 중에도 모든 국민이 그들에게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各 州주의 住民주민들도 정통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어떤 협력도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이 베를린에서 일어난 후에 社會民主黨사회민주당은 Ebert대통령과 다른 사회민주당 각료의 이름으로(단, 그들의 공식적 허락도 없이) 總罷業총파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Kapp일파들은 이와 같이 대대적인 협조 거부 운동에 직면한 셈이다. 公務員공무원과 保守的보수적 政府官僚정부관료들은 反亂者반란자들과 협조하기를 거부하였다. 자격있는 사람들은 쿠데타 정부의 요직을 사양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權力簒奪者권력찬탈자들이 권위를 인정치 않았으며 도와주기를 거부하였다. 3월 15일 합법정부는 반란군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했고 Kapp일당의 권력은 차츰 해체되기 시작했다. "軍事獨裁군사독재 崩壞붕괴"라는 제목으로 저항을 선동하는 많은 전단들이 비행기에 의해 수도 위에 살포되었다. 억압

은 가혹했으며 몇명의 반대자는 총살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협조 운동의 여파는 점점 확대해 갔다. 3월 17일 베를린의 保安警察보안경찰은 Kapp의 사임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그는 스웨덴으로 망명했다. 그날밤 Kapp의 보좌관들도 민간인 복장으로 베를린을 빠져나갔고 Von Luttwitz장군도 사임했다. 非暴力비폭력이 주류를 이룬 非協助비협조 과정에서도 몇번의 유혈충돌이 있었다. 자유군단부대들은 다시 합법 정부에 다시 복종하게 되었고 베를린으로부터 철수하였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非協助的비협조적인 시민 일부가 殺傷살상되었지만 쿠데타는 勞動者노동자, 公務員공무원, 官僚관료, 그리고 전체 국민의 협력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다. 이것은 반란세력이 정치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행정적 협조가 총체적으로 거부되었기 때문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다른 중대한 국내적 문제들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번째 시련을 국민과 정부의 국내 공격자들에 대한 非協助비협조와 抵抗으로 克服극복할 수 있었다.

1961년의 프랑스

1961년 4월 초에 Charles de Gaulle 프랑스 대통령이 Algeria를 포기할 의향을 시사하자 4월 21-22 밤 佛領불령 알제리에서 프랑스 해외 1군단 공수여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알제리의 都市統制權도시통제권을 奪取탈취하는 한편 다른 반란군들도 근처의 중요거점들을 掌握장악하였지만 그에 대한 심각한 저항은 없었다. 합법정부에 충성하던 세 명의 프랑스 장군(합창의장 포함)이 체포되었다. 이것은 알제리 주둔군과 본국정부 사이에 정책문제로 이전부터 계속되던 갈등의 표출이었다.

4월 22일 叛亂軍반란군 司令部사령부는 알제리에서 戒嚴계엄을 宣布선포하고 이전의 민간정부의 모든 권력을 인수하며 여하한 저항도 불허할 것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네 명의 대령들의 모의를 추진하면서 성명서는 얼마 전에 퇴역한 네 명, Challe, Jouhaud, Zeller, Salan장군들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다음날 Nicot장군(당시 공군 참모장), Bigot장군(알제리 주둔 공군 사령관), 그리고 다른 세 명의 장군들이 쿠데타 지지를 선언하였다. 반란군들은 신문과 라디오를 統制통제함으로써(적어도 그들 생각으로는) 佛領불령 알제리에서의 通信통신을 獨占독점하였다.

프랑스 본국정부는 곤경에 빠져 버렸다. 왜냐하면 50만 군대가 알제리에 駐屯주둔해 있는데 비해 본국에는 소수의 作戰部隊작전부대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에 駐屯주둔하고 있는 2개 사단도 믿을 만한 부대가 못되었다. 準軍事組織준군사조직인 國民近衛隊국민근위대(Gendarmerie Nationale)나 共和國保安部隊공화국보안부대(Companies Republicaines de Securite)의 충성 여부도 의심스러웠다. 파리에서 유사한 반정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공군이 알제리 반란군을 프랑스로 수송하여 드골 정부를 전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퍼져 있었다. Algerie에서의 쿠데타의 성공 여부는 본국 합법정부를 밀어내느냐 못하냐에 달려 있었다.

4월 23일 일요일, 프랑스에서 정당과 노조들은 大衆集會대중집회를 개최하여 쿠데타 반대의사 표시로 다음날 한시간동안 상징적인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날 밤, 드골은 방송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반란군에 抗拒항거하며 不服從불복종하라고 지시했다:"프랑스의 이름으로 나는 반란자들이 굴복할 때까지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하여 그들을 저지할 것을 명령한다. 나는 프랑스인 각자 특히 군인들이 그들의 어떠한 명령도 받아들임을 금지한다."

같은 날 밤, Debre수상은 공수단의 공격에 대비할 것과 파리 공항들을 閉鎖폐쇄할 것을 방송으로 지시하였다. 군사적 행위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을 말하면서도 그는 비폭력 수단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비행중인 空軍공군비행사들에게 合法政府합법정부에 충성하도록 설득하는 대중활동을 호소하였다. "싸이렌 소리가 나면 즉시 공항으로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잘못 행동하는 군인들에게 그들의 중대한 過誤과오를 일깨워 주십시오."

프랑스로부터 전파를 타고 오는 드골의 방송을 알제리의 주민과 군인들(대부분은 본국에서 징집되어 온)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演說文연설문은 복사되어서 널리 배포되었다. 드골은 그의 談話담화가 국민의 폭 넓은 非協助비협조와 不服從불복종을 유발하였다고 확신하였다. "그때부터 叛亂軍"반란군은 시시각각으로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消極的소극적 抵抗저항에 봉착하였던 것입니다."

4월 24일 오후 5시, 천만명의 노동자들이 象徵的상징적인 總罷業총파업에 들어갔다. 드골은 憲法헌법이 부여한 非常大權비상대권을 발포하였다. 많은 우익 추종자들이 체포되었다. 공항에서는 비행기들이 착륙할 수 없게끔 차량들을 활주로에다 주차시켰다. 공공건물에는 수비대가 駐屯주둔하였고 알제리아에 대한 金融금융과 海上運送해상운송이 封鎖봉쇄되었다. 그날 Crepin장군은 독일주둔 프랑스 군대가 본국 정부에 대해 충성할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날 파리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집행하였다.

알제리 주둔 프랑스 군대도 드골정부를 지지하고 叛亂軍반란군을 약화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화요일까지 사용가능한 수송기의 2/3이상과 많은 전투기들이 Algeria를 떠나버림으로써 本土본토 침공에 동원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또 다른 조종사들은 기계고장을 구실삼거나 空港공항 閉鎖폐쇄의 이유를 들었으며 陸軍將兵육군장병들도 그저 막사

안에 눌러앉아 나오질 않았다. 고의적인 業務怠慢업무태만, 반란군 장교의 명령서나 파일들의 실종, 통신과 수송의 지연 등이 빈번해졌다. Algeria 주둔병들은 그들의 非協助비협조가 합법정부를 지원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인식하고 있었다. 쿠데타지도자들은 알제리 내에서만이라도 군대를 통솔하고 명령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兵力병력을 投入투입해야만 했다. 많은 장교들은 당분간 어느 쪽도 프랑스를 편들지 않고 승리하는 쪽에 가담할 생각으로 사태를 관망하였다.

알제리주둔 경찰을 포함하여 많은 프랑스 민간인은 처음에는 쿠데타를 지지했다. 그러나 Algiers도시에서는 차차 공무원과 지방정부 관리들이 저항하고 서류를 감추거나 그들 자신이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자리를 비워 버렸다. 4월 25일 화요일 저녁, Algiers경찰은 드골 지지로 돌아섰고 반군 지도자들 사이에는 意見對立의견대립이 있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暴力的폭력적 手段수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날 밤 드골은 정부군대에게 반군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었다. 쿠데타는 이미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쿠데타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다. 25-26일 밤, 제1 해외군단공수여단은 알제리아에서 철수했고 叛亂軍반란군들은 정부건물들에서 철수하였다. Challe장군은 항복했고 혁명을 지도했던 다른 세 명의 퇴역장군들은 숨어버렸다.

사상자가 몇명 있었다. 아마 알제리와 파리에서는 세 명이 죽고 몇몇 사람이 부상당했다. 공격은 反抗반항과 解體해체때문에 실패하였다. 드골은 대통령으로 계속 남게 되었고 Algeria는 1962년에 독립하였다.

侵略침략에 對抗대항하는 즉흥적인 鬪爭투쟁

외국지배에 수십년 심지어는 수세기가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비폭력 투쟁의 예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면, 영국 지배에 대한 아일랜드인의 저항과 1850-67년동안 오스트리아에 맞섰던 헝가리인의 抵抗저항, 또한 20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영국 식민지배에 항거했던 인도의 獨立運動독립운동들이 그 예들이다. 그러나 다음에 말하는 사례들은 우리 주장에 더욱 적합한 경우들이다. 첫째로, 侵略침략이 시작된 시점에서 즉각 抵抗저항이 시작되어 점령기간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경우다. 둘째로, 정부와 주요 社會機關사회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들이 개발되어야 할 원형으로서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1923년의 독일

비폭력 저항이 외국의 침략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처음 채택된 사례로서, 1923년 불란서와 벨기에에 의한 Ruhr점령에 대한 독일인들의 저항을 들 수가 있다.

특히 Ruhr투쟁은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1923년 1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계속되었다. 그 당시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설명은 여기서는 不可能불가능하다. 불란서와 벨기에의 Ruhr점령은 1차대전 이후의 어려운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부과된 賠償義務배상의무를 계획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독일로부터 Rhineland를 분리하려는 政治的정치적 目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Ruhr침공 불과 며칠 전에 독일인들은 非協力비협력 政策정책을 유지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저항은 애초에 준비된 것은 아니었으나 독일정부의 財政支援재정지원을 받았다. 노조도 비폭력 저항을 강력히 뒷받침하였다. 勞組노조의 어떤 대변인은 주장하기를 "侵略者침략자가 나타날 때마다 公務員공무원과 勞動者노동자가 일을 중단하고 雇用主고용주가 불란서-벨기에 合同委員會합동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도 군대도 아무일도 수행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침략군에 대한 실천적인 비협조운동도 점차로 발전하였다. 그 수단으로 占領軍점령군 命令명령의 拒否거부 ; 非暴力的비폭력적 反抗行爲반항행위 ; 광산소유주 협조 거부 ; 저항운동가에 대한 재판법정에서의 대중시위 ; 독일 경찰의 외국관리에 대한 경례 거부 ; 독일노동자의 프랑스인을 위한 철도운행 거부 ; 철도 시설의 해체 ; 외국군대에 대한 상품 不買運動불매운동 ; 배가 고플 때라도 외국인이 주선한 수프 주방 사용거부 ;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新聞發行신문발행 ; 저항선언의 벽보 부착 ; 石炭석탄 採掘채굴명령 拒否거부 등이 그것이다.

抵抗저항은 물론 가혹한 탄압에 직면했다. 戒嚴계엄이 선포되었고 저항하면 다른 독일지역으로 追放추방하였다. 비상재판소가 설치되고 살인청부와 절도가 용인되는 반면 재판없이 장기형에 처해지고 毆打구타, 총격, 살인, 돈과 사유재산의 강탈, 言論統制언론통제, 군인의 학교와 가정 기숙, 신분증 제도, 수많은 강압조처들이 있었다. 저항으로 인한 심한 식량 부족은 극심한 기아를 가져왔다.

저항은 점령인사들이 살해되는 등의 파괴 행위를 포함한 여러형태의 사보타지로 복잡해졌다. 이러한 사보타지는 스파이, 정보제공자와 연루되거나 첩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살해되는 등 과격하였다. 한편 폭파로 인하여 독일에 대한 국제적인 동정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프러시아주 내무장관, 노조 그리고 점령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저항의

통일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사보타지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사보타지는 公式的공식적 또는 自生的자생적인 분노와 보복과 강한 처벌을 유발하였다. 도로소통 금지조치가 내렸다. 失業실업과 飢餓기아는 계속되는 인플레로 더욱 심각해졌고, 저항의 통일성과도 저항의지까지도 끝내 약화되었다.

9월 26일, 독일 정부는 비협조운동을 중단했으나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증가했다. 복잡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공산당과 극우파의 반란과 더불어 여러 州에서 쿠데타를 겪었지만 끝내 통화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벨기에人들도 그들 정부의 행동에 抗議항의하였다. 어떤 프랑스인은 독일인을 변호하였다. 1923년 말쯤 되어 Poincare수상은 국회에서 그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독일은 승리를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占領者점령자들이 撤收철수했고 Rhineland는 독일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았다. 점령자들은 政治的정치적 目的목적도 經濟的경제적 目標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영국과 미국이 개입하여 배상의 지불 문제를 해결하였다. 통일된 독일 전제로 한 배상, 점령비용, 독일재정능력을 다루고 독일에게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도우즈案안(Dawes Plan)이 개발되었다. 점령군은 1925년 6월까지 모두 철수해 나갔다.

1968-69년의 체코슬로바키아

2차대전 이후 몇십년동안 동유럽에서의 시민 불안은 소련의 覇權패권 維持유지를 어렵게 했고 때로는 소련의 統制力통제력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시민적 불안은 여러 형태를 취하는데, 비폭력인 경우(스트라이크, 시위, 시민에 의한 통제권 장악)와 폭력에 의한 경우(폭동이나

때로는 군사적 행동)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시민투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例는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민주화 운동과 1968-69년의 국가수호 저항운동이었다.

1968-69년의 체코슬로바키아는 아주 특이한 사례로서 國家防衛국가방위 目的목적을 위한 市民鬪爭시민투쟁을 창출한 가장 중요한 시도로서 평가될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렇게 빨리 실패하지는 않았다. 첫번째 週의 저항은 비협조와 항거전술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응용이었다. 그 후에도 8개월동안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은 소련관료들이 뜻대로 그 나라를 통제하려는(그럼으로써 꼭두각시 국가를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수행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 당시 보도에 의하면 소련 관리들은 처음에는 군사적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했으며, 그 저항을 쉽게 분쇄하고 괴뢰정부를 세우고는 며칠내에 철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소련 지도자는 50만이 넘는 바르샤바조약군이 체코슬로바키아군대를 굴복시키고 주민을 혼란과 패배속으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침공은 Dubcck改革政府개혁정부를 전복하는 쿠데타를 유발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Alexander Dubcek 당 제 1서기, Oldich Cernik수상, Josef Smrkovsky국회의장, 그리고 Frantisek Kriegel국민전선 의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즉시 KGB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Ludvik Svoboda대통령은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Hradcany城에서 연금당했다.

그러나 이것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패배를 의미하는 신호가 아니었다. 만약 체코 지도자들이 武力抵抗무력저항을 하였더라면 훨씬 더 강력한 바르샤바침략군에 의해 즉시 유린당했을 것이다. 대신에, 체코 高位官吏고위관리들은 군대에게 숙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긴급명령을 내렸고 그리고는 매우 다른 형태의 저항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비폭력저항의 특이성은 침략군 사이에 士氣사기와 兵站병참

상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원래의 침략군의 상당부분이 단시일내에 交替교체되어 버렸다.

몇몇 정치적인 전략거점에서만 저항한 덕분에 새 協力政府협력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침략 개시 몇시간 후부터 저항이 시작되었으나 정부 언론기관직원들은 체코 共產黨과 政府 지도층이 소련의 개입을 요청했다는 허위뉴스를 보도하기를 거부하였다. Svoboda대통령은 스탈린주의자들이 내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 秘密비밀 防衛방위 방송망은 平和的평화적 抵抗저항을 요구하였고 저항 운동의 진전을 보도하였으며 침략에 반대하는 몇몇 공식기구의 집회를 주선하였다.

政府정부관리, 당지도자, 그리고 團體단체들은 침략을 糾彈규탄했고 의회는 체포된 지도자의 석방과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첫週동안 라디오 방송망은 많은 형태의 非協助비협조와 反對運動반대운동을 고안해내고 다른 형태들도 만들어 내었다. 그 방송은 14차 임시 당대회를 개최하여 한시간동안 총파업을 할 것과 철도 노동자에게 소련의 통신물을 지연시키고 시설물들을 혼잡에 빠지도록 하며, 협력하지 말도록 권고 하였다. 방송은 폭력 저항은 無益무익하며 비폭력 투쟁이 현명한 것이라 주장했다. 소련은 傀儡政府괴뢰정부를 세우는데 필요한 협조를 끝내 얻어내지 못하였다.

소련 당국자들은 비록 군사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체코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민들의 단결된 저항과 침공군의 저하되는 사기에 직면한 소련은 Svoboda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이송해서 협상을 시도했으나 그는 체포된 체코 지도자들의 同席동석을 요구하였다.

아마도 전략적으로 실책일지도 모르나 妥協타협이 성립되어 소련군의 주둔이 합법화되고 체코의 개혁은 다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개혁의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유지되었으며 개혁그룹은 프라하로 되돌아와서 그들의 公的공적 자리를 지켰다. 일반대중들은 타협을 패배로 간주하고 일주일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점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개혁 정부와 개혁파들은 8월부터 계속 유지되다가 4월에 (프라하에 소재한 비행사 사무소에 대한 무장습격을 포함하여) 몇차례의 反蘇반소 시위가 일어난 소련이 압력을 강화하는 구실이 되었다. 이번에는 체코 관료들이 굴복하여 Dubcek개혁파들을 당과 행정부의 직위에서 逐出축출한 후 강경 후사크 체제가 들어섰다.

소련은 원래 軍事的군사적 手段수단에 의존하려다가 점진적인 政治的정치적 壓力압력 方式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그들이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데 8개월이 걸렸다. 만약 소련의 지배가 체코인들의 군사적 저항으로 8개월간 지연되었더라면 체코인들은 월등히 強강한 페르시아 군대에 저항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고만 Thermopylae 전투에서의 그리이스人들과 같은 경험을 겪었을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방위의 성격과 實績실적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있으며, 혹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왜곡되는 수가 많다. 그 방위투쟁은 궁극적으로 체코 공직자들에 의하여 항복으로 失敗실패한 것이지 저항에서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8개월 동안-8월부터 다음 4월까지-소련지배를 억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군사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체코인들의 저항은 전적으로 사전 준비나 훈련없이 더욱이 일시 대책도 없이 행해졌다. 비록 패배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처럼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업적은 투쟁을 위해서는 세련되고, 잘 준비되며, 훈련된 비폭력 투쟁이 실제적 방위를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보다 더 큰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體系的체계적 開發개발을 위한 基礎기초

이 章에서 서술되고 인용된 사례들은 侵略침략이나 內亂내란을 억제하거나 방어하는데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방위 체계를 개발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이런 타입의 행동은 미개발된 政治的정치적 技術기술로 남아있었다. 이것은 마치 오천년 전에 군사적 행위가 정교화되지 못한 것과 같다. 앞서 지적했듯이 과거의 비폭력 투쟁자들에게는 수천년동안 군사전문가들이 지켜왔던 사전 조직, 준비, 개발된 무기, 훈련, 과거의 투쟁과 전략원칙들에 관한 깊은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무기, 조직, 훈련, 군사 전략들을 개선하려는 의식적인 노력만이 비폭력 투쟁의 효율성과 파괴력을 높여 줄 것이다.

아직도 그러한 노력들이 市民鬪爭시민투쟁에는 투입된 바 없었다. 이런한 중요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비폭력투쟁의 실천자들은 국방분야에서 成果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취가 가능했으며 앞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듯이 보다 더 효과적인 戰爭抑制전쟁억제나 國家防衛국가방위정책이 장차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두고 두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本본 章장에서 제기된 논점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분석과 자료에 대해서는 Gene Sharp, *Social Power and Political Freedom* (Boston: Porter Sargent, 1980), pp. 263-284. Gene Sharp,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Porter Sargent, 1973), pp. 63-105을 보

라.

여기서 소개한 "防禦的방어적 防衛방위 (Defensive Defense)"의 논의는 이 분야에 있는 여러 제안중 가장 공동적인 특징만을 다루었다. 이러한 접근법의 주장자들에는 Horst Afheldt, Anders Boserup, Norbert Hannig, Jochen LOser, Albrecht von Muller와 Lutz Unterseher 들이 있다.

이 접근법의 입문적 소개는 Jonathan Dean, "Alternative Defense: Answers to NATO's Central Front Problem?" *International Affairs*, vol. 64 no. 1 (Winter 1987/88), pp. 62-88, 그리고 Stephen J. Flanagan, "Nonprovocative and Civilian-Based Defense", in Joseph S. Nye, Jr. Graham T. Allison and Albert Carnesale (eds), *Fateful Visions: Avoiding Nuclear Catastrophe*(Cambridge, Mass: Ballinger Pub. Co., 1988), pp. 93-109. 또한 Frank Barnaby and Egbert Boeker, "Defense without Offense Non-nuclear Defense for Europe" (Bradford, England: University of Bradford, Peace Studies Paper No. 8, 1982). 이 분야의 중요한 출판물로는 Horst Afheldt, *Defensive Verteidigung* (Reinbek,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1983); Anders Boserup, "Non-Offensive Defense in Europe", (University of Copenhagen; Center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Working Paper No. 5, 1985); Norbert Hannig, "Verteidigung ohne zu Bedrohen", (Universitat Stuutgart: Arbeitsgruppe Friedensforschung und Europaische Sicherheit, Paper No. 5, 1986); Hans Heinrich Nolte and Wihelm Nolte, *Ziviler Widerstand und Autonome Abwehr* (Baden-Baden: Nomos Verlag, 1984); Lutz Unterseher, *Defending Europe: Toward a Stable Deterrent* (Bonn:

Studiengurppe Alternative Sicherheitspolitik, 1986)

스위스 防衛政策방위정책의 맥락에서 "防禦的방어적 防衛방위"를 논한 것은 Dietrich Fischer, "Invulnerability Without Threat: The Swiss Concept of General Defense", in Burns H. Weston (ed.), *Toward Nuclear Disarmament and Global Security–A Search for Alternative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4), pp. 504-532. 방어적 방위를 영국에 적용시킨 예는 Alternative Defense Commission, *Defense without the Bomb*(London, 1983).

레닌으로부터 인용은 V. I. Lenin: *Selected Works in Three Volume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vol. 3, pp. 692-693.

Kapp에 대한 저항에 관한 설명은 Wilfred Harris Crook, *The General Strike* (Chapel Hill N. 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1), pp. 496-527; Donald Goodspeed, *The Conspirators* (New York Viking, 1962), pp. 108-188; Erich Eyck, *A History of the Weimar Republic*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vol. 1, pp. 129-160; Karl Roloff, "Den Ikkevoldelige Modstand: den Kvalte Kapp-Kupet", in K. Ehrlich, N. Lindberg, and G. Jacobson, *Kamp Uden Vaaden* (Copenhagen: Levin & Munksgaard, 1937), pp. 194-213; John Wheeler-Bennett, *The Nemesis of Pow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3), pp. 63-82. 또한 Sharp,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pp. 40-41 and 79-81에 있다.

알제리 쿠데타에 대한 저항에 관한 설명은 Adam Roberts, "Civil

Resistance to Military Coups", *Journal of Peace Research*(Oslo), vol. 12, no. 1(1975), pp. 19-36를 배경으로 했다. 모든 인용은 여기서 따옴.

Ruhr점령에 대한 저항에 관한 서술은 Wolfgang Sternstein, "*The Ruhrkampf of 1923*", in Adam Robert (ed), *Civilian Resistence as a National Defense* (Hamondsworth, England, 1969), pp. 128-161.

체코의 抵抗저항에 관한 설명은 Robert Littell (ed), *The Czech Black Book* (New York: Praeger, 1969); Robin Remington (ed), *Winter in Prague*(Cambridge, Mass: M.I.T Press, 1969), Philip Windsor and Adam Roberts, *Czechoslovakia 196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와 Vladimir Horsky, *Prag 1968: Systemveranderung und Systemverteidigung*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and Munich: KOsel-Verlag, 1975), H. Gordon Skilling, *Czecholslovakia's Interrupted Revolu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을 보라.

(譯者：朴柱植, 고려대 강사)

第 2 章

權力권력의 뿌리를 찾아본다면

期待기대하지 않았던 능력能力

우연이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前 章에서 살펴본 정권 탈취나 침략에 저항하는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어떤 시기나 장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이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 혹은, 그와 같은 사례들이 보다 넓은 타당성을 가진 일반적인 行動類型행동유형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다른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에도 비폭력투쟁이 獨裁독재에 저항하여 성공할 수 있을까? 만일 성공한다면, 과연 어떻게 비폭력투쟁을 사용하는 대중들이 새로운 억압 체제의 등장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비폭력투쟁에 의거하여 쿠데타와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할 防禦政策방어정책을 성공적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군대, 탱크, 비행기, 폭탄, 로케트를 갖지 못한 국민들이 독재를 打倒타도하고, 침략군을 無力化무력화시키며, 불법적인 국권 탈취를 막고, 침략자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1930년대의 극소수 과학자들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생각에 비하면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즉, 아주 작고, 以前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原子원자"(atoms)라는 물질들이 인류 역사상 전례없었던 폭발력을 낳는 커다란 潛在力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假定가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생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1939년경에는 나찌편이든 연합군측이든 "常識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모두가 그런 생각을 기각했을 것이다. 가장 야만적 침략자들도,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침략자들에게도 그런 무기의 原型원형(prototypes)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관한 소규모의 실험조차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수백만개의 미세한 원자들로 폭탄을 만든다는 발상은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가졌던 기발한 소견으로서 무한정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투자되었고, 미세한 원자들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였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觀點관점도 비교적 극단적이면서도 하지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관점은 매우 적은 범위에서만 시험되어 왔다. 그 관점이란 어떤 잠재력이 사회안에 內在내재해 있는데, 그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억압과 독재를 파괴하고 침략을 억제·패배시킬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군사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은 정치나 국제적 갈등에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제1장에서 약술된 사례도 아주 制限제한된 범위이긴 했지만 바로 이 잠재력이 활용된 경우였다.

이제부터의 장들에서 논할 것이지만, 이러한 潛在力잠재력(power potential)이 잘만 활용 된다면 그 효용성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힘이 미래의 격렬한 紛爭분쟁에 활용될 수 있고, 오늘날 방어능력이 없어진 在來式재래식 군사무기나 대량 파괴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抑止力억지력(deterrence)과 防禦能力방어능력(defense) 모두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前 章에서 살펴본 네 가지 사례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無力무력하고 非武裝비무장상태였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그들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무기들로 "武裝무장"(armed)되어 있었다. 이러한 무기들이야말로 정권 찬탈자나 침략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의 뿌리를 공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비폭력 투쟁의 戰鬪力전투력(fighting capacity)을 설명해 준다.

非協調비협조나 抵抗運動저항운동이 때때로 강력한 통치자들을 權座권좌로부터 축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운동이 모든 정부의 아킬레스腱건(Achilles heel)을 강타하기 때문이다. 통치자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국민과 사회에 의존한다. 대중과 기관들이 침략자와 독재자들에 대한 협력을 철회할 때 모든 통치자들을 떠받이는 권력의 뿌리(sources of power)의 축소·단절 되고 만다. 그러한 뿌리가 없어지면, 통치자들의 권력은 약화되고 결국은 해체되고 만다. 이 사실이 바로 이 章에서 제시된 정치권력에 대한 고찰의 核心핵심인 것이다.

統治者통치자의 依存性의존성

당연하고도 단순하므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쉬우나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命題명제가 존재한다. 어떤 정부에서든지 지휘 결정권을 가진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이나 집단도 그 권력이 우리가 통치자라고 부르는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통치자들은 권력을 갖고 태어난 것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그 권력이 주어지는 동안에만 휘두를 수 있을 뿐이다.

"政治權力정치권력"(poltitcal power)이란 정치사회의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制裁제재나 처벌과 같은 영향과 압력의 총체를 의미한다. 정치권력은 정부와 국가, 국가기관, 野黨야당 및 다른 집단들이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한 권력은 직접 적용될 수도 있고 豫備能力예비능력(reserve capacity)으로 유지되기고 한다. 권력은 예를 들자면 전쟁뿐만 아니라 協商협상에서도 작용한다. 권력은 갈등에서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쪽에서도 행사된다. 정치권력은 압력을 행사하고, 어떤 상황과 국민, 국가기관들을 통제하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과 국가 기관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여부로 測定측정된다.

통치자들은 全知全能전지전능하지 않으며 自家發電자가발전(self-generating)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정치권력은 오히려 통치자 밖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혼자서 원하는 모든 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육체적·지적 능력도 갖지 못한다. 만일 통치자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權威권위를 가졌다고 인정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행태를 지휘하고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을 집행할 관료제를 통솔하고, 진압이나 전투하는 조직들에 대해 명령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통치대상인 국민, 사회의 많은 집단과 단체들이 협조해 주고 복종해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요소들은 통치희망자(would-be rulers)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닐 것

이다.

전폭적인 협조, 복종 지원은 필요한 권력자원을 증가시키므로서, 결과적으로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해 준다. 반면에 협조를 줄이거나 철회한다면, 권력자원의 존속이 직·간접적으로 감소되고 소멸된다. 마치 수도꼭지로부터 나오는 물의 흐름이 밸브를 돌림으로써 조절될 수 있듯이, 협조나 비협조에 의해서 통치에 필요한 권력자원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통치자들은 그들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권력에 제한을 가한다는데 대하여 당연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생각이 널리 퍼지는 데 대하여 위협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복종하는 대신 파업을 先導선도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처벌함으로써 그들의 저항을 좌절시키려고 든다. 그러나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다.

만일, 그러한 진압 혹은 억압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뿌리가 축소, 보류되고 오래동안 억제된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결과는 정권내부의 불확실성과 혼란일 것이다. 그러면 통치력이 눈에 보이게 약화된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끝내 권력뿌리도 痲痺마비되고 無力化무력화된다. 심한 경우에는 체제가 解體해체되기에 이른다. 통치자의 권력은 천천히 혹은 빠르게 정치적으로 굶어죽게 된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의 원리는 1548년 Etienne de la Boetie에 의해 표현된 바 있다. 그는 독재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너희들(여기서 시민을 의미)을 虐待학대하는 자도 두개의 눈, 두개의 손 그리고 하나의 몸뚱이를 갖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파괴하는 힘을 준 것이다. 그것만 제외한다면, 너희들 도시의 무수한 微物미물들 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술하였다. 독재자는 통치에 필요한 모든 것, 곧 정통성, 돈, 보좌관, 군인, 심지어는 그와 함께 밤을 지낼

젊은 여자들까지도 고통받는 국민들로부터 얻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Boetie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만일 독재자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만일 국민들이 싸움이나 억압없이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마치 뿌리에 흙이나 영양분이 붙어 있지 않음으로써 나뭇가지들이 시들어 죽는 것처럼 독재자들은 벌거벗은 상태로 남거나 파멸하여 어떠한 일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권력의 뿌리를 열거한다면

정치권력은 다음과 같은 뿌리들의 전부 또는 몇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난다.

權威권위(authority) : 국민들 사이에서 통치자의 권위 혹은 정당성의 범위와 강도는 통치자의 권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權限권한을 국민들이 얼마나 넓게, 깊게, 확고하게 신뢰하는가? 통치자의 권위가 강력하다면 권력의 다른 뿌리들도 활용될 수 있다. 복종과 협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制裁제재(sanctions)나 위협의 필요성도 적어질 수 있다.

人的인적 資源자원(human resources) : 통치자의 권력은 그에게 복종하고, 협조하며, 특별하게 도움을 주는 집단이나 개인들의 수에 의해서, 또한 일반 대중 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들 조직의 범위와 형태, 힘 등의 영향을 받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기관들이 통치자들에게 협조하거나 혹은 협조를 거부하는가?

技術기술과 知識지식(skills & knowledge) : 통치자의 권력은 통치자에게 기꺼이 복종하며 돕고자 하는 사람과 그 집단의 技術기술·知識

지식 능력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통치자가 요구하는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통치자들이 그들의 기술과 지식 능력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

無形무형의 要素요소들(intangible factors) :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이나 감정, 믿음 등도 통치자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요인들은 服從복종과 順從순종(submission)의 태도나 습관들 그리고 공통적 신뢰감, 이데올로기, 사명감의 有無유무도 포함한다. 만약 이러한 요인들이 확고한 통치자는 더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권력의 다른 뿌리들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다. 반대로 그 무형체의 요인들이 미약하거나 아예 없다면 권력의 다른 뿌리들도 활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物質的물질적 資源자원(material resources) :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치자가 통제하는 재산, 천연자원, 재정자원, 경제체재, 통신과 우송수단의 수준은 통치자 권력의 한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물질적 요소들이 통치자의 목적들을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制裁제재(sanctions) : 통치자 권력의 마지막 뿌리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재력(또는 처벌)의 유형과 범위이다. 그러한 법적 제재는 통치자가 국민들이 불복종하고 비협조적일 때나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나 외국 통치자에 대응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압력, 처벌, 그리고 투쟁수단을 통치자가 손 안에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언제든지 믿을만하고 확실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제한되어 있는가?

언제나 이러한 권력의 뿌리들이 전부 또는 일부만 존재하는가 하는 정도나 수준이 문제된다. 통치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요소 중 모두가 완전히 활용할 수 있거나 완전히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한 권력뿌리의 요소들은 언제나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그러한 변화가 통치자 권력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통치자 권력의 많고 적음, 범위나 지속성은 통치자들이 이러한 힘의 요소들을 어느정도 가까이 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被支配者피지배자에 달려 있다(Dependency on the Governed)

통치자 권력의 뿌리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통치자란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피지배자의 복종과 협조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소들을 거두어 들였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자.

피지배자가 통치자의 통치권력을 거부한다면 현 정권의 存續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 合意합의(general agreement)나 集團的집단적 同意동의(group consent)를 否認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권위나 통치권이 없어진다면 통치자의 권력은 약화되거나 분해되고 만다. 그 손실이 극도에 달하면 그 정부의 存續존속은 위태로워진다. 그러므로 국내의 권력 찬탈자(internal usurpers)와 외부 침략자(foreign aggressors)의 권위를 부인함은 내부 또는 외부 압제자들에 의한 새로운 정부의 설립을 방지하려는 민간주도방위 투쟁의 핵심이다. 일단 국민들이 통치자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면, 국민의 협조와 복종이나 도움을 줄이거나 완전히 거절하기가 쉽다.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불복종과 비협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모든 統治者통치자는 많은 국민들의 기술, 지식, 자문, 노동력 그리

고 행정능력을 필요로 한다. 통치자의 통제가 더 광범하고 구체적일 수록 통치자는 더욱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통치자의 권력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기술전문가의 전문지식, 과학자의 研究成果연구성과, 각 부처장들의 조직 능력에서부터 타자수, 공장노동자, 컴퓨터 전문가, 통신 기술자, 운송업 노동자 그리고 농부들까지 포함된다. 경제체재와 정치체제는 많은 개인, 조직 그리고 하위 집단의 기여에 힘입어 운영되는 것이다.

통치자의 권력은 개별전문가, 관료, 피고용자 뿐만 아니라 체제를 떠받치는 하위 조직, 사회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部處부처(department), 事務局사무국(bureau), 支會지회(branch), 委員會위원회(committee)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마치 개인들이나 자립적인 집단들이 협조를 거절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들 下位組織하위조직도 통치자의 지위를 유지해 주고, 통치자의 정책이 수행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從前종전부터 여러가지로 통치자를 도왔던 사회 기관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통치자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면 그 권력의 존속은 위협받게 된다. 종전에 도와주었던 사람이나 기관들이 이제는 통치자의 소망을 비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결정을 廢棄폐기하거나 그들의 과거부터 통치권자에 주어왔던 협조, 보조, 복종을 계속하기를 매정하게 거절할지도 모른다.

많은 종업원들의 지각있고 믿을 수 있는 노력없이는 행정부와 관료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 지식, 인적자원들을 얻을 수가 없다. 수많은 노동자, 농부, 기술자, 관리자, 운송업자, 통신종사자,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경제는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경찰과 군인들이 그들의 상급자로부터 오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억압기관들은 저항자에 대해서 믿음직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라고 지시를 거부하면 굳이 Henry David Thoreau나 Mohandas K. Gandhi의 著書저서를 주의깊게 연구하지 않더라도 어린이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이나 어른들도 매우 자연스럽게 비협조, 불복종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 널리 퍼진 현상이다. 옛 속담의 "말을 물가까지는 몰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심오한 정치이론을 이해했거나 종교교리를 받아들이거나 더 높은 도덕적 발전단계에 도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조를 거부하고 불복종하는 능력은 때로는 고집스러워지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바에 따라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그 행동은 강력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政治權力정치권력의 기본성격을 이해함으로써 갖게 되는 행동유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抑壓억압만으로 불충분하다(Repression Insufficient)

통치자들이 저항에 직면하면 달갑게 여기지도, 쉽게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협조를 통한 同意동의의 철회는 가장 중대한 위협처럼 보여질 것이다. 심각한 정치적 불안에 직면했는데도 정권이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화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럴수록 더 강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중의 필요한 도움, 복종, 협조를 되찾거나 보장받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협박(punisgment)하거나 구타(beating), 투옥(imprisonment), 고문(torture), 강제집행(execution)등의 방법으로 처벌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재(sanctin)가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감행되는 것은 일부 대중(populace)이 충성하여 기꺼이 정부가 유지되며, 정부정책이 수행되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통치자는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통치자의 충복들을 이용하여 나머지 국민들을 처벌하려고 들 것이다. 하지만 제재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국내외의 통치집단은 법적 제재보다는 신앙심, 경제적 자기이익, 이데올로기, 그들의 사명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단결을 유지한다. 더구나 국내외에서 法的制裁법적제재를 행사하는 통치자의 능력은 국민자신들의 도움에 의해서 나오며 그들의 도움에 의존함으로써 존속한다.

법적 제재는 특히 危機時위기시 통치자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이러한 처벌이 순종과 복종을 회복하는데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비록 통치자의 처벌로 처음에는 어느정도 外面的외면적 服從복종 (outward conformity)을 보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통치자들은 마지못해 하는 외면적 복종 이상의 것을 원한다. 강요된 복종은 종종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적인 지연책이 아니더라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국민들간에 통치자 권위가 그 범위나 강도에 미약하다면 위협과 처벌로 유지되는 복종은 완전한 권력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 본다해도 저항하는 국민에 대한 통치자의 처벌이 반드시 복종의 회복을 성공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또 심지어 언제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비록 억압자의 제재행위가 반항적인 국민에게 다부지게 가해졌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반드시 새로운 복종과 협조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그 처벌이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민의 복종형태유형(the subject's pattern of submission)에 달려 있다. 이것은 어떤 평상시에 국민이 얼마나 철저하게 명령과 지시를 따르느냐에 달

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이나 상황하에서 국민이 복종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면 처벌과 위협을 무릅쓰고 통치자에게 계속 反抗반항하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비록 抵抗者저항자들이 처벌에 당면하더라도 자유의지와 선택의 여지는 있다. 그들은 불복종으로 인하여 위협받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복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적 제재를 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불복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커다란 정치적 知識水準지식수준(political sophistication)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말을 듣지 않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10대들도 계속해서 경미한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복종한다.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복종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恐怖공포뿐이다. 불복종의 결과는 복종해서 얻는 결과보다 훨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해진 처벌이나 그 위협은 그 처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을 때에만 복종과 순종을 자아낼 수 있다. 제재행위 자체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 예를 든다면, 어떤 저항자는 구타당해도 다음날 다시 돌아온다. 투옥되었던 파업참가자는 투옥되어도 여전히 일하지 않는다. 처벌된 抗命者항명자는 다시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 한다. 처벌은 통치자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될 정도로 복종시킬 수 있을때 비로소 성공한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은 처벌의 두려움이 국민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때 억압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쟁에서 처럼 육체적인 부상과 죽음의 염려가 있어도, 그것이 戰線전선에 있는 병사를 전쟁터로부터 도망가거나 항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싸우는 사람들이 전쟁의 명분을 잘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을 계속하려고 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억압이 정권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악화시키고 저항자들의 숫자만 늘려줄 뿐이다.

통치자의 권력은 다른 면에서도 虛弱허약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제재하는 능력은 적어도 일부 국민이 복종하고 협조하는데서 나온다. 체포, 투옥, 구타 등 억압의 여러 형태도 경찰, 군인, 準軍事준군사 또는 다른 조직뿐만 아니라 종종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여러 종류의 협조를 받아야만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억압담당자는 확실하게 그러한 처벌을 충실하게 집행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경찰, 군인 등은 더이상 과거나 미래의 통치지망자들이 억압의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그러한 部隊成員부대성원들도 실제로 저항하는 사람들의 大義名分대의명분에 동정을 표명하거나, 그러한 路線노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를 躊躇주저할 수도 있다. 경찰과 군대는 그들의 상급자에게는 최소한 복종하는 것처럼 시늉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명령을 비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비폭력 저항자들을 폭력으로 억압해 본 경찰과 군대일수록 명령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적어진다. 그결과, 비폭력 대중에 무자비한 억압을 계속하라는 명령에 대항하여 '대규모의 불만', '위장된 불복종' 또는 노골적인 반란등이 때때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제3장에서 논해질 비폭력적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다.

'권위의 부인', '저항자들 명분에 대한 동정', '비폭력 대중에 대응하는 폭력행사에 대한 불만'등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은 통치권자의 권력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해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

集團的집단적 抵抗저항의 可能性가능성

국민들이 지배자에 대하여 지지와 복종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배자의 권력을 통제하려면 계속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억압을 가해온다. 하더라도 협조하지 말고 불복종하는 자세를 堅志견지해야만 한다. 국민들의 공포가 줄거나 없어지고 변화의 代價대가로 처벌을 받을 각오만 되어 있다면 대대적인 불복종과 비협조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되고, 복종하지 않는 국민들의 수가 늘거나 그들에 대한 통치자의, 依存度의존도가 커짐에 比例비례하여 통치자의 의지는 좌절되고 만다. 통제되지 않는 정치권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규모 협조거부를 실시하거나 억압을 무릅쓰고 비협조의 자세를 견지하는 방법을 배우는데서 그 답변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政治權力정치권력은 폭력에서 나온다거나 승리는 반드시 보다 강한 폭력쪽으로 기운다는 이론은 그릇된 생각이다. 그 대신 불복종의 선택, 반항의지와 저항능력이야말로 파괴와 살인을 恣行자행하는 거의 무제한의 능력을 지닌 압제자, 독재자 또한 침략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1943년 7월 히틀러는 "占領地域점령지역 안의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강요만으로는 통치할 수가 없다. 실제로 강제가 결정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調鍊師조련사가 동물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하듯이 심리적 요소(psychological something)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승리자임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민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한 침략자들을 정치지도자로 받아들이기

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首都수도를 점령하여 선거로 뽑은 공직자들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고, 반란군이 새 정부임을 선언하는 군부의 주장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국민(general population)이 정치권력의 본질 속에 내재해 있는 그들 자신의 잠재력을 알게 된다면, 여지껏 별로 연구는 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질문들이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선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實踐上실천상의 要件요건들

정치권력에 대한 이러한 觀點관점(insight)을 현실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상(how)의 문제이다. 현존하는 압제자에게 대항하는 방법과 새로운 탄압자의 등장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런 견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독재나 억압을 오랫동안 제거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관점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先決要件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들은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專制政府(tyrannical government)에 대한 거부감정을 활발하게 표현해야 한다. 거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쉬운 것은 별로 없다. 거의 모두 위험하고 많은 노력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필요로 한다.

둘째, 집단행동이나 대중행동으로나 나타나야 한다. 소수의 지배자는 단결되고 잘 조직되어 있는 반면, 다수의 피지배자는 분열되어 독립적인 조직을 갖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너무 약해서 집단저항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격파되고 말 것이다)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집단적인 저항과 항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보통 지배권력의 뿌리는 다수의 피지배자나 사회집단과 기관들로부터 지원,

협조, 복종을 일시에 거부당할 때만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반체제 목사의 설교는 자신의 敎人교인 몇명에게만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전체교단의 명의로 현 정권을 정통성이 없다고 규탄하는 내용을 전국민에게 발표하면 끝내는 정부의 顚覆전복으로까지 誘導유도할 수가 있다. 불과 몇명의 노동자가 操業조업을 거부한다면 解雇해고나 당하고 말지만, 수천명의 노동자가 단결된 노조를 배경으로 잘 조직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 공직자 몇명이 명령을 거부했을 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관료들 대부분이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면 행정부 전체는 痲痺마비되고 만다.

고립적이고 개별적인 행동이 아닌 조직과 단체기관의 비협조나 불복종은 이처럼 중요하며 그들이 제급하는 권력의 뿌리를 抑止억지할 수 있는 그 단체들의 힘은 지대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大衆統制대중통제의 構造的구조적 基盤기반

지배자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의 집단행동 능력은 그 사회의 비국가기구와 사회기관들(society's non-stat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의 상태 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국가기구와 사회기관이야말로 권력의 出處출처(loci of power)인 것이다. 이러한 비국가기구와 기관들은 권력이 자리하고 수렴되고 표출되는 사회의 "장소"이다.

權力出處권력출처의 정확한 형태와 성격은 사회마다 다르며, 같은 사회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권력의 뿌리에는 가족, 사회계층, 종교집단, 문화적·민족적 집단, 직업집단, 경제집단, 촌

락, 도시, 지역, 보다 작은 정부기관, 자발적 조직 그리고 정당과 같은 사회적 집단이나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회집단들은 대체로 전통적이고 안정된 공식적 사회집단이며 기관들이다. 그러나 때로는 권력의 뿌리가 덜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저항투쟁의 진전 속에서 창조되거나 활성화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권력의 뿌리가 되는 조직과 사회기관들의 위상은 항상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권력행사 능력, 국가기구에 명령하는 통치권, 그리고 권력의 다른 뿌리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독립적 단위와 권력관계의 복합체(complex of independent units and power relationship)가 통치자와 통치자가 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 사회전체의 "構造的구조적 條件조건"(structural condition)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번째 요소는 권력 뿌리의 범위와 생명력이다. 이것은 독립집단과 사회기관들의 존재 여부, 집단과 기관들의 수, 조직내부 힘과 생장력의 정도,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태, 그리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

두번째 요소는 사회의 독립적 집단과 사회기관들 사이의 관계들로 구성된다. 권력뿌리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가? 또한 자신들의 계획과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가?

세번째 요소는 권력의 뿌리와 통치자 사이의 관계이다. 과연 권력뿌리들이 통치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에 대하여 불복종하고, 협조하지 않으며, 통치자 권력의 뿌리를 억제하거나 단절시킬 수 있는가? 또는 그 실제적인 활

동의 독립성 정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가?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이 통치자들이 갖는 잠재적 권력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 통치권자들은 그런 구조적인 변화나 권위의 증가, 자발적 타협, 국민들과 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없이는 그 권력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 만일 권력이 강력하고 활력있는 독립기관들 사이에서 크게 분권화되어 있다면, 그 조건들이 유사시에는 국민대중의 통제력을 거부함으로써 통치자나 통치자의 지망자들에게 국민의 통제력을 높이며 권력의 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국민과 사회기관들의 공동적 능력은 크게 강화시켜 줄 것이다.

自由자유의 構造的구조적 基盤기반

권력이 사회의 강력한 권력뿌리 사이에 효과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통치자들이 권력도 통제와 制約제약을 받기가 쉬우며 따라서 사회는 억압, 권력찬탈, 폭력 등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정치적 "자유"와 결부되어 있다. 한편 권력의 뿌리들의 심각하게 약화되었거나 활동의 독립성이 파괴되어 국민도 똑같이 無氣力무기력하여 사회권력이 중앙집권화 되었다면 통치자의 권력은 제약받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조건은 "獨裁政權독재정권"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과거 전체주의체제들이 독리적 사회집단들을 모두 없애버리거나 당과 국가의 완전한 통제아래 두고자 시도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유는 통치자들이 국민들에게 "주는"것이 아니다. 결국에 가서는 공식적인 사회기관의 구조와 정부절차(예를 들어 헌법에 명기되어 있을 만한)가 자유의 범위나 통치자 권력의 한계를 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사회는 실제로 헌법에 明記명기되어 있거나

기타의 법적장치가 마련한 것보다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더 억압적일 수도 있다. 그 대신 국민의 힘과 전체 사회기관들이 처한 조건들이 통치자 권력의 범위와 強度강도, 그 사회의 실질적인 자유의 범위를 결정해 준다. 즉 통치자의 권력과 사회적 자유의 정도는 통치자와 국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 즉 어떤 통치자들은 구조적 조건(structual condition)이 허락하는 정도보다 덜 억압적일 수도 있다. 또 어떤 통치자들은 구조적 조건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냄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할 수도 있다.

통치자의 권력은 한편으로 국민들이 통치자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며 협조하고 통치자들의 명령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질 때 직접·간접으로 팽창될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이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하고 협조를 거부하며, 명령에 대항하고 주어진 요구사항을 거부할 때 통치자 권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정치사회에 있어서 자유나 독재의 정도는, 대체로 자유롭고자 하는 국민의 결심, 자유롭게 삶의 영위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려는 의지와 능력에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지배하고 노예화하려는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도 용기있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사회자체에 자유를 확립하고 수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힘은 파멸의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 가장 강력한 保障者보장자일 수 있는 것이다.

防衛방위의 社會的사회적 起源기원

政治權力정치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나 통치권력을 제약

혹은 해체시키는 수단은 국내의 권력찬탈이나 외세의 침입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대중이나 社會機關사회기관(society's institutions)들이 모두 효과적인 방위를 위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과 사회기관들은 침략자들이 요구하는 容認용인, 屈伏굴복, 協調협조를 拒否거부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의 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간단하다. 즉 그것은 권위, 인적 자원, 기술, 지식, 무형의 요소들, 물적 자원, 제재등 권력의 뿌리에 대한 억제가 권력에 통제를 가함으로써 통치자의 능력을 분해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방위자들로 하여금 공격자에 대항하는 사회내부의 힘을 동원하여 침략자에 저항하여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사회는 정통성의 기준, 독자적인 생활양식, 여러 사회기관의 자율성과 헌법적 원칙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공격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수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회는 침략자의 목적 달성에 협조하지 않도록 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利得이득을 강요하려는 침략자를 물리칠 수가 있다. 사회 전체가 가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과 제재는 침략자들의 행정력과 억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침략자에게 최종적인 패배를 안겨주는데 쓰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 통치자에게 충성을 다해 온 정부의 여러기관들도 葛藤狀況갈등상황(conflict situation)에서는 미덥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기관들은 국립은행, 대법원,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정부기구 전체일 수도 있고, 관료나 공무원, 군대나 경찰과 같이 정부 기관내의 特定集團특정집단일 수도 있다.

모든 정부기관 또는 그 일부가 통치자 또는 통치 자망자들의 명령을 거역하여 멋대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政府機構정부기구에 불안정 요인이 된다. 그러면 그들도 사회의 독립적인 권력의 뿌리를 갖추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이 불만을 품은 국가기구의 부문들이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 국가기구는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이것은 "통치자"로 남거나 "통치자"가 되려고 시도하는 집단들에게 물론 심각한 위협이 되며, 통치자들은 독재자, 권력 찬탈자 또는 침략자로서 사회에서 거부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침략자의 권력을 약화, 소멸시키는데는 파괴적인 군사적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만일 사회가 내부적으로 강하고, 자기 결정의 의지를 가지며, 침략자나 억압자에게 대항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국내전복과 외세침입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사회역량에 의한 방위라는 것이 된다.

외세침략의 경우 침략국가 내부의 재야 세력이나 반체계 집단을 이용하거나 국제적으로 공격자들에 대해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방위의 중요한 요소이다. 침략국가의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회방위의 능력은 부분적이나마 그 사회가 침략당하기 以前이전부터 유지해 왔던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要約요약하면 권력 찬탈자와 침략자에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국민대중의 능력은 여러가지 요인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

(1) 침략자에게 저항하려는 국민의지의 強弱강약 여부 (2)사회조직과 기관들의 수, 역량, 독립의지 (3)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對處대처할 수 있는 능력 (4) 권력뿌리들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의 總量총량 (5) 그들이 갖는 權力권력근거도 그에 대한 공격자의 의존성이 얼마나 큰가. (6) 억압을 무릅쓰고 협조

를 거부하는 방위자의 능력 여부 (7) 비폭력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技法 소유 여부

만일 防衛者방위자들에게 저항의지가 있고 정치권력의 뿌리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적 기관을 가지며 비협조와 저항운동을 기술적으로 잘 추진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 힘에 의한 방위는 공격에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화된 아집과 집단적 완고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방위를 하기에 앞서 事前사전에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이 章장에서 제시된 바, 정치권력에 대한 관점에 기초하여 대중들은 비폭력적 행동기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법의 성패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선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어떠한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비폭력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 변화의 역동성, 성공의 조건, 전략과 전술의 원칙들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력에 대한 분석과 언급에 대해 더 세부적인 것을 알려면 Gene Sharp,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Porter Sargent, 1973), pp. 7-62와 Gene Sharp, *Social Power and Political Freedom* (Boston: Porter Sargent, 1980), pp. 21-67을 보라. 그러한 분석발전에 사용된 통찰력은 Auguste Comte, T. H. Green, Errol E. Harris, Etienne de al Boetie, Harold D. Lasswell, John Austin, Baron de Montesquieu, Jean Jacques Rousseau, William Godwin, Bertrand de

Jouvenel, Robert Maclver, Chester I. Barnard, Niccolo Machiavelli, W. A. Rudlin, Jeremy Bentham, Georg Simmel, E. V. Walter, Franz Neumann, David Hume, Thomas Hobbes, Jacques Maritain과 Alexis de Tocqueville에게서 온 것이다. 그들 저작에 대한 언급은 앞장의 인용부분에 들어있다.

비폭력투쟁의 성패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Sharp,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pp. 726-731, 754-755와 815-817을 보라.

Boetie로부터 따온 인용문은 Etenne de la Boetie,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 in *Oeuvres Completes d' Etienne de la Boetie* (Paris: J. Rouam & Cie., 1892), p. 12와 pp. 8-11에 들어있다. 그 번역은 Madeleine Chevalier Emrick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Boetie, *Anti-Dictator: The "Discours sur la servitude volontaire" of Etienne de la Boetie*, trans. by Harry Kur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2)을 보라.

Hitler로부터 따온 인용문은 Alexander Dallin, *German Rule in Russia 1941-1945* (New York: St. Martin's, 1957), p. 498에 들어있다.

(譯者：李相根, 國防精神敎育院敎授)

第 3 章

힘을 행사한다면(Wielding Power)

非暴力的비폭력적인 武器體系무기체계(Nonviolent Weapons System)

정치적 용어에 있어서, 非暴力비폭력 행위는 매우 단순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항상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그들에게 금지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들이 거부하는 법이면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일을 중단하기도 한다. 官僚관료들은 그들에게 내려진 지시를 수행하지 않을 때도 있다. 軍이나 警察경찰은 진압하라는 명령을 고의적으로 게을리하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나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들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통치자의 권력원천은 그 뿌리가 약화되고 소멸된다. 그 政權정권은 붕괴되고, 한때 "統治權者통치권자"였었던 사람들도 평민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그 정부의 軍事裝備군사장비나 軍隊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도, 그 도시가 전혀 해를 입지 않고도, 공장과 운송체계가 평사시처럼 잘 가동되면서도, 그리고 정부청사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체제의 政治 權力을

창출하고 지탱해 주던 사람들이 지지와 도움을 철회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권력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社會防衛사회방위(defense of the Society)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외국의 침략자들이나 국내의 권력 찬탈자들이 필요로 하는 權力 기반을 없애기 위해서 방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상되는 탄압에 대응하여 방어자들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비폭력 행위의 기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몇가지 해답을 얻게 된다.

非暴力비폭력 行爲행위는 타협이나 중재와 같이 갈등에 대해 보다 온건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어떤 논자들은 비폭력행위가 오히려 흔히 말하는 전쟁(conventional War)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다고 지적해 왔다. 비폭력행위도 전쟁처럼 전투의 한 수단이다. 비폭력행위도 병력을 배치하며 "전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戰略전략, 戰術전술을 필요로 하며, 수많은 "무기"를 사용하며, "非暴力鬪爭者비폭력투쟁자"들의 용기, 규율, 희생을 필요로 한다. 특히, 탄압이나 기타 심각한 대처수단으로 대응해 오는 단호하고 전술이 뛰어난 상대방에 대항하여, 이러한 기법이 강하게 사용되게 되면, 비폭력 행위는 "비폭력 투쟁"(nonviolent struggle) 이라고도 불리워져야 할 것이다.

비폭력행위를 적극적 전투기법으로 보는 관점은 그릇된 해석이지만 한 때 널리 인정되었던 주장, 곧 그러한 현상은 실제로 존재한 바 없었다거나, "비폭력적"이라는 것은 수동적이나 屈服굴복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다른 비방자들은 비폭력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형태의 투쟁은 기껏해야 敵들을 합리적으로 說得설득하거나 道德的도덕적으로 呼訴호소하거나, "마음 녹

이는(melting of hearts)"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행위 중 어떤 것도 첨예한 葛藤狀況갈등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68년 이래로 일어난 중대한 비폭력투쟁은 체코와 슬로바크의 저항, 폴란드에서의 Solidarity(단결 ; 연대)운동, Marcos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승리, 1989년 동독과 불가리아에서의 비폭력혁명 등에서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보여 왔으며, 심지어 懷疑主義者회의주의자(skeptics)들로부터도 높은 인정을 받아 내고 있다.

비폭력행위는 말 그대로 "비폭력의 행위(nonviolent action)일 뿐이지 無行爲무행위(inaction)가 아니다." 비폭력행위기법이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저항의 형태로, 社會的사회적, 經濟的경제적, 政治的정치적 非協助비협조의 형태로, 또한, 非暴力的비폭력적 干涉간섭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비폭력행위는 集團行爲집단행위나 大衆行爲대중행위인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기법중에 어떤 행위형태들, 특히 상징적 방법들은, 행위를 함으로써 설득을 하려는 노력이라고 간주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행위, 특히 비협조 행위는 일단 그것이 다수에 의하여 행해지기만 한다면 敵國적국의 체계를 痲痺마비시키거나 혹은 解體해체시킬 수도 있다.

폭력행위 대신에 비폭력행위를 선택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 볼 때, 비폭력행위가 다른 방법보다 훨씬 많은 성공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했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폭력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더 신중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暴力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살상을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지칭한다.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란, 폭력적 폭동, 테러행위 투쟁, 게릴라전, 또는 보통의 戰爭전쟁 등이 포함된다. 유혈이 낭자한 패배의 전망, 막대한 사상자나 파괴를 낳을 가능성, 혹은

폭력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사회적 불신, 경제후퇴, 군부통치의 가능성 증가, 또는 내부 폭력의 유보 등)로 인하여 사람들은 비폭력적인 대안을 찾게 된다. 많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폭력 행위가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이유 때문에 거부되면서 비폭력행위기법의 길을 터놓기도 하였다. 또 다른 경우에는 實用的실용적인 동기와 原理的원리적인 동기가 결합되어 폭력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갈등상황에서 비폭력투쟁을 사용하기로 결정되면, 비폭력행위로 승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임무는 그들의 기본역량을 증강하고 그 기법을 교묘히 잘 활용하는 일이다. 非暴力行爲비폭력행위가 성공하려면 충족되어야 할 必須要件필수요건들이 있는 바 비폭력행위의 실천가들은 능력껏 그 필수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비폭력행위가 성공하려면 폭력투쟁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믿어지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暴力鬪爭폭력투쟁도 몇달 혹은 몇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유고슬라비아, 알제리, 베트남에서의 게릴라 투쟁에 소요된 기간 또는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같은 國際戰爭국제전쟁에서 소요된 기간을 보자. 유럽에서의 30년전쟁이나 백년전쟁도 있었다. 군사력에 의한 전쟁수단이 성과를 빨리 거둔다는 일반화된 가정도 군사적 수단의 성공확률이 높다는 믿음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군사적 노력이 적어도 절반은 실패로 끝나는 것도 한편이 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폭력 투쟁의 본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으냐 하는 문제는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軍事的 교착상태에서는 어느 쪽도 승리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비폭력투쟁은 더러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때로는 抑壓政權억압정권을 해체시킬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완수해 냈다. 예를 든다면, Kapp 반란은 닷새도 되지 않아 실패했다. Salvador의 독재자 Maximiliano Hernandez Martinez장군은 1944년 4월과 5월, 3주

도 안되는 기간에 비폭력적 폭동에 의하여 逐出축출되었다. 같은 해 6월, 단 11일동안 이어진 투쟁으로 군사독재자 Jorge Ubico는 Guatemala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1989년에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의 獨裁政權독재정권들도 각국에서 대규모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발생한지 수주 내에 모두 붕괴하였다.

모든 비폭력투쟁이 그렇게 빨리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투쟁이 몇개월이 걸리든, 몇년이 걸리든 간에 그 효과의 정도는 非暴力行爲者들이 선택한 기법을 잘 지키며 지속적으로 교묘히 잘 적용해 가는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한 기법도 생각없이 실시하거나 쉽게 포기해 버리면 성공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效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계획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집행과정에도 엄격한 규율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비폭력행위를 보통 폭력행위와 같은 주요 행위에 대한 하찮은 보조수단 정도로 간주하거나, 다른 거대한 투쟁전략의 예비수단 정도쯤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비폭력행위는 폭력과 결합해야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章장의 뒷부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겠지만, 폭력은 비폭력기법의 本質본질에 逆效果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폭력은 매우 적게 사용될 때조차 저항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런 저항자들의 非協助비협조 行爲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게다가, 폭력은 敵對陣營적대진영, 특히 경찰이나 군대에게 미치는 비폭력운동의 影響力영향력을 감소케 하며, 제 3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동정이나 지지도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폭력투쟁에 폭력을 결합하게 되면 저항 운동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약화시켜 버린다.

비폭력행위는 갈등의 독특한 한 형태이다. 비폭력행위는 그 나름의

戰略전략, 戰術전술, "武器體系무기체계"를 갖고 있다. 현명하게 계획되고 활용되기만 한다면 그 기법은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潛在力잠재력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비폭력행위를 防衛방위에 적용할 수 있게 되려면 수많은 비폭력의 "武器"나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는 특정한 행위 방법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비폭력행위를 성공할 수 있게 하는 機制기제 (mechanism)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폭력행위 기법에 관한 전반적 이해에 기초하여, 4장에서 다루게 될 국내의 權力簒奪권력찬탈과 外勢侵略외세침략의 문제에 초점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非暴力行爲의 方法

비폭력행위에는 不作爲부작위의 행위(acts of omission)(사람들이 보통 행하는 것이고, 관습적으로 행할 것으로 예측되며, 혹은 法법이나 規則上규칙상 해야 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와 作爲작위의 행위(acts of commission)(사람들이 보통 행하지 않거나, 관습상 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법이나 규정상 금지된 행위인데도 하는 행위)가 있으며, 그 두 가지 행위의 결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비폭력행위에는 수많은 특수한 행동수단과 "무기"들이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가지의 수단이 드러났다. 틀림없이 그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수단·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투쟁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폭력투쟁 기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무기들, 곧 非暴力抗議비폭력항위와 說得설득, 非協助비협조, 非暴力的 干涉간섭을 들 수가 있다.

비폭력적 항의와 설득

이것은 주로 평화적 반대나 설득시도에 관한 상중적인 행위유형이다. 상징적 언어표현 이상의 행동이긴 하지만 非協助비협조나 非暴力的비폭력적 干涉간섭에는 못미치는 행위들이다. 그러므로 비폭력의 "무기"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라 하겠다. 이 방법에는 市街行進시가행진, 徹夜籠城철야농성, 대중연설, 성명서 발표, 존경의 포기, 상징적 공공행위, 피켓 시위, 포스터, 討論會토론회, 哀悼행위, 示威集會시위집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저항자들이 어떤 것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수단이다. 이 행위는 주로 반대세력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일 수가 있다. 그 행위는 한편으로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조성하고자 직접적 설득이나 宣傳선전을 통해서 대중, 방관자, 제 3자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이다. 이 행위는 주로 "不滿集團불만집단"(grievance group), 즉 그 쟁점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스트라이크나 경제적 보이코트로 유도한다. 이 유형 중 전단살포와 같이 온건한 방법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이코트와 같이 강경한 행위를 하도록 설득할 의도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非暴力抗議항의와 說得설득의 방법은 전단 살포, 피켓팅, 벽보부착, 시위행진 등의 형태로 상당히 널리 이용되어 왔다. 여기서 몇가지의 사례를 들어본다. 독일 교회에서 몇차례에 걸친 反 나치 교서가 낭독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民族會議민족회의의 最高幹部會議최고간부회의는 소련이 주도한 체코 침공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며 침공에 참가한 5개 바르샤바 조약국 정부와 의회에게도 "즉각 철수"를 요구

하는 성명서를 발송하였다. 1956년 11월 초, 수십 명의 헝가리 엘리트 공산주의 작가와 예술가들이 서명한 "覺書각서"에는 공무원들이 더이상 "우리의 문화적 생활을 손상시키는 反民主的方式반민주적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共產黨中央委員會공산당중앙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민중 지배의 정신으로 고취된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순하고, 건강한 민주적 분위기"를 요구하였다.

1916년 12월 4일, Wilson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5명의 參政權참정권 擴大論者확대론자(suffragist)들이 의회 방청석에서 다음과 같이 적힌 깃발을 펼쳤다. : "대통령이여, 당신은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1963년 남 베트남의 Diem정권에 대항하여 불교도들이 시위를 벌이는 동안, 사이공에 있는 Chu Van An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깃발을 찍고 佛敎旗불교기를 揭揚게양하였다. 1942년 점령지 폴란드에선 독일측이 폴란드 영웅들과 애국적 사건들을 기념하는 모든 遺蹟유적들을 파괴하였다. 그때 폴란드인들은 그 지역을 맴돌며 시위하였고, 독일 공직자들의 非行비행에 대해 歎願書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불가리아 Sofia에선 많은 유태인들이 사전에 계획된 유태인 追放政策추방정책에 대한 抵抗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다. 1943년 5월 24일에는 많은 非유태계 불가리아인들도 합세하였다.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Matei Yulzari는 다음과 같이 썼다. "파시스트 정부와 왕은 국내의 소요에 恐怖感공포감을 느껴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유태인들을 죽음의 캠프에 보내 최후를 마치게 하려 했던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불가리아 시민이었던 유태인들은 모두 구제되었다.

1962년 8월 31일, Algiers에선 2만에 가까운 군중들이 광장에 모여서 새로이 탄생한 獨立國家독립국가 지도자들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抗議항의하고, 內亂내란의 발발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대중시위는 민간정부 회복을 요구했던 1980년대 초의 각종 운동의 주요한 추진력이었다. 그 순수한 비폭력적 대중시위는 때때로 100만에서 2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을 끌어 모았던 것이다.

1989년 11월 4일, 東獨동독에서는 적어도 50만 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자유선거, 언론자유, 그리고 市民權시민권 등을 요구하면서 東동베를린을 가로질러 행진하였다. 어떤 사위자들은 그들이 과거에 지은 閣僚會議場각료회의장건물 벽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1989년 12월 25일, 프라하에선 50만 가량의 시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창피하다! 창피하다! 창피하다!"라고 소리치면서, 당시 경멸해 온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교체 조차도 개혁을 뒤집어 엎으려는 "속임수"라고 糾彈규탄하였다.

非協助비협조(noncooperation)

대부분의 비폭력행위방법에는 몇가지 형태의 비협조가 포함되어 있다. 비협조에는 의도적인 中斷중단(discontinuance), 制限제한, 保留보류(withholding)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존 관계의 거부(defiance)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反對集團반대집단 구성원들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린다. 그들은 어떤 싸움을 불매하거나 일을 중단하기도 한다. 그들이 非道德的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法의 준수를 거부하거나 稅金納付세금납부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해오던 협조행위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또 새로운 도움 주기를 보류하며,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투쟁한다. 이러한 행위로써 평상시 원할히 진행되던 일을 늦추거나 중단하는데, 이런 행위가 자연발생적일수도 있

고, 사전에 잘 계획된 것일 수도 있으며, 合法的합법적인 경우도, 不法的불법적인 경우도 있다.

비협조 방법은 사회적 비협조, 경제적 비협조, 정치적 비협조 등 세 가지 주요 類型유형으로 분류된다.

社會的非協助사회적비협조(social noncooperation)란, 어떤 惡行악행이나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하여 일상적인 사회 관계를-특수관계이든 모든 관계이든-계속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보이코트는 잘 알려진 방법이다. 1923년 Ruhr투쟁기간 동안 프랑스와 벨기에의 병사들과 공직자들은 독일인들로부터 사회적 보이코트를 당했다. 병사들이 술을 마시려고 술집에 들어서면 독일 손님들은 즉시 그 술집을 떠나버리곤 했다. 2차 대전 기간동안 덴마크에선 덴마크인들이 공공연하게 독일 병사에게 "冷待냉대 어깨"(cold shoulder)운동을 전개하였다. 어떤 때에는 덴마크인들은 그 독일 병사들이 마치 그곳에 存在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또한, 社會的 非協助方法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예상되는 행위 패턴이나 그 사회 내지 반대세력의 오랜 관행대로 행동치 않는 것도 있다. 그와 유사한 다른 방법 중에는 除名제명(excommunication), 행동거부(Lysistratic nonaction), 社會 活動이나 스포츠 활동의 中斷중단, 사회 업무의 보이코트, 학생 시위, 外出拒否외출거부(Stays-at-home), 그리고 隱身處 提供은신처 제공 등이 있다.

經濟的非協助경제적비협조(economic noncooperation)에는 어떤 경제 관계를 중단하거나 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經濟的 非協助 형태는 社會的 非協助형태에 비해 훨씬 더 많다. 여기에는 경제적 보이코트, 스트라이크 등도 포함된다. 경제적 보이코트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거나, 팔거나, 혹은 취급하는 등의 경제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경제적 보이코트에는 1차적 보이코트와 2차적 보이코트가 있다. 1차적 보이코트는 敵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23년 Ruhr투쟁기간동안 독일 철도 노동자들은 프랑스로 석탄을 운반하길 거부하였다. 또 1941년 9월, 프라하 시민들이 독일인이 경영하는 신문에 대해 不買運動불매운동을 벌였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2차적 보이코트란 적에 대항하는 1차적 보이코트에 제 3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 3자에게 하는 보이코트이다. 예를 들면, 미국내에서 이미 보이코트된 California産 포도나 남아프리카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에 대해 보이코트하는 것 등이 있었다.

경제적 보이코트에도 많은 유형이 있다. 소비자 보이코트, 임대 보류, 국제 소비자 보이코트, 生產者생산자 보이코트, 工場閉鎖공장폐쇄, 빚이나 이자의 支佛拒否지불거부, 預金預置예금예치의 撤回철회, 國際 貿易去來무역거래중단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보이코트는 주로 勞動組合노동조합과 民族解放運動민족해방운동에 의해 이용되어 왔다. 경제적 보이코트는 소비자, 노동자, 생산자, 배급자, 소유자, 경영자, 재원보유자, 정부 등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

스트라이크는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고안된 총체적이며, 신중히 계획된, 그리고 대개 일정 기간동안 노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쟁점(issues)은 대개 경제적인 것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目的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집단들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스트라이크를 벌이는 사람은 대개 일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제시한다. 때로는 스크라이크를 하겠다는 威脅만으로도 상대방으로부터 讓步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農業勞動者농업노동자, 소작인, 공장 노동자나 사무원 등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때도 있다. 스트라이크는 완전히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노동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일을 制限的으로 하는 것도 있다. 스트라이크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항의 스트라이크, 갑작스런 업무 중단(quickie walkouts), 小作人소작인 스트라이크, 농장 노동자 스트라이크, 投獄者투옥자들의 스트라이크, 전문가들의 스트라이크, 工場 스트라이크, 遵法 鬪爭준법투쟁 스트라이크, 꾀병을 대며 출근을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總罷業총파업 등을 들 수 있다. 경영주와 노동자들은 經濟的 休業휴업을 할 때 서로 聯合연합하기도 한다.

스트라이크는 象徵的상징적으로 자신의 見解를 表明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23년 1월 15일 프랑스-벨기에군이 Ruhr를 침공한지 나흘 후에 Ruhr와 Rhineland의 시민 대중들은 저항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30분간 항의 스트라이크를 벌였다. 1968년 8월, 소련군이 프라하에 입성한지 단 몇시간 만에 체코인들은 소련 침략자에 반대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抗議示威항의시위를 벌였다. 1989년 11월 27일에 수백만에 체코인들과 슬로바크인들은 공산주의 지배에 반대하고 自由選擧자유선거를 지지하는 2시간 가량의 總罷業총파업을 일으켜 전국을 痲痺狀態마비상태로까지 몰아가기도 했다.

經濟權力경제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가 아주 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오랜 역사기간동안 많은 나라에서 조합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스트라이크 방식을 취했던 예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때로는 스트라이크가 정치적 목적이나 革命的혁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되기도 하였다. 1943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나찌가 점령한 네덜란드에서 일련의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 이는 네덜란드 군인들을 독일로 강제 수용하려는 사전 계획에 대해 다수의 공장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항의하였던 것이었다. 1944년

6월 30일, 덴마크 노동자들은 독일로 하여금 계엄령을 철회하게 하고 증오스러운 덴마크 파시스트 Schalburgkorps를 덴마크로부터 축출하기 위해서 5일간 總罷業총파업을 일으켰다. 결국 협상을 통해 독일로부터 몇가지 양보를 얻어냈다.

경제적 操業中斷조업중단(economic shutdown)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스트라이크가 사업장 閉鎖폐쇄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는 1905년 말,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핀란드의 自治性자치성을 회복하려는 투쟁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였다. 1956년 완전한 비폭력적 방식으로 사업장을 폐쇄했던 것은 아이티의 독재자 Magliore장군을 대통령직으로부터 물러나게 했던 주요인이 되었다.

政治的 非協助정치적 비협조(political noncooperation)는 주어진 조건에서 늘 해 오던 정치참여 행위를 계속하길 거부하는 것이다. 개인들이나 소집단들이 그러한 방식을 실천할 수도 있겠으나 정치적 비협조는 대개 많은 사람들, 정부인사들, 혹은 정부 자체가 행하는 것이다.

정치적 비협조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무한히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적 비협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敵들을 돕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정치적 비협조는 통치자의 正當性정당성이나 權威권위에 대한 부정, 정부 기구나 명령에 대한 보이코트, 여러 유형의 비협조나 불복종, 정부 공직자와 종업원들, 선거인 조직의 지연공작과 협조거부, 국제적 정치활동 등등 다양한 형태를 취해 왔다. 특정의 법규, 법령, 규제, 포고령, 군대나 경찰의 명령 등을 고의적, 공개적, 평화적으로 위반하는 市民시민 不服從불복종은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치적 비협조의 目的은 단순한 항의나 개인적 관계단절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종 정치적 비협조는 정부나 정부 기구의 統制權통제

권을 掌握장악하려고 하는 불법 단체에 대해, 때로는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비협조의 목적은 정부정책과 정부구성을 바꾸거나 정부파괴의 제한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런 정치적 비협조는 국내의 權力 簒奪者찬탈자나, 傀儡政府괴뢰정부, 혹은 外國 支配者의 통치에 대항하여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은 그러한 공격을 敗退패퇴시키고 다시 합법적인 정부를 復元복원하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정치적 비협조는 제 1장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례 모두에서 볼 수 있었던 抵抗의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정치적 비협조는 權力 簒奪者나 占領者에 대해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핵심적 成分이다. 정당성이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人的支援, 行政, 經濟資源 등과 같은 중요한 권력원천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1923년 1월 19일, 독일 정부는 국가 기구나 지방 기구에게 프랑스-벨기에 점령국의 어떠한 법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침략받기 이전의 독일의 權威機構에 따르라고 지시했다. 1968년 소련이 침공한지 3일 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市長은 그와 협상차 파견된 소련 대표들과의 接見접견을 거부했다.

많은 형태의 정치적 비협조 중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조직체를 보이코트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교사들은 1942년 Quisling 政權에 의해 창출된 파시스트 주도의 教師協議會교사협의회의 구성원이 되길 거부하였다. 군대나 경찰에 협조하길 거부하거나, 임명된 "공무원"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기존 기관을 해체하길 거부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 집단적인 행정적 비협조는 Kapp반란을 실패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 점령지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경찰과 독일군들이 때로는 逮捕行爲체포행위를 고의적으로 태만히 하거나, 탈출을 방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 제국 군대내에서 발생한 대규

모 反亂반란은 짜르를 廢位폐위시켰던 1917년 2월 혁명의 주된 요인이었다.

비폭력 저항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비협조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비폭력 캠페인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방법은 방어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방어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들, 독립적 이니시어티브 행위 패턴, 제도 등을 유지함으로써 敵들의 공격을 억제할 수가 있다. 공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비협조는 공격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의 운영은 물론 그 存在 자체도 공격할 수가 있다.

非暴力비폭력 干涉간섭(Nonviolent Intervention)

마지막 부류의 이 방식은 비폭력수단으로써 어떤 상황에 직접 介入하여 그 상황을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방식과는 다르다. 행위들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거나 協助협조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대신 이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主導權주도권을 잡아 그 체제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그런 간섭이 없어지거나 그들 행위를(무마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과거의 모습대로 남아 있을 수 없게끔 하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방식은 심리적,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형태를 띠게 된다. 여기에는 斷食鬪爭단식투쟁(fasts), 連坐籠城연좌농성(sit-ins), 비폭력적 妨害방해, 새로운 사회적 행위의 형성, 連坐罷業연좌파업, 대안적 經濟機關경제기관의 설립, 拘禁구금, 野合야합함이 없이 일하기(work-ons without collaboration)와 對抗政府대항정부(parallel government) 설립 등이 포함된다.

비폭력 간섭이 공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즉각적인 도발 없이도 투

쟁을 적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정착된 행위패턴이나 정책, 관계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기관을 妨害방해하거나 破壞파괴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새로운 행위패턴, 정책, 관계, 제도 등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종류의 비폭력적 행위와 비교해 볼 때, 비폭력적 간섭의 방법은 보다 直接的이고도 즉각적인 挑戰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빠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행위의 첫 반응은 더 신속하고 심한 탄압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敗北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만일 干涉간섭이 성공한다면 다른 비협조 방식보다 승리를 더 빨리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간섭의 방해효과를 참고 견디기가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사무실에서 連坐籠城연좌농성하는 것은 人種差別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이 보이코트하거나 피켓들고 시위하는 것보다 더 즉각적이고도 철저하게 정상적인 운영(operation)을 혼란케 할 수 있다.

이런 비폭력행위 유형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美國 民權鬪爭민권투쟁에서 연좌농성 형태의 육체적 개입이 식당에서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광범하게 실천되었다. 1955년에 대규모 비폭력 행위가 Goa를 공격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포르투갈의 통치권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3년에 2만 5천 명의 동독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러시아 탱크가 동원되었을 때, 시위 군중들은 자리에 앉아 탱크를 肉彈抵止육탄저지하였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아메리카 토착민들은 Alcatraz섬이 원래 그들 부족의 땅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그 섬을 非暴力的으로 차지하였다.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는 동안, 폴란드 사람들은 나찌의 통제를 받지 않을 대안적이고도 獨立的인 教育體系교육체계를 세웠다. 1968년 8, 9월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대안적인 라디오 방송 체계를 2주동안 쉬지 않고 운용하면서, 소련 침

략군을 반대하고, 그들의 선전을 논박하며, 각 개인들과 사건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고, 더 비폭력적인 저항을 위한 指針지침을 提供제공하였다. 1989년 12월 11일, 수만 명의 시위자들이 동독의 Leipzig에 소재했던 국가보안기구 본부건물(State security heasdquaters b/d)을 포위하여 지방 보안군의 首腦수뇌에게 "국민들이 安保複合體안보복합체(security complex)를 檢閱검열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3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검열관"들은 Leipzig 시민들에게 국가가 "査察사찰"하고 있다는 증거를 필름을 기록했으며, 지방 보안군 수뇌의 비리가 적힌 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對抗政府대항정부(parallel government)는 革命的 狀況이나 혹은 국내權力簒奪者권력찬탈자나 外國占領외국점령에 대항하는 국가방위에서 그러하듯이, 사회와 정치 체계의 전체 향방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비폭력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혁명적 상황에서 대항정부는 현 정부를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권기관을 설립한다. 즉, 새로운 정치 구조가 생겨나서 대중의 지지와 충성을 받으면서 차츰 정부기능을 수행하다가 끝내 구정권을 正當性이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 비폭력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밀한 分析분석과 比較研究비교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었다. 그런 현상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때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정부가 현 정부를 완전히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투쟁의 요인이 되어 왔다.

대항정부의 고전적 사례는 1765-1775년의 美國獨立運動미국독립운동에서도 볼 수 있다. 1774년 이전에 英國이 지배권력을 美國植民地미국식민지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한 데 대하여 저항했던 식민지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의 비폭력투쟁을 고안해 냈다. 강제법(the Coercive Acts)

으로 야기된 1774-1775년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미국인들은 合法的 方式으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여러 지역의 식민지 總督총독들은 저항운동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議會의 기능조차 금지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植民地 住民들은 새로운 政治機關을 만들어 기존 기관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임시적인 立法機構와 抵抗委員會저항위원회 및 統治委員會통치위원회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大陸協議會대륙협의회(continental association)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經濟的, 政治的 非協助 프로그램으로 1774년 10월, 제 1차 "大陸會議대중회의"(continental congress)에 의해 채택되었다. 각 지역, 지방, 그리고 汎植民地委員會범식민지위원회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통신망은 강제법에 대한 저항을 지원하고 강화하였다. 그보다 일찍 설립된 連絡事務所연락사무소(Committees of Correspondence)와 함께 이들 위원회들은 많은 정부기능을 수행해 냈다. Ronald McCarthy가 밝히고 있듯이, 대항통치기구들은 立法과 執行집행업무를 수행했고, 稅金세금징수기능도 책임지고 행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裁判所재판소의 役割까지 대신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식민지 입법 기구들이 영국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抵抗機構저항기구나 自治政府자치정부가 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관이 정치권위체로써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때에 이런 기구들이 대체정부가 됨에 따라 투쟁은 더욱 근본적인 수준으로 변해 갔다.

對抗政府에 관한 가장 명백한 예는 1905년과 1917년 사이의 러시아 혁명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1905년에 젬스트보 의회사무국(Bureau of Zemstvo Congresses)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각 지역과 각 민족들은 모두 首都수도로부터의 統制통제를 단절하여 그들 자체의 自治政府를 건설하였다. 그들 중 몇몇은 1906년까지 계속 존속했다.

1917년 10월, 볼세비키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臨時政府임시정부와 독립 소비에트 혹은 地方議會지방의회(councils)등이 統治權力통치권력을 행사했다. 대항정부구조의 발생요소는 1930-1931년의 satyagraha 캠페인 기간동안에 인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제 4장에서 논의되겠지만, 방위적인 상황에서 대항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힘을 행사하려면(Wielding Power)

여지껏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만큼 非暴力 技法기법은 權力關係권력관계를 변화시키면서 작용한다. 비폭력행위는 적대하는 집단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비폭력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행사한다.

이러한 투쟁기법은 葛藤갈등이나 투쟁에 관한 일반인들의 가정, 곧 폭력은 폭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가정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힘을 사용한다. 비폭력방식들은 이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훨신 더 복잡하다. 확실히 정치적 폭력과정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비폭력투쟁이 적대하는 體制체제의 기초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非暴力行爲의 사례들이 결코 같을 수는 없다. 비폭력 집단이 행사하는 影響力영향력과 壓力압력, 적대자들의 反應반응, 그 葛藤갈등 狀況의 性格 등이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의 와중에서 생길 수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지적할 수가 있다.

비폭력 시위기간 동안에 몇가지 相互聯關상호연관된 힘과 과정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非協助적이고 不服從불복종하는

시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배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 억압에 직면한 저항자들이나 저항의 지속으로 인한 효과, 제 3자집단에 의한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효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상적인 군사 캠페인이나 게릴라전에서 매우 중요한 心理的심리적 요소와 士氣사기의 문제가 비폭력투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폭력에 비해 비폭력기법은 폭력보다 더 "直接的직접적"으로 또 더 間接的간접적"으로 敵의 권력에 打擊타격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폭력은 주로 수많은 적의 군사나, 때로는 여러 다른 공직자나, 그 보좌역들의 살상을 시도한다. 여기서 흔히 상당 규모의 物理的물리적 破壞파괴가 일어난다. 군사력과 군사적 시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政權의 정치·사회·경제의 힘에서 나온다. 그것은 단순히 탱크, 소총, 폭탄의 양보다 훨씬 더 깊은 힘의 뿌리에서 나온다. 따라서 상대방 군사력에 대항하는 군사적 노력은 敵들의 權力基盤권력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권력의 "表面표면"(expressions)을 공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폭력기법은 敵의 權力의 뿌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정치적 폭력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앞장에서 살펴 보았던 바와 같이 敵의 힘의 뿌리는 그들의 수하기관과 엘리트들, 대중과 사회 기구들의 직·간접적인 服從복종이나 協助협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의 비협조나 불복종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협조와 복종을 제거해 버린다. 예를 들면, 統治者통치자의 正當性을 거부할 때 그 측근들이나 다수 대중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명분이 결정적으로 감소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광범한 대중의 불복종과 저항은 집행에 큰 문제를 낳게 되고, 總罷業총파업은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으며, 관료들의 행정적 비협조도 널리 퍼지면 정부활동을 방해하게 되고, 적대국의 警察경찰과 軍隊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면

비폭력 저항자를 진압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해체되고 만다.

비폭력투쟁은 다른 방식으로 적대자들에 대항하여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비폭력투쟁은 그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군사력보다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쟁점에 초점을 모을 수 있다. 예를 들면, 葛藤갈등의 핵심이 주로 경제적인 것이라면, 그때는 보이코트나 스트라이크와 같은 경제적 행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응할 경우에는, 1905년 러시아혁명 기간동안 8시간 노동제을 보장받으려고 러시아 노동자들이 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귀가해 버린다. 그때 그러한 투쟁의 성공 여부는 그러한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상대측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느냐 하는 점과 노동자들이 그처럼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쟁점이 政治的인 것이라면 그때는 정치적인 행위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Kapp주의자들이 바이마르 共和國공화국으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을 때, 市民들이나 官僚관료, 혹은 國家의 政府機關정부기관등은 그들의 正當性을 부인하고, 어떤식으로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한 비협조행위들이 그 쿠데타에는 致命的치명적이었던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言論·出版에 대한 사전 檢閱검열이 쟁점이 된다면 檢閱規制검열규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런 조치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간행물이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출간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1905년 러시아 혁명, 나찌 점령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저항, 1980-1989년 기간동안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려는 폴란드인들의 투쟁,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팔레스타인들의 저항 등의 사례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나찌가 덴마크를 점령하고 있던 기간에 538종의 불법적인 신문이 발행되었다. 1944년에는 이처럼 배포되는 불법신문의 발매부수가 1천만부에 육박하였다.

非暴力技法은 폭력에 비해 상대방의 권력을 보다 더 간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폭력 저항자들은 적국의 경찰, 군대 등을 그들과 비슷한 병력을 가지고 정면대결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대응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저항세력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보다 많은 힘과 支援을 動員하며 도움을 주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자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對應暴力대응폭력을 사용하는 대신 비폭력적으로 탄압에 대응함으로써, 비폭력 행위자들은 상대방의 탄압이 대중을 순종케 할 만큼 위협하지도 못하며, 저항세력을 흥분시킴으로써 적대세력에게 유리한 폭력방법을 쓰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처럼 非暴力的 規律규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저항하면, 비폭력 저항자들은 또 다른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상대방은 비폭력 저항세력에게 暴力的 彈壓탄압을 가함으로써 평상시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도 고립될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적대세력의 權力立地권력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또한, 비폭력 투쟁자의 수가 불어날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한 지지도도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적대세력의 폭력에 대해 폭력적 방법이 아닌 간접적으로 대항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章의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될 "政治的柔術정치적유술(Political Jiujitsu)"의 과정이다.

이런 유형의 갈등상황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권력이 꾸준히, 때로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것은 權力의 핵심적 근원의 이용도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각 집단에게 주어지는 支持度지지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양자가 暴力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크고,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투쟁은 양자 권력의 뿌리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함

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은 권력의 뿌리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폭력적투쟁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즉각적으로 감지될 수가 있다.

비폭력 전략가들은 양편의 권력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潛在的잠재적이고도 갑작스런 변화를 잘 捕捉포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비폭력 투쟁가들은 3개 집단의 힘과 忠誠心에 영향을 미치고자 힘써야 한다. 첫째, 그들은 그들 자신과 지지자들의 역량을 끊임없이 增大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그들은 불만을 지닌 보다 많은 집단들에게 能動的 參與를 촉진시킴으로써 세력을 늘릴 수 있다. 셋째, 비폭력투쟁의 성격상 抵抗者들은 敵對陣營적대진영 또는 제 3자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될 수도 있다. 폭력수단이 사용된다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폭력을 사용치 않게 되면, 옆에서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사용과는 무관하게 현 쟁점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로 非暴力的 手段수단에만 의존하며 그 투쟁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同情心동정심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敵對陣營적대진영과 제 3자들에게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은, 비폭력적 집단에게 적대세력의 權力 源泉원천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버림으로써 敵對權力적대권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때로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能力을 주게 된다.

보통 경쟁자들의 相對的 權力位置에서 생기는 이러한 복잡한 변화가 그 투쟁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戰略의 重要性

권력관계의 변화는 비폭력적 집단이 사용하는 戰略·戰術과 개별적 方法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투쟁의 全過程전과정도 역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비폭력행위에 있어서도 전략이 군사전에서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다.

戰略전략의 목적은 목적달성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폭력행위의 구체적 방법도 만일 전반적인 전략이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구상을 위한 공동적인 노력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선택되어진 전략·전술과 사용되어질 수단은 권력의 어떤 뿌리가 영향을 받으며 어느 정도로 그것이 약화·단절되는가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쟁점과 관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개 경제적 행위는 경제적 쟁점에 적합하며, 정치적 비협조와 간섭은 정치적 쟁점에 적절하다. 그러나 어떤 普遍的보편적인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 쟁점이 주로 정치적인 경우에도 경제적 저항이 더 유용한 경우도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행위는 신중히 개발된 전체계획의 한 부분으로써 調和조화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非暴力戰略家비폭력전략가들은 깊은 사고와 신중한 주의력을 가지고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戰略原則전략원칙에 관한 동원가능한 최상의 자원과 비폭력투쟁 및 그 갈등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비폭력투쟁에서 전략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다른 장에서도 다루어질 것이며, 民間主導민간주도의 防衛방위(Civilian-based Defense)에서의 몇가지 전략적 원칙과 그 대안도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權力出處권력출처의 重要性중요성

제 2장에서도 논의하였듯이, 비폭력투쟁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그러한 비폭력 행위를 실천하고 지지해 주는 독립적인 사회기관이나 집단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다시 말하여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이이 전문가 단체, 종교단체, 조합, 정당 내지는 기존의 각종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실천되거나 도움을 받게 될 때, 특히 地域的, 文化的, 民族的, 血緣的혈연적 집단과 지방정부와 그 기구들의 후원을 받을 경우에 더욱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權力의 出處는 덜 공식적으로 조직되며,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이 일어나기 전이나, 수행되는 도중에 생겨날 수도 있다. 아니면 오랫동안 비활동적이었거나 어느 정도 독립적 활동능력이나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도로 中央集權化된 정치체계의 의도적인 조치로 약화되어 있었던 낡은 기구일 수도 있다. 그러한 기구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회의 통치자나 침공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재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새롭게 생겨난 권력의 출처와 다시 부활된 권력 출처가 모두 비폭력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1974년과 75년, 連絡委員會연락위원회와 초법적인 지역정부를 형성시켰던 미국 독립운동의 비폭력 투쟁 국면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Rhode Island에서는 기존의 지역정부, 도시집회, 그리고 공식적인 지방정부들까지도 1765-1775년에 세 차례의 非協助示威비협조시위과정에서 영국통치에 반대하는 核心機構핵심기구가 되었다.

1956년 헝가리 혁명의 첫번째 비폭력투쟁 기간동안 새롭고, 크고, 강력한 노동사회의 운동이 공장 노동자, 전문직 및 다른 집단들간에 형성되어 나갔다. 그 운동은 빠르게 정치적 차원으로 확산되어, 혁명의 2차 국면인 폭력투쟁 단계에서는 러시아군에 의하여 헝가리군이 패배할 때가지 몇주동안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代替대체(substitute) 民族政府민족정부를 형성하였다.

여러 다른 경우에서도 스포츠 클럽, 교원조직, 그리고 나찌 점령기간 중 노르웨이에서의 國家敎會국가교회등과 같이 오랫동안 존속해 왔던 組織體조직체들이 저항의 근거지로써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kapp반란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 조합, 지역정부 그리고 기타 기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抵抗運動저항운동에서는 몇주동안 共産黨공산당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抵抗機構저항기구가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폴란드 민주화 운동에서는 독립적인 연대(Solidarity)조합과 학생, 농민단체같이 새로 조직된 다른 많은 조직들이 강력한 투쟁기구의 구실을 했다. 군사 쿠데타 직후의 戒嚴令계엄령 기간동안에도 약화되긴 했어도 이들 기구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권력 출처와 지하 출판사 같은 다른 권력 출처들이 1980년 후반에 폴란드에서 民主的 力量을 유지·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敵들의 문제점(The Opponents' Problems)

非暴力行爲비폭력행위에 의한 도전은 온건한 도전이어서 현상태를 조금 흔들어 놓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挑戰도전이 현상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관심은 불평불만이나 적대자의 존재로 모아진다. 밑에 깔려 있던 갈등이 표출되어서 의견의 兩極化양극화를 낳게 된다.

강력한 비폭력행위에 직면한 敵對者적대자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不滿要人불만요인들, 비폭력 세력의 명백한 正當性, 행위의 質질, 參與者참여자의 數수, 복종과 협조의 철회를 표시하는 방법, 저항자들이 非暴力 原則원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 적대자의 보복에 대해 굴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도전의 심각도는 다르다. 또한 이러한 투쟁이 일어나는 사회적·정치적 풍토에 의해서 그 成敗성패는 어느정도 결정될 것이다. 그 기본적 조건에는 체제가 체제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도 허용할 수 있는 非劃一性비획일성(nonconfomity)의 정도, 모든 집단이 정권에 대해 가지는 支持度지지도나 적대감의 정도, 비협조나 저항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마지막으로 정부의 존속에 필요한 權力의 물적, 인적, 도덕적, 제도적인 토대가 계속 확보되는가 혹은 이러한 것들이 제한되는가 아니면 철수하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敵對者적대자가 비폭력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중에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비폭력기법에 특유한 力動性(dynamics), 심리과정(mechanisms)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어려움은 폭력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아해 한다거나, 혹은 그 비폭력기술에 익숙치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에 대해 적대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비폭력투쟁자들을 制壓제압할 수가 없다. 양편은 제각기 전쟁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軍事鬪爭군사투쟁 기술을 이용한다. 비폭력투쟁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敵對者적대자들은 보다 洗練세련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덜 잔인하게, 그리고 더 유능하게 문제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非暴力集團비폭력집단들도 어떻게 하면 더욱 기술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敵對者의 통제와 세련된 手法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

어떤 정부나 다른 階層的계층적 조직이 국민들의 완전한 지지를 받거나, 전혀 지지를 못받는 극단적 경우는 간혹 있더라도 극히 드문 일이다. 그들은 대개 부분적인 지지를 받는다. 비록 어떤 정권이 종국에 가서 不服從, 非協助, 抵抗 등에 의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정권은 비폭력 집단에게 잔인한 억압을 가할 정도로 충분히 또 오랫

동안 일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왔을 것이다. 따라서 폭력적인 적에 대항하여 투쟁함에 있어 비폭력기술을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종국에 가서 변화를 가져올 몇가지 方式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행중인 시위가 成功하고 있는지, 失敗실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야만 한다.

비폭력투쟁을 사용하는 것과 적대자들을 유순하게 만드는 일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적대자들은 그들에 대한 도전이 非暴力的비폭력적인 경우라도 그들의 權力권력이나 政策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런 행위가 그들의 지배에 심각한 威脅위협이 된다면, 또한 저항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用意용의가 없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에 對應대응해 올 것이다.

진압 (Repression)

非暴力行爲비폭력행위는 폭력적인 제재를 가할 능력이 있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적대자들에 대항해서 행하게 된다. 사실상 비폭력투쟁은 나찌 독일, 폴란드 공산정부, 동독,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국, 유고슬라비아, 소련, Jorge Ubico 통치하의 과테말라, Maximiliano Hernandez Martinez 치하의 El Salvador, Pinochet 치하의 칠레, 남아프리카 분리주의, Newin과 그 후계자들 치하의 버마 등과 같은 폭력정권에 대항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한 비폭력적 도전에 직면케 될 때, 적대자들은 폭력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서서히 줄여나가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압이란 심각한 비폭력행위의 도전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대응방법이다. 진압은 檢閱, 기금이나 재산의 沒收몰수, 通信통신의 단절, 經濟的 압력, 체포, 구금, 징용, 集團收容所집단수용소에의 수용,

공작꾼(agent provocateurs)의 투입, 위협, 구타, 살해, 학살, 고문, 戒嚴令계엄령, 強制處分강제처분,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報復보복 등의 형태로 집행된다. 진압의 정도나 유형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양하다. 그러나 비폭력집단이 할 수 있는 진압은 반대세력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暴力烽起권력봉기에 대항하거나 외국에 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건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政府權力정부권력이 신사적이어서가 아니라, 과격한 폭력적 억압이 비폭력의 도전을 받는 정권에게 逆效果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폭력적 진압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은 비폭력행위가 旣存秩序기존질서에 대한 실질적 威脅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증거이다. 이것이 非暴力技法비폭력기법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면서 기존 질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적국의 軍事的行爲군사적행위가 아군의 군사 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적대자들이 폭력을 쓴다는 것이 우리의 비폭력행위를 포기시키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억압의 폭력성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체제를 밑받침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그 體制체제의 성격이 드러남으로써 투쟁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극단적인 억압은 많은 시민들이나 제3자에게 그 체제의 폭력적 성격을 명백히 노출시키게 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지지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비폭력 저항자들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앞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진압이 반드시 복종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敵對者 制裁에 효과를 보려면, 恐怖感공포감을 갖게 하거나 복종의지를 심어 놓는 등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에서처럼 계획과 규율, 혹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충성심이나 목적의식이 비폭력투쟁자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버텨나갈 수 있게 만드

는 것 같다.

각 사례들을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그러한 공포에 굴복치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 왔다. 最前方최전방에서처럼, 사람들은 그런 공포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거나, 더욱 극적으로는 아예 恐怖心공포심을 잊어 버리기도 했다. Buenos Aires의 Plaza del Mayo의 여성들이 "失綜실종된" 남편과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지칠줄 모르게 행진했던 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했던 한 사례이다. 대학살(Holocaust)의 초기 학자 Gerald Reitlinger는 프랑스 시민들이 게쉬타포의 테러행위와 위협행위에 직면하면서도 服從복종하거나 同調동조하길 拒否거부하였으므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태인 중 75%는 처형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최후의 해결책(the final solution)은 프랑스에서 실패했는데, 이는 자기 모멸감으로 고통받으면서 공포를 이겨내는 법을 배운 보통 사람들의 품위 때문이었다." Alabama주 Montgomery시의 버스 보이코트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각 개인들을 폭행했지만, 오히려 그 도시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결단력을 강화하고 공포심을 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대세력들은 공포로부터 완전히 解放해방된 흑인들을 다루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빈번히 실수한 것으로 判明판명되었다."라고 Martin Luther King목사는 적고 있다.

1953년 6월 17일, 동독 Halle에서는 비록 러시아 탱크가 도심지를 누비고 다니며, 인민 경찰이 공중에다 空砲공포를 쏘아대었음에도 불구하고, 6만 명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그 도시의 장터에 모여 反政府반정부 大衆集會대중집회에 참가했다. 1986년 2월, Manila에서는 불복종하는 군부내 장교와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보내진 탱크의 앞길을 필리핀 국민들이 평화적 방식으로 封鎖봉쇄해 버렸다.

戰鬪的인 非暴力規律규율

暴力的인 彈壓탄압에 직면할 때, 비폭력저항자들은 힘이 있는 한 끈질기게 버티면서 屈伏굴복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승리에 대한 代價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처벌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한다. 抑壓의 가능성이나 그 彈度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 위험성은 비폭력행위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양편 모두가 폭력을 사용할 때도 이런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非暴力規律(nonviolent discipline)이라 함은 暴力的 強壓에 직면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비폭력행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리 계획된 싸움에서 非暴力規律은 사전에 결정된 戰略, 戰術, 行爲方法등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규율을 유지하며 투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暴力的이든 非暴力的이든,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거부했던 집단의 예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 B.C 480년 Thermopylae에서 훨씬 우세한 Persia군대에 맞서서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웠던 Sparta군인들의 용감한 방어와, 1944년 바르샤바 유태인거주지역(ghetto)에서 나찌에 대항해 일어난 유태인들의 봉기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폭력투쟁자들은 보복이나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규율을 지키며 저항을 계속해 나갔다. 1930년 Dharasana에 위치한 소금 저장소에서 印度 民族主義者민족주의자들은 영국의 사주를 받은 폭력단들에 의해 뼈가 부러질 정도의 毆打구타를 당하면서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던 경우로부터 기관총사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여인들이 유태인 남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했던 경우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례는 무척 많다.

彈壓的 狀況에서도 비폭력 집단은 상대방에 대하여 보다 큰 自制力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양을 줄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非暴力의 規律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적대세력의 탄압에 직면하여 비폭력규율을 지켜나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너무 순진한 행위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러한 비폭력규율이 성공을 위한 必須要素필수요소이자 권력관계에서 유리한 변화를 얻어낼 수 있는 前提條件전제조건인 것이다. 비폭력규율이 양보될 수 있는 경우란 패배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이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非暴力의 規律을 유지한다는 것만으로 승리를 장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억압과 고통 앞에서 비폭력집단은 그들의 士氣사기, 連帶意識연대의식, 그리고 투쟁을 계속하려는 決斷力결단력 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非暴力行爲를 사용하는 훈련을 진척시키고, 彈壓탄압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런 노력에 보탬이 될 것이다. 非暴力의 技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점을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때, 사람들은 더욱 規律的규율적이 될 것이다. 비폭력적 투쟁가들은 또한 폭력에 대해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 혹은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알게 될 것이다. 비폭력 투쟁의 경우 저항자들이나 옆에서 구경하는 傍觀者방관자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겠지만, 사상자 수는 暴力 蜂起봉기, 게릴라전, 通常戰爭통상전쟁 같은 폭력적 저항 운동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잘 인식하게 되면 혹독한 탄압 중에서도 필요한 규율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들은 오히려 저항자들이 暴力的 手段을 사용해 주기를 바랄지 모

른다. 그런 폭력적 수단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집행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적들은 폭력을 다루는 데 훨씬 더 능숙하기 때문에, 혹독한 탄압을 가하거나 스파이 혹은 방해꾼들(agent provocateurs)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저항자들의 폭력을 사용토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에 帝政 러시아로부터 독립키 위해 벌인 핀란드인들의 非暴力的 非協助運動에 맞서 싸우면서, 러시아 총독은 Ochrana(러시아 비밀경찰)로 하여금 러시아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工作꾼들(agent provocateurs)을 고용케 하거나, 핀란드인들이 폭력을 사용토록 교사하여 그 운동에 대해 가하는 가혹한 탄압을 正當化시킬 수 있었다.

만일 비폭력집단이 계속 規律규율을 지켜 나가고 그런 탄압이나 다른 통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상당부분을 망라한 대중적 非協助·不服從 運動을 벌여 나간다면, 그러한 적들의 의도는 효과적으로 封鎖봉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도자들이 체포되어도 非暴力運動비폭력운동은 명확한 지도부없이 운동을 계속해 가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상대방이 불법적인 새로운 시도들을 불법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 不服從불복종을 彈壓탄압하려는 시도가 다른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한 非暴力的 抵抗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적들이 협조나 복종을 유도하는 대신 탄압을 가하게 되면, 끊임없이 복종이나 도망가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彈壓으로는 불복종하는 대중을 統制하지 못함이 판명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탄압기관이 대중의 불복종에 의해 무력해질 수도 있다.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체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동원 가능한 警察경찰이나 軍隊군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첫번째 死傷이 발생할 때 고통이 심할 수는 있지만 공포에 떠

는 군인이 없는 것처럼, 적의 忿怒분노나 抑壓억압에 직면해서 깜짝 놀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비폭력투쟁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면, 현명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만일 적들이 더 잔악해지거나 저항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폭력투쟁의 한도내에서 戰略과 鬪爭方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적들의 잔혹성이 반드시 순간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一時的인 局面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있다. 잔혹성은 공포, 분노나 대응폭력에서 나온다. 분노, 공포나 대응폭력 등이 없는 곳에서나 억압, 잔혹성이 적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곳에서는 적들은 폭력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政治的 柔術유술(Political Jiujitsu)

투쟁을 계속하면서 비폭력 규율을 계속 유지하려는 비폭력 집단을 억압하려면 "政治的 柔術"이라는 특별한 과정에 발을 들이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적들의 균형을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적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상대방의 폭력적 저항을 끌어내지도, 굴복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비폭력 집단에 대한 苛酷行爲가혹행위는 폭력봉기에 대한 가혹행위에 비해 적진영이나 전세계에게 정당화시키기가 더 어렵다. 물론 어떤 정권이 세계 여론 또는 國內 輿論을 거역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으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가혹행위에 관한 뉴스는 아무리 검열해도 새어 나갈 것이다. 탄압이 가혹해 질수록 그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나 저항을 누그러뜨리기보다 더 증대시킬 것이다.

상대방의 탄압이 비폭력 저항자들의 規律, 結束力, 불굴의 의지와 부딪치게 되면 탄압자들은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된다. 비폭력적인

사람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증가할수록 그 정권은 더 비겁하게 보일 것이다. 반면, 비폭력 진영에 대한 同情心과 지지도는 여러 분야에서 더 증가한다. 일반 대중들은 적 정권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며 저항세력에 기꺼이 가담하려 할 것이므로, 저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한, 어떠한 危險부담이라도 무릅쓰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게 될 것이며, 투쟁초기에 멀리서 관망만 하던 사람들이 탄압의 희생자를 지원하게 되고, 抑壓政權의 가혹행위나 정책에 저항하게 된다. 1989년 11월 17일, 체코의 示威鎭壓 경찰들은 Prague 거리에서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비폭력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진압했다. 이러한 毆打行爲구타행위는 강경한 共產政權공산정권에 대한 저항을 촉진시켰다. 체코인들과 슬로바크인들은 구타가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에 추모사당을 짓고 사상된 사람들을 기리는 영웅동상을 세웠다. 수십만 인파가 경찰 진압이 있을 때마다 매일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 구타행위들은 "전체 운동을 始發시발시킨 불꽃"이었다라고 한 학생은 술회하고 있다. 4주도 채 안되어, 강경노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강제 解任해임되었고, 공산당은 각료 다수를 해임시켜야만 했다.

국내외의 여론의 효과는 상당히 다양해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輿論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론은 비폭력저항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糾合규합키도 하고, 때로는 적 정권에 대해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유도키도 한다.

결국 적 진영의 지지자들, 대리기관들, 군대들조차도 비폭력 행위자에게 저질러지는 잔혹행위로 인해 분노를 느끼게 되며, 그 탄압의 倫理性윤리성은 물론 그들 정부의 정책에 대한 正當性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처럼 처음 일기 시작한 불편한 심경은 점차 반대로

확대되고, 때에 따라서는 非協助, 不服從을 낳게 되어 스트라이크나 폭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만일 탄압이 비폭력 투쟁자들을 숫적으로 擴大시키고 저항을 深化심화시키게 되면 그리고 탄압이 적을 지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상당한 정도로 반대 의사를 불러 일으켜서 저항세력을 다룰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정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그 탄압은 분명 적들에게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政治的 柔術"의 작용이다.

政治的 柔術의 중요 요소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다. 1905년 1월, St. Petersburg에 있는 Winter Palace 근처에서 수백 명의 비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은 이전까지 충성스럽던 대중을 저항적 革命主義者혁명주의자로 뒤바꿔 버렸고, 러시아 제국 전역에 걸쳐 1년에 걸친 革命을 시작케 만들었다. 1917년 2월, 러시아 군대가 수백 명의 비폭력 시위자들을 살해한 것은 짜르군대의 反亂반란이나 脫營탈영을 발생시킨 주요소였다. 그로 인해 러시아 제국은 이미 광범위하게 번진 非暴力的 2月 革命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다. 1923년 Ruhr에서 일어난 잔혹한 탄압은 독일인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자국내에서조차 그 정책에 대한 반대를 들끓게 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인도에서 非暴力的 民族主義者들에 대한 영국의 잔혹한 탄압은 영국내에서 많은 저항을 불러왔고, 인도 독립에 대한 지지를 증대시켰다. 1960년 남아프리카 Sharpeville 학살 사건은 어마어마한 國際的 抗議항의, 보이코트, 貿易무역 禁輸금수 조치 등을 불러 일으켰다. 1963년 Ngo Dinh Diem정권에 반대하는 비폭력적 佛敎徒불교도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미국정부는 수년간 해왔던 Diem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의 Montgomery, Atlanta, Birmingham, 그

리고 미시시피강 유역의 각지에서 市民權利시민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자들을 구타하고, 살해하고, 폭탄을 퍼붓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항이 점점 더 급증했으며, 그러한 彈壓政策과 人種差別政策인종차별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미국 및 국제적 지원이 잇따랐다. 1989년 6월 4일, 天安門 廣場, 베이징의 여타 지역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벌어진 수백 명에 대한 학살은 共產政權공산정권의 권위를 더욱 失墜실추시켰다. 중국은 물론 전세계로부터 중국 공산정권에 대해 심각한 항의가 일어났으며 이 학살로 인한 전체적인 결과는 앞으로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變化변화의 4가지 메카니즘(Four Mechanisms of Change)

비폭력행위의 사례들 간의 다양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 내에서 작동하는 4가지의 일반적인 변화 메카니즘을 선별해 낼 수 있다. 여기에는 轉換(conversion), 採用(accommodation), 非暴力的 強制(nonviolent coercion), 그리고 解體(disintegration)가 있다.

轉換(conversion)

전환의 과정에서 비폭력집단의 행위결과로 적들은 새로운 觀點관점을 收用하고 비폭력집단의 목적을 받아들인다. 어떤 지적인 노력만으로 전환을 생기게 할 수 있을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러한 변화는 이성과 논쟁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비폭력행위에 있어서 전환은 또한 적들의 감정, 신념, 태도 및 道德體系도덕체계를 포괄하기도 한다. 비폭력집단들은 의도적으로 전환을 가져오려고 애쓴다. 그럼으로써 결국 적들은 비폭력집단의 목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게 되면서, 비폭력집단의 목적을 收用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사고전환 시도에서 비폭력 투쟁가들이 겪는 고통은 적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환은 명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障碍要人장애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장애요인에는 다른 사회집단 구성원들을 서로 같은 감정을 갖거나 존경할 만한 동료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 "社會的 乖離"(social distance)현상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고전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회적 괴리감을 除去하여 사고 전환을 이루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思考轉換사고전환을 일으킨 사건이 1924-1925년에 남부 인도의 Vykom에서 일어났다. 간디의 지지자들은 "천민"(untouchable)들이 正統的 브라만사찰을 관통하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애썼다. 카스트제도에서 높은 직위를 점하는 힌두改革者들은 그들의 천민 계급 친구들과 함께 그 길로 걸어가려고 먼저 그 절 앞에서 멈춰섰다. 正統派 힌두교도(orthodox Hindus)들은 그 시위자들을 苛酷가혹하게 攻擊했다. 大君(maharajah : 인도 회교군주의 위계)의 경찰들이 시위자들의 일부를 체포하고 그들에게 1년까지의 징역을 구형하였다. 그러자 시위에 찬동하는 지원자들이 인도 전역으로부터 도착하여 경찰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 도로에서 계속 徹夜籠城철야농성을 하였다. 그 시위자들은 교대하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乾燥期건조기에도, 비가 내리 퍼붓는 雨期우기에도, 때로는 배를 타고 순찰하는 경찰들로부터 물벼락을 맞아가면서도,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었다. 大君의 정부가 결국 바리케이트를 치워 버렸을 때, 시위자들은 正統派인 힌두인들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한발짝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16개월 후에 그 지역 브라만들은 말했다 : "우리는 더이상 우리에

대한 기도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천민들을 받아 들여야겠다." 이 사건은 인도전역으로부터 상당한 反響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Vykom 徹夜籠城철야농성이 전형적인 非暴力行爲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비폭력적 고통으로 상대방을 變化시키려는 노력에는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 또한, 몇몇 非暴力비폭력 戰術家전술가들은 사고전환을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하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고전환 노력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收容, 非暴力的 強制강제 혹은 解體해체 등 다른 메카니즘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4가지 메카니즘 요소들의 相互 複合的인 壓力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쉬우며,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최상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비폭력행위를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런 요소들을 현명하고 신중하게 結合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진영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타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敵兵士적병사를 전환시키려는 성공적인 노력은 非暴力的 強制를 가져올 수 있다.

타협 (accommodation)

타협은 思考轉換과 非暴力的 強制사이의 중간적인 방법이다. 상대방은 전환되거나 비폭력적으로 강제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두 메카니즘의 요소들은 상대방이 비폭력집단에게 양보하려는 결정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 이 타협이란 것은 성공적인 非暴力투쟁의 네가지 메카니즘 중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카니즘이다. 여기서 상대방들은 기본적으로 그 爭點에 관해 그들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도 요구 중 전부 혹은 일부를 수용한다.

思考轉換사고전환과는 대조적으로, 非暴力的 強制 및 解體와 더불어 타협의 메카니즘은 상대집단 리더쉽의 심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비폭력행위로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狀況을 변화시킴으로써 성공을 가져온다. 기본적인 權力關係권력관계가 변함으로써 전체적인 구도를 바꾸게 된다.

그러나 타협은 상대방이 양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동안 일어난다. 상대자들은 내부의 異見이나 그 집단내부의 반대를 잘라내기 위해 타협에 동의할 수가 있다. 경제적인 투쟁에서 특히 스트라이크나 경제적 보이코트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타협을 하게 될 수 있다.

만일 상대방들이 비폭력운동이 그 세력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요구 조건을 자발적으로 타협하려고 결심할 수도 있다. 문제가 된 특정 쟁점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덜 중요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어 대중들이 그들의 힘을 깨닫게 되는 결과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그 사회의 사회구조나 정치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상대방들은 저항에 굴복했다고 보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협에서는 중요할 것이다.

타협의 메카니즘은 비폭력행위가 사용되는 많은 사례들의 문제 해결에 유효하다. 이것은 노동 스트라이크의 문제 해결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 경우 쟁점의 최종 解決點해결점은 통상고용자와 노조의 원래 입장의 중간지점에서 찾아진다. 보다 큰 國際的 대결에서도 타협이 종종 채택된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한 것도 비폭력시위의 결과로부터 직접 연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타협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것도 수십 년동안 벌여왔던 투쟁으로부터 얻어진 격이다. 인도 독립은 正當한 政策이라는 점, 만일 영

국군의 힘으로 인도를 영국 통치하에 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이코트 운동 때문에 혹은 行政과 抑壓억압을 지탱해 나가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국이 인도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없어졌다는 점 등이 인식되어 타협이 채택되었다.

많은 경우 思考轉換이나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방이 비폭력 저항자들의 요구 중에서 어느 하나도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변화의 세번째 메카니즘을 저항자들이 사용하게 된다. 그것이 곧 非暴力的 強制(nonviolent coercion)의 방법인데, 그것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반대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強制(coercion)

여기서 "強制"는 그것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엄밀한 의미로 이해되야만 한다. 여기서 강제란 보다 우세한 힘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겠다는 威脅위협에 굴복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대신 여기에서 "強制"는 상대방의 의지와는 반대로 변화를 추진하거나 방지함을 의미한다. 상대방들이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빼앗겨도 그들의 立地를 유지하다가 저항자들의 요구에 조건부로 항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비폭력 행위의 메카니즘으로서의 "非暴力的 強制"는 행위자의 목표가 상대방의 의도와는 반대로 달성되지만, 상대방의 체제를 붕괴시키기에는 부족할 경우에 자주 일어난다.

비폭력 행위자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상대방 정치권력의 뿌리라고 할 權威, 인적자원, 기술, 知識지식, 무형태의 요소, 物的 資源, 재제력 등을 상당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을 때 비폭력행위는 강제력을 발휘한다.

비폭력적 강제는 다음 셋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해서건 상대방의 의도가 봉쇄됐을 경우 생기게 된다. 첫째, 不服從이 너무 넓게 번지고 커져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제될 수 없게 된다. 대중행위로 인해 現狀維持현상유지(status quo)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상대방의 동의나 묵종이 불필요해진다. 둘째, 저항에 의해 그 체제가 마비된다. 만일 저항자들의 요구가 수락되지 않거나 非協助자들이 그들의 평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비협조 행위가 그 사회·경제·정치 체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셋째, 억압을 가할 수 있는 상대방이 능력도 고갈되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 경우는 상대방의 군대나 경찰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관료들이 체제에 협조하길 거부하거나, 일반 대중들이 권위를 인정치 않고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 그만이다.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상황이 일어나거나 둘 이상의 상황이 複合的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상대방은 그들의 목표가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을지라도, 단호하고도 광범위한 非暴力行爲에 직면해서는 그들 정책이나 체계에 더이상 옹호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상대방의 노력은 非協助비협조와 不服從불복종의 정도에 비례하여 좌절되고 만다.

상대방의 의지가 封鎖봉쇄되는 억압을 가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광범위한 大衆 抵抗과 체제의 痲痺마비로부터 주로 연유된다. 그러나 그러한 패턴은 어떤 상황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비폭력적 강제의 경우, 비폭력적 행위가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너무 뒤바꿔 버려서 상대방은 더이상 비폭력집단의 의지에 反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몇몇 매우 성공적인 노동 스트라이크에서, 고용자들은 더이상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協商代行협상대행기관(bargaining agent)과 같은 기구를 허가하는 등 노조의 모든 요구에 실질적으로

굴복하였다. 제정 러시아의 Nicolai Ⅱ세는 그의 신념과는 정반대로 1905년 10월 17일의 立憲政治宣言을 제창하고, 듀마(의회)를 인정하였다. 그는 여전히 짜르로 남아 있었지만 달리 선택할 도리가 없었다. 1905년, 러시아에서 10월 대투쟁이 너무도 영향력있고 강해서, 한동안 정부가 통지조차 할 수 없었고 그 나라는 소위 "이상한 麻痺"(some strange paralysis)에 휩싸여 버렸다. 1944년 봄, 광범위한 경제 파업과 정치적 비협조에 직면하여 El Salvador의 Hernandez Martinez 장군과 과테말라의 Ubico장군이 대통령 자리에서 逐出축출된 것도 비폭력적 강제의 결과이다. 그 정권의 行政體系행정체계, 警察體系경찰체계, 軍事體系군사체계가 崩壞붕괴되기도 전에 이미 축출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解體(disintegration)

권력원천이 거의 완전히 상대자들 수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도 그들은 쉽게 강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 統治體系도 사실상 완전히 해체될 수 있다. 非暴力的 變化 메카니즘은 상대방의 통치체제가 산산히 해체될 때까지 권력원천을 제거함으로서 작용한다. 단지 조직이 없는 개인들이나 힘없는 매우 작은 집단들만 남게 된다. 그러면 강제될 만한 어떤 효율적인 단위(unit)마저 더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國民大衆국민대중은 통치하거나, 혹은 리더쉽, 지도력, 통제력을 행사하는 상대자들의 권위를 압도적으로 거부해 왔다. 실제로 이제는 더이상 아무도 과거의 支配集團지배집단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 강력했던 개인이나 집단들도 과거에 해 왔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專門家的 意見이나 經濟的 資源도 더이상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경찰이나 군대도 이전의 지배

자들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해체되어 버렸으므로 어떤 억압체계도 남지 않게 된다. 解體해체의 메카니즘은 상대방의 권력원천을 없애버리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1917년 2월,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난 거대한 非協助運動의 결과로 Nicolai Ⅱ세가 退位퇴위하였지만, 페트로그라드에 있던 그의 군사령관은 누구에게 항복해야 할지를 몰랐다. 帝政러시아 정부는 이미 "해체되었고 휩쓸려 내려갔다"라고 George Katkov는 결론내렸다. 1920년에 Kapp Putsch와 1961년 Algiers장군의 쿠데타 경우 필요한 국민의 지지를 빼앗아 철회시켰으므로, 이 두 權力簒奪試圖권력찬탈시도는 여지없이 붕괴되고 말았다.

어떤 대안적인 正統政府정통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반대정권이 해체되어 버리면 다른 統治機構가 출현하게 된다. 때로는 이 장의 앞에서 논의되었던 對抗政府대항정부(parallel government)가 생겨나기도 한다. 만일 대항정부가 이미 출현했거나 혹은 쿠데타나 침략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미 합법적인 정부가 과거부터 유지되어 왔다면, 정부가 붕괴하는 시점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확대하여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대표성이 없는 군사적 정치집단들이 국민에 기초한 民主體制민주체제의 발전이나 복구를 기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獨裁體制독재체제를 세우기 위해 국가 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거머쥐려고 서둔다면, 이때가 바로 저항자들이 경계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强制와 崩壞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이 비폭력적 강제나 해체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권력원천들이 절단된 정도에 따라서 權力源泉권력원천이 받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대대적 불복종, 경제적·정치적 마비 또는 반란

등 非暴力的 強制와 解體를 만들어 내는 행위패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 요소들의 일부 혹은 전부가 그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 非暴力的 抵抗者들의 수와 전체 인구에서 그들의 차지하는 比率.
* 상대방의 권력원천이 非暴力抵抗者들에게 어느 정도 依存하는가.
* 전략, 전술, 방법의 선택을 포함하여 비폭력 저항자들이 비폭력적 기술을 활용시키는 기술과 수행 능력.
* 非協助와 不服從이 유지되는 시간의 길이.
* 비폭력 저항자들이 제 3자들로부터 얻어내는 同意와 지지의 정도.
* 적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유도하고 협조를 재개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제수단과 그런 통제수단에 대한 非暴力的 抵抗者들의 반응.
* 피지배자, 행정가, 대행인들의 敵들에 대한 협력 여부, 그리고 그러한 지지를 억제하기 위해 해야 하는 행위 및 비폭력 저항자들을 돕기 위해 해야 하는 행위.
*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非暴力的 鬪爭에 대한 상대방의 評價.

權力뿌리의 除去(removing the sources of power)

권력뿌리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누가 권력뿌리를 잘라내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은 비폭력집단일 수도 있고 제 3자들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 집단내부에서 불만족한 구성원들일 수도,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의 결합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로 보아서 과거 투쟁에서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할 전략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權威(authority)

敵對세력에 대한 非暴力的 挑戰도전은 그들 권위가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 투쟁은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충성심이 競爭경쟁하는 권위체로, 혹은 서로 경합하는 대항 정부로 확실히 옮겨져 가는 경우도 있다.

권력찬탈자와 침략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抑壓政府의 수립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것은 1장에서 서술했던 4가지 사례 모두에서 확실히 나타났지만, Kapp Putsch에 대항하는 시민 방위와 Algiers에서 프랑스 장군들의 쿠데타에 대항하는 시민 방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권력찬탈자들의 正當性정당성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공격자들을 망하게 하였다.

다른 사례를 보면, 1943년 2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改新敎개신교와 로마 캐톨릭교는 나찌 점령기관에 협조치 말고 大衆不服從運動대중불복종운동을 전개함이 종교적 의무라고 각 교회 사람들에게 촉구했다. 네덜란드 敎會교회의 이같은 행동은 占領國점령국 관리들의 權威권위를 떨어뜨리는 반면, 非協助와 不服從의 正當性을 높여 주었다.

人的資源(human resources)

널리 퍼진 비폭력적 운동은 상대자들의 정치 권력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줄이거나 완전히 遮斷차단해 버리기도 한다. 그 체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국민 대중들이 그들의 광범한 복종과 협조를 철회하는 경우와 같다. 政治體系정치체계든 經濟體系경제체계든 많은 개인들, 조

직, 하위집단들이 제각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파업의 원칙은 경제체계, 정치체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이 침략한 경우, 두 가지 명확한 大衆集團이 개입된다. 점령된 나라의 사람들과 점령한 나라의 국민들 모두가 인적 자원을 제공치 않는 경우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오직 점령된 국가의 사람들만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다른 어떤 유리한 조건이 밑받침된다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불만있는 집단구성원들이 非協助, 不服從, 背反배반을 확실히 증가시키면, 적대국에게는 심각한 통치상의 문제가 된다. 또한 적대국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오던 사람들이 때로 그들의 도움을 철회한다면, 적대국의 힘은 점점 消盡되고 만다.

인적 자원이 빠져나가면 다른 권력 자원(技術, 知識, 그리고 物的資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투쟁상태에서 상대방들은 그들의 행정집행능력이 점점 감축되어 가는 바로 그때에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때에 저항이 증가한다면, 그 정권은 결국 무력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가 1930-1931년의 시민불복종시위운동 동안에 1930년 4월, 영국령 인도의 북서 변경지방에서 영국지휘권 아래 있는 군대들 사이에 비교적 소규모로 발생했다. 1930년 4월 23일, Peshawar에서 적어도 30명에서 125명에 달하는 저항자들이 사살되었다. 이 사태 직후 Garhwal왕립 소총중대(Royal Garhwal Rifles) 중 2개 소대가 Peshawar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非武裝 同胞"(unarmed brethren)를 사살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했다. 4월 24일 밤, 영국은 Peshawar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暫定的잠정적으로 그 도시를 포기했다. 그때 그 도시는 5월 4일 空中 支援을 받는 영국 증원군이 되돌아올 때

까지 地域印度 國家評議會지역인도 국가평의회(local Indian National Congress Committee)에 의해 통제되었다.

인적 자원을 뺏어간 다른 사례에는 選擧造作선거조작 범행을 돕지 않겠다는 필리핀 컴퓨터 기술자 29명의 파업이 있다. 또 필리핀 주요 군부대들이 스트라이크를 하여 內亂을 주도하지 않고 마르코스정부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는 등 彈壓탄압을 자행하지 않고 兵營에 머물러 버렸던 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940년 12월 나찌 점령하의 Norway에서, 法院은 독일 점령 "法"을 위헌이라고 선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Reichskommissar Terboven의 성명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大法院 전체가 辭任사임해 버렸다. 1942년 노르웨이 "수상겸 대통령"인 Vidkun Quisling의 파씨스트 정부는 독재적으로 통제되는 教師團體교사단체를 만들어 교사들을 강제로 가입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그후에 세워질 다른 "組合"들(corporations)의 모델이 되고 학생들에게 사상을 주입시키는 도구가 되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 새로운 조직에 대한 협조를 전면 거부하였다. 그래서 수백 명이 체포되어 집단수용소에 감금되었다. 학부형들은 그같은 정부행위에 抗議항의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교사들도 권력협박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8개월 후 교사들은 석방되었다. Quisling이 바라던 "組合主義 國家"는 노르웨이에서 생기지 않았다. 파씨스트교사 단체는 사라져 버렸다. 학교가 파씨스트 선전을 위해 이용되지도 않았다.

技術과 知識(skills and knowledge)

어떤 개인이나 집단들은 특수 기술이나 중요한 지식을 소유한다. 그들은 行政官, 公職者, 技術者 그리고 助言者조언자들일 수 있다. 그

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치권력은 급격하게 약해진다. 그들이 협조를 완전히 거부하든지 협조를 줄인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결과를 가져 온다.

1923년 Kapp Putsch 기간동안에 Kapp박사는 專門家들의 政府가 필요하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자격있는 전문가들이 그의 "內閣내각"에 임명되기를 거부하였다. 그 때문에 Kapp는 有能한 보좌역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그들 전문가들에 의해 버림받았다. 國防省국방성(Ministry of War)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명령에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 帝國銀行제국은행(Reichsbank) 行員들도 적격자들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Kapp가 천만 마르크를 인출하려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모든 차관들이 서명을 거부했다. Kapp 자신의 서명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저명한 정치가들 중 아무도 Kapp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베를린 비밀경찰들도 처음에는 지지했으나 그 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Kapp의 사퇴를 종용했다. 다른 부서의 관리들도 그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 Kapp는 그의 첫 성명서를 타이핑할 비서나 타자기조차도 (타자기들이 잠긴 closets에 들어 있어서)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성명서는 그 다음날 신문에서조차 발표되지 못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대중 스트라이크와 더불어 행정 공무원들이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Kapp주의자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베를린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형체없는 要素들(intangible factors)

권위에 대한 服從과 忠誠충성의 관습은 비폭력적 행위가 널리 확산될수록 위협받게 된다.

1953년 6월 16-17일까지의 동독 봉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이나 그의 追從者추종자들이 놀란 것은 노동자들이 街頭示威가두시위를 벌이며 공

개적으로 소위 노동자 국가를 반대하는 장면을 연출해 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동적인 支持지지나 服從복종의 관습이 없어졌으므로 나머지 국민이 과연 복종해 줄 것인지 더욱 의심스러워진 것이다.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信念과 고상하게 가장된 目標들에 대한 信念이 희석되어 왔다. 이것은 軍과 政府가 자행한 탄압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한 탄압은 그들 나라안의 많은 共産主義者들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데올로기적 實踐意志실천의지를 상실하게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태리에서와 같이 외국 공산당을 不信불신하게 만들고, 많은 나라에서 공산당원들의 離脫이탈을 촉진시켰다.

다른 경우를 보면, 1956년 헝가리에서는 대중의 상당수가 실제로 그 정권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백만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서, 수십 년동안 이어져 왔던 그 체제에 대한 믿음이 산산히 깨져 버렸다. 초기의 자그마한 不服從行爲불복종행위들은 그런 깨우침에 불을 당기에 해 주었고, 처음으로 중요하고도 비폭력적인 헝가리 혁명을 일으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1989년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데올로기의 腐植부식이 너무도 크게 확대되고 대중들의 협조의사가 실질적으로 해체됨으로써 그들 각 국가의 공산 정부는 근본적인 政治變革정치변혁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그 임무를 대통령에게 넘겨 주었다.

빈번히 비폭력운동과정에서 그 사회의 倫理的윤리적, 宗教的종교적, 政治的정치적 규범을 대변하는 주요 인사들이 그 억압 체제를 해체하거나, 그 억압 체계를 해체하는 것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그 억압 체계에 저항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파괴하도록 촉구해 왔던 것이다.

物的 資源물적 자원(material resources)

비폭력행위는 상대방에게 물적 자원의 공급을 줄이거나 단절시킨다. 198가지의 비폭력행위방식 중 61가지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경제적 보이코트나 노동 스트라이크 혹은 그것들을 혼용한 것들이다. 그것은 物的資源물적자원의 확보, 運送운송, 원자재, 通信手段,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經濟體系의 機能力기능력까지도 파괴·축소·단절하도록 꾸며진 것이다.

그 쟁점이 압도적이며 명백하게 정치적인 쟁점일 때, 대규모의 비폭력 투쟁들은 흔히 경제적 형태의 비협조투쟁을 채택해 왔다. 여기에는 1765-1775년 사이에 영국 통치에 대립하는 미국 식민지인들의 非協助 운동과 1920년대와 30년대 영국에 대항하는 인도의 非協助 運動이 포함된다. 양자 모두 영국경제와 영국정부에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주었으며, 영국내에서 식민지를 지지하는 강력한 압력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수십 년간 국제적인 經濟制裁措置경제제재조치의 실효성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던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 때, 제대로 구상되지 못했거나 실제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3년 아랍의 원유수출 금지조치가 시사하는 바처럼, 그러한 제제 조치는 정부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었다. 이 특정 사례의 경우, 수많은 국가들이 중동에 대한 그들의 외교정책을 변경하였다.

한 국가내에서 政治的 目的이나 經濟的 目的으로 일어난 노동 스트라이크는 때로는 널리 확산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경우가 있었다. 그 성격이나 정책에서 경제를 마비시킬 만한 스트라이크를 발생

시키는 정부는 대중의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였다. 비록 모든 스트라이크가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스트라이크는 때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1920년 3월 Kapp Putsch에 대한 저항 중에는, 소위 "지금껏 세상이 목격했던 것 중 가장 큰 스트라이크"가 있었다. 이것은 Kapp가 피켓시위를 死刑사형에 처할 정도로 처벌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다른 상황에서 스트라이크의 역할은 이미 기술된 바 있다.

나찌는 국가를 강하게 통제하려 할 경우에 특히 스트라이크 형태의 大衆非協助대중비협조를 가장 위험한 무기로 보았다. 1933년 2월 27일에 일어난 Reichstag 의회 건물 방화 사건은 적을 탄압하고 완전한 국가 통제를 얻기 위해 나찌 스스로 저지른 것이다. 그후 나찌는 3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武裝鬪爭무장투쟁의 挑發도발"이나 "대중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것"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Delarue는 그의 著述, 『게쉬타포』(The Gestapo)에서 이 시기에 "나찌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대중 스트라이크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스트라이크는, 그것이 총파업이라 할지라도 아무 쟁점이나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이는 특히 방어위기 상황에 처할 때 더욱 그렇다. 사전에 의도된 衝擊충격, 대중이 그러한 스트라이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能力, 그리고 경제투쟁기간 동안에 사회가 그 스스로를 支障지장해 갈 수 있는 手段 등 모든 것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라이크나 경제적 보이코트는 모두 비폭력투쟁이 현직 또는 미래의 통치자로부터 權力의 주요조건인 경제적 자원을 약화시키고 제거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운송, 통신 등을 포함하여 經濟의 統制權통제권이 저항자들 수중에 들어간다면, 어떤 정부건 매우 취약한 입장

에 놓여지게 된다. 이것은 그 사회의 정치적 統制權을 세우려고 애쓰는 초기 단계에 급부상한 독재자나, 타국 침략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그들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가 그 사회의 經濟的 搾取착취라면 그들은 이중으로 곤경에 처한 것이다.

制裁제재 (sanctions)

상대방의 제재능력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폭력행위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외국이 무기판매를 거부하거나 무기와 군수품 공장 및 운송체계에 스트라이크가 일어난다면 군대나 경찰의 무기 供給공급도 威脅위협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군대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징집 대상자들이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抑壓機構억압기구 즉 경찰, 군대의 수가 축소되기도 한다. 경찰과 군대가 命令을 비능률적으로 수행하거나,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즉 反亂하므로써 적대세력에 대한 비폭력적 강제나 政府體系의 解體를 낳을 수가 있다.

1905년과 1917년 2월 일어난 비폭력적인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열심히 任務遂行을 하지 않았던 것이 짜르 정권을 약화하고 몰락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나찌는 만일 그들이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케 되면 그들의 권력이 지극히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1938년 2월초에 나찌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군대의 고위급 장교가 집단적으로 사임하는 것이었다고 Goebbels는 밝히고 있다.

1953년 동독 봉기 기간동안 경찰은 때로는 철수하거나 자진해서 무기를 포기하였다. 어떤 동독 군인들은 반란도 일으켰다. 일부 소련 병사들도 그에 동조하였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천 명 가량의 소련 장교들이 시위자를 향해 발포하길 거부하였다. 봉기가 진압된 후 52

명의 공산당원과 병사들이 命令 不服從으로 銃殺되었다. 소련이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처음 입성했던 소련군 전원을 단 며칠 후에 교체시켜야 했다는 사실도 적 군부대의 신뢰도는 물론 적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약화시켰던 비폭력행위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만일 이러한 잠재적인 힘이 발전되고 고양된다면 앞으로 權力簒奪권력찬탈이나 침략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失敗냐 아니면 成功이냐? (failure or success?)

투쟁이나 행위의 어떤 유형도 아무 때나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리란 보장은 없다. 또한, 행위 수단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그 수단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효율성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

과거에 임기응변적으로 일어난 非暴力 鬪爭투쟁들은 그것이 내세운 목적에 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투쟁은 겉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던 투쟁이 훗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헌한 정도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완전히 성공을 거두거나,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던 사례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성공사례 중에는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이 전적으로 아니면 지배적으로 사용된 크고 작은 시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에는 獨立戰爭독립전쟁 이전에 미국 식민지 대부분이 사실상의 독립을 이룩하였다는 사실, 1917년 2월, 제정 러시아의 짜르체제가 붕괴되었던 사실, 1920년 Kapp 반란의 패배와 바이마르 共和國공화국의 보존, 1943년 그들 아내의 시위로 베를린의 1천5백 명

의 유태인이 구출되었던 사실, 1942년 노르웨이 교사들과 대중에 의해 파씨스트가 학교를 통제하려던 것이 실패했던 사실, 1944년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 독재자들이 축출되었던 것, 1978년 볼리비아에서 군사쿠데타가 실패했던 것, 1961년 Algiers장군들의 쿠데타가 敗北로 끝났던 것, 1964년과 85년 Sudan에서 군부 독재자가 축출되었던 사례, 1973년 태국에서 軍事政權이 축출되고 立憲民主主義입헌민주주의가 복원되었던 것, 1986년 필리핀에서 부정선거가 실패하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야했던 사실, 1989년 폴란드에서 상당정도로 自由選擧가 復活부활되고 連帶勞組연대노조(Solidarity)출신의 수상이 선출된 사례, 1989년말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급속히 민주화가 달성된 사실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대중들이 그들의 支配者지배자를 統制하는 데 진일보했던 여타 많은 사례가 인용될 수도 있다.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비폭력투쟁은 國內的, 國際的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변화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17세기와 18세기에 영국과 메사추세츠에서 宗教自由가 확대되었던 점, 南北戰爭 이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奴隸解放鬪爭노예해방투쟁, 전세계에 걸친 勞組의 인정과 賃金引上임금인상 및 勞動條件의 개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스웨덴과 벨기에에서 普通選擧보통선거가 실시된 것, 미국과 영국에서의 女性投票權여성투표권 보장, 2차 세계대전 때 불가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등지에 대학살(Holocaust)로부터 유태인을 구출했던 사례, 미국에서 법제화된 인종차별제도의 폐지, 인도, 파키스탄, 가나의 독립획득, 1970년대 소련내 유태인들의 移民權이민권 확보, 1970년대와 80년대의 브라질에서 정부의 "民間化"(Civilianization)운동, 1970년대와 80년대에 스트라이크, 아프리카 노동조합, 경제적 보이코트 등을 통한 남아프리카 내에서의 黑人흑인들의 경제력 증가 등이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成功"이란 여기에서는 갈등상황 속에서 어느 한편이 중요한 목적을 달성케 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거나 敵對勢力적대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失敗"란 특정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를 지칭한다. 물론 다른 유형의 투쟁에서처럼 부분적으로는 성공하고 부분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달성으로 성패 여부를 가늠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만 한다. (1) 경쟁하는 집단들의 절대적 상대적 힘의 增減증멸, 그리고 (2) 각 집단과 그들 목적의 影響力영향력이나 同情心동정심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장차 해결되지 못한 쟁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것은 초기 비폭력투쟁의 본래의 목표에 결실을 가져올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비폭력행위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그 집단이 기법을 잘못 선정한다든지, 그 집단이 효과를 거두는 데에 중요한 必須要件필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든지, 그 집단이 그 기술을 잘못 운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든지, 그 집단이 탄압에 직면하여 폭력으로 전환한다든지, 혹은 效率的효율적인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적용시키는 데 게을리 했다든지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비폭력투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적의 군사력이 그다지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군사적 행위에서 패배를 초래하는 요인들과 유사하다.

비폭력행위를 사용하는 집단이 충분한 내면적 역량, 결단력, 능력, 그리고 非暴力行爲를 효과적이게 하는 관련된 자질 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비폭력"이라는 말이나 문구를 아무리 되뇌여도 소용없다. 비폭력행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진정한 힘과 기술이 없다면 아무런 所用이 없다. 만일 非暴力的 集團비폭력적 집단이 상대방과 대적함에 있

어서 이런 자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집단은 거의 승리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 만일 非暴力鬪爭家들이 결단력있고, 현명하게 선별된 戰略과 戰術을 사용하고, 그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 능숙하게 행동하며, 비폭력 기법을 구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彈壓탄압에 직면해서도 끝까지 버텨 나갈 수만 있다면 승리는 가능하다. 그런 성공은 폭력을 써서 얻어낸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득들은 그 목표를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달성시키고, 보다 公正한 權力關係를 유지하며, 과거에 경쟁했던 대상자들과의 사이에서 보다 깊은 이해와 존경을 얻게 되고, 미래의 공격자나 억압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익을 防禦방어·保存보존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등을 포함한다.

제1장에서 열거된 네 가지 주요 사례들 중에서 Kapp 반란에 대한 저항과 Algiers에서의 쿠데타에 대한 저항 등은 모두 완전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범죄자들의 시도가 비폭력적 저항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국가기구에 대한 統制權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부와 정책을 세우려는 시도는 모두 패배로 끝났다.

프랑스-벨기에의 침략과 점령에 저항했던 Ruhrkampf는 얼마 후에 혼합된 결과를 산출해 냈다. 非暴力的 抵抗에 의해 곧바로 撤收철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저항이 약해지고 독일 정부에 의해 저항이 취소된 후에야 철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侵略軍침략군은 결국 撤收철수하였고, Rhineland는 독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영국 미국으로부터 國際介入국제개입의 도움을 받으면서 독일의 賠償金배상금 支拂이 계속되었지만, 독일이 충분히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훨씬 하향된 액수로 지불하게 되었다. 침략을 저질렀던 Poincare정부는 그들이 소기의 목적을 얻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최

근까지 전쟁에서 그들의 적국이었던 독일인에게 同情心을 갖게 된 것은 잔혹한 탄압행위 때문이었다. 결국 Poincare정부는 그다음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도 결국 패배로 끝났다. 1969년 4월 Dubcek의 개혁지향집단이 共産黨공산당과 政府정부의 지도부에서 숙청되고, 훨씬 더 고분고분한 Husak 指導部지도부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앞서 이 책에서 논의된 모스크바 協商협상에서의 妥協타협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교체는 소련이 단 며칠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여덟 달이나 걸렸다. 50만 군대의 지원을 받았던 소련은 직접적인 軍事行動군사행동으로부터 완만한 政治操縱정치조종으로 방법을 바꾸고, 체코 공산당 중에서 協助的인 一部 分派들과 함께 한정된 수준에서 목적을 하나하나 얻어 내야만 했다. 결국 4월 반러시아 폭동 직후 내려진 소련의 最後通牒최후통첩에 직면하여 저항세력 지도부가 붕괴되었던 것은 대중들이 싸울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敗北要因이었다. 양쪽편 모두에게 경제적, 정치적 손해는 막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쩌면 체코인들의 武裝抵抗무장저항이 불가피하게 만들어 냈을 상당한 죽음과 파괴를 모두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체코인들과 슬로바크인들 사이에 생긴 落膽낙담과 幻滅환멸은 지불된 대가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들은 훗날 인권 확대와 민주적 자유의 확장을 위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게끔 손상되지 않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남았다. 정말로 1989년 말 체코인들과 슬로바크인들은 광범한 大衆示威대중시위와 不服從불복종 運動운동을 통해 共産黨공산당 일당 독재를 붕괴시켰다. 이전에 감옥에 감금되었던 반체제 인사 Vaclav Havel이 大統領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한때 직위 해제되었던 Alexander Dubcek는 國民議會 議長에 선출되었다.

非暴力行爲의 결과는 때로는 타협의 성격을 짙게 깔면서 "교착상태"

나 잠정적인 화해로 끝나기도 했다. 1930-31년 인도에서의 獨立示威運動의 막바지에 印度國民議會인도국민의회의 대표였던 Mohandas Gandhi와 英國政府영국정부를 대표하는 Lord Irwin총독간에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Gandhi-Irwin협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 조약은 분명 인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과 인도인 모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 條項들을 담고 있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더 큰 승리가 달성되기도 하였다. 그 경우 투쟁이 協商협상이나 공식적인 條約조약으로 끝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공식적인 해결없이도 비폭력 저항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收容수용하거나 實現실현하기도 한다. 적들은 그때 정책상의 변화가 그 저항과 일련의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경우 상대방 정권은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대로 權力根源권력근원을 빼앗겨, 완전히 崩壞하거나 解體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 때, 비폭력투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제기된 쟁점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각 집단들이 서로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경쟁하는 집단내 그리고 집단간의 권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좀더 극단적인 경우, 상대방의 정책이나 정부 체계의 본질이 엄청나게 변화되거나, 완전히 패배하거나, 붕괴하는 등의 변화에 의해서만 그 결과의 만족도가 평가될 것이다. 극단적인 抑壓體系억압체계, 獨裁體制독재체제, 그리고 국내적인 權力簒奪과 국제적인 外國侵略과 같은 경우 더욱 그러하다.

鬪爭투쟁 集團內집단내의 變化변화(changes in the struggle group)

비폭력행위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몇가지 중요한 영향을 받

게 된다. 다른 유형의 투쟁에 가담하는 집단의 경우처럼, 非暴力行爲에 가담하는 집단은 더욱 단합하고, 내부의 협동을 개선하고, 그 連帶意識연대의식을 증신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비폭력행위에 참가하면 非暴力的 집단내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화와 태도상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고 또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다. 곧 自尊心, 自矜心자긍심, 自信感자신감이 높아지고 공포심이나 順從心순종심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폭력행위에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하는 특수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이런 기법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 자신의 힘을 의식하게 되고 일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보다 큰 자신감을 얻게 된다. 만일 비폭력투쟁이 상당히 능률적으로 추진된다면, 參加者들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더욱 능숙해지고, 투쟁과정에서 비폭력규율을 더욱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도 투쟁을 잘 관망할 수 있게 된다. 저항 사회의 內在的내재적 力量역량과 함께 權力의 출처(loci of power)의 강인성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비폭력적 저항자들이나 불만 세력내에서, 더 넓게는 사회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상대방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투쟁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생긴 어떤 형태의 獨裁權力독재권력에 致命打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변화방식이다.

獨裁독재에 대항해서도(even against dictatorships)

폭군은 "그의 臣下신하들이 어떠한 자심감도, 권력도, 용기도 가지지 않길 바란다"고 Aristotle는 지적했다. 여러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비폭력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臣民들이 그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마치 착한 통치자인 것처럼 인정받으려는 폭군들의 여러 術數술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寡頭政治과두정치(oligarchy)와 暴君政治폭군정치(tyranny)는 다른 어떤 政體보다 단명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내렸다. 수세기동안, 그리고 특히 최근 몇년동안에 그러한 眞理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는 지금쯤 비교적 독재가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해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독재의 취약점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만 했었다면, 지금쯤 인류는 독재와 억압을 예방·근절하고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획득·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내는데 훨씬 진전되었을 것이다.

獨裁독재는 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능하지는 못하다. 오히려 독재는 非效率性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철저한 통제능력을 감소시키며, 스스로 단명케 하는 內在的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러한 약점은 적어도 17가지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는 體制運營체제운영의 관례화(routinization), 이데올로기의 腐蝕부식, 아래로부터 통치자에게 전달되는 부정확하고 부실한 情報, 체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運營上의 非效率性비효율성, 지도부내에서 일어나는 內部 軋轢알력, 종교적, 계층적, 문화적, 민족적 差異차이의 深化심화, 지식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동요, 무관심하고 懷疑的인 大衆, 지역적, 계급적, 문화적, 민족적 차이의 강조, 政治경찰이나 군대와 지배집단들 간에 나타나는 忠誠競爭충성경쟁, 政策決定정책결정의 과도한 집중, 모든 정부가 다수 대중으로부터 믿을 만한 협조와 복종심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문제 등이 獨裁政權독재정권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정확히 지적될 수 있으며 그러한 "큰 덩어리의

깨진틈"("cracks in the monolith")에 저항이 집중될 수 있다. 비폭력투쟁이 폭력보다도 그러한 일에 훨씬 더 적격이다.

역사적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비폭력투쟁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독재에 대항하여서도 시위, 저항, 봉기, 파괴, 혁명의 형태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남미와 아시아, 나찌 점령국가들, 공산주의 통제하의 동구 국가들, 소련 그리고 중국에서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비폭력투쟁의 조건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抑壓政治環境억압정치환경 때문만이 아니었다. 비폭력기법에 대한 지식부족, 준비부족, 훈련의 거의 철저한 미비 등으로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다. 게다가 非暴力行爲는 주로 큰 혼돈상태의 와중에서나 기대치 않았던 위기나 테러가 발생할 때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비폭력 투쟁이 앞으로 다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장차 나타날 暴君들은 그들이 통치하게 될 사회에 의존함이 없이 제맘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의 비폭력투쟁은 비폭력투쟁기법을 더욱 효과적이게 만드는 필수 요건과 전략적 원칙에 관한 지식을 투쟁 참여자들에게 갖게 하는 정도에 따라 보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증가된 지식과 준비를 가지고 행해진 투쟁은 과거에 준비없이 행해졌던 투쟁보다 어려움이 덜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투쟁을 실행하는 데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과 사람들이 잘 다져진 獨裁政權독재정권을 해체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생기는 문제점들은 보다 시급하고도 신중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1989년 6월, 중국에서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虐殺된 사건은 모든 독재 정권이 거대한 대중 저항에 직면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非暴力鬪爭方法에 관한 지식을 획득·확산하고, 저항운동에 있어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명한 戰略을 개발하고, 사전 준비와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脫軍事的 防衛政策방위정책(post-military defense policy), 즉 내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독재정권의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임무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들이다.

□참고문헌□

이 章의 분석과 지적에 대한 증거 자료와 문건을 포함하여, 비폭력 투쟁의 성격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에 대해서는, Gene Sharp,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Porter Sargent, 1973), pp. 63-817. 을 보라. 이 책에는 정치적 柔術(Political Jiujitsu)의 과정 및 변화의 세 가지 메카니즘을 포함하여, 그 특성, 방법, 다이내믹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非暴力的 強制"와 "解體"를 서로 별개로 구분한 것도 그 책을 따른 것이다.

이 장에서 간략하게나마 인용된 대부분의 사례는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에서 뽑아 온 것이다. 이 장에서 인용된 사례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이하 TPONA)의 索引과 脚註를 참조하면 된다. 원래의 출처를 더 쉽게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책에서 인용된 내용들은 페이지 번호와 각주번호대로 여기에 인용하였다. 때로는 원래 출처의 내용 전부가 실리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 인용문의 순서는 그 책의 인용문의 순서와 같다.

엘살바도르 사례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Patricia Parkman, *Nonviolent Insurrection in El Salvador: The Fall of Maximiliano Hernandez Martinez*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을 보라.

과테말라 사례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대해서는 TPONA, pp. 90-93을 참고하라.

헝가리 작가들의 각서에 대해서는 TPONA, p. 125, n. 33을 참조하라.

여성 참정권 시위에 대해서는 TPONA, p.126, n. 39을 참조하라.

불가리아 유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TPONA, p. 153, n. 178을 참조하라. 원 출처는 Yuri Suhl, *They Fought Back: The Story of Jewish Resistance in Nazi Europe* (New York: Crown Publishers, 1967), pp. 277-278이다.

브라질 시위에 관한 출처는 Maria Elena Alves, lecture at the Program on Nonviolent Sanctions,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March 16, 1986이다.

체코의 신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TPONA, p. 222, n. 21과 Josef Korbel, *The Communist Subversion of Czechoslovakia 1938-1948*,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을 참고하라.

東베를린 시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ew York Times*, November 5, 1989, p. 1을 참고하라. 프라하 시위에 대해서는 *New York Times*, November 26, 1989, p. 1을 참고하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2시간에 걸친 總罷業에 대해서는 *New York Times*, November 28, 1989, p. A1을 참고하라.

라이프찌히에 소재한 국가안보본부의 "市民 檢閱"에 관해서는 *Die Zeit* (Hamburg), December 22, 1989, p.6을 보라.

대응정부기구에 관한 McCarthy의 언급은 Walter Conser, Ronald M. McCarthy, David Toscano, and Gene Sharp, editors, ***Resistance, Politics and the American Struggle for Independence, 1765-1775*** (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1986), p. 498 속에 나와 있는 Ronald M. McCarthy, "Resistance, Politics and the Growth of Parallel Government in America, 1765-1775"에서 따온 것이다. 그 장의 전체 (pp. 472-524) 또한 관련이 있으니 참고하라. 같은 책안에 들어 있는 David Ammerman, "The Continental Association: Economic Resistance and Government by Commitee," pp. 225-277도 참고하라.

대응정부에 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TPONA, pp. 423-433을 참고하라.

1905년 러시아혁명에 대해서는 Sidney Harcave, ***First Blood: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New York: Macmillan, 1964, and London: Collier-Macmillan, 1964)와 Gertrude Vakar가 번역하고 Leopold H. Haimson이 서문은 쓴 Solomon M. Schwartz,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The Workers' Movement and the Formation of Bolshevism and Menshevism***,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p. 129-195를 보라. 또한, Richard Charques, ***The Twilight of***

Imperial Russia (London: Phoenix House, 1958), pp. 111-139와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1960, and London: Eyre & Spotiswoode, 1960), pp. 63-70, 75와 Hugh Seton-Watson, *The Decline of Imperial Russia, 1855-1914*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and London: Methuen & Co., 1952), pp. 219-260과 Bertram D. Wolfe, *Three Who Made a Revolution* (New York: Dial Press, 1948, and London: Thames and Hudson, 1956), pp. 278-336과 Michael Prawdin, *The Unmentionable Nechaev: A Key to Bolshevism* (London: Allen and Unwin, 1961), pp.147-149을 참고하라.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에 대해서는 특히, George Katkov, *Russia 1917: The February Revolution* (New York: Harper & Row, 1967)을 참고하라.

덴마크 불법신문에 대해서는 Jeremy Bennett, "The Resistance Against the German Occupation of Denmark 1940-45", in Adam Roberts, editor, *Civilian Resistance as a National Defence* (Harmondsworth, England, and Baltimore, Md: Penguin Books, 1969), p. 200을 참고하라.

1956-1957년 헝거리혁명에 대해서는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oblem of Hungary*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Eleventh Session, Supplement No. 18-A/3592, 1957)을 보라. 勞動者委員會에 대해서는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ress, and London: Faber & Faber, 1963)을 참고하라.

1980년 이후의 폴란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Nicholas Andrews, *Poland, 1980-1981: Solidarity Against the Part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5)와 Madeleine Korble Albright, *Poland : The Role of the Press in Political Change* (New York: Praeger, 1983)과 Timothy Garton Ash, *The Polish Revoution: Solidarity 1980-1982* (London: Jonathan Cape, 1983)과 Ross A. Johnson, *Poland in Crisis* (Santa Monica, Ca: Rand Corportation, 1982)와 Leopold Labedz and the staff of *Survey* magazine, editors, *Poland Under Jaruzelsk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4)와 그리고 Jan Joseph Lipski, *KOR: A Historyof the Workers' Defense Committee in Poland, 1976-1981*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를 참조하라.

프랑스에서 유태인 救出을 위한 대담무쌍한 행위에 대해서는 TPONA, p. 549, n. 105를 보라. 원래의 출처는 Gerald Reitlinger, *The Final Solution: The Attempt to Exterminate the Jews of Europe 1939-1945* (New York : A. S. Barnes, 1961), p. 328이다.

몽고메리, 앨라바마에서의 불굴의 저항활동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에 관해서는 TPONA, p. 548, nn. 100-101을 참조하라.

마닐라에서, 탱크에 대한 肉彈沮止육탄저지에 관해서 알려면, Monina Allarey Mercado, editor, *People Power. The Philippine Revolution of 1986. An eyewitness History* (Manila: James B. Reuter, S. J. Foundation, 1986), Chapter 5.를 보라.

인도의 1930-1931년 시위와 Dharsana의 폭격에 대해서는 Gene Sharp, *Gandhi Wields the Wepon of Moral Power*: Three Case Histories, introduced by Albert Einstein (Ahmedabad: Navajivan Publishing House, 1960), pp.37-226과 S. Gopal, *The Viceroyality of Lord Irwin, 1926-1931*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p. 54-122을 참조하라.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폭력투쟁과 어느 한편이 비폭력투쟁기술을 사용하는 투쟁에 대한 사상자율에 관해 심도있는 비교통계학적 연구가 없었다. 이것에 관한 간단한 논의가 TPONA, pp. 583-586에 포함되어 있지만 불충분하다. 폭력투쟁에서의 사상자수에 관한 산만한 자료들은, 이 책에서 조사되고 인용된 바와 같이, 비폭력투쟁에서의 사상자수에 관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나는 누군가가 갈등의 규모, 개입된 사람의 수, 정권과 대중의 성격, 문제되는 쟁점의 유형 등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면서 그러한 비교 연구를 해주길 기대한다.

핀란드 저항운동에 대해서는 TPONA, pp. 593-594, n. 93을 참조하라. 그 원 출처는 William Robert Miller, *Nonviolence: A Christian Interpretatio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4), p. 247이다.

프라하에서 있었던 비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에 관해서는 *New York Times*, December 15, 1989, p. A17)을 보라.

1924-1925년에 일어난 Vykom의 무저항 비협력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TPONA, pp. 82-83, n. 18을 참조하라. 원 출처는 Joan V. Bondurant, *Conquest of Violence: The Gandhian Philosophy of Confi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pp. 46-52와 Mohandas K. Gandhi, *Non-violent Reststance* (New York: Schocken Books, 1967), Indian edition, *Satyagraha* (Ahmedabad: Navajivan Publishing House, 1951), pp. 177-203, 그리고 Mahadev Desai, *The Epic of Travancore* (Ahmedabad: Navajivan, 1937)이다.

비폭력투쟁에서의 전략적 원칙에 관한 초보적 논의는 TPONA, pp. 429-510에 나와 있다.

Peshawar철수에 관해서는 TPONA, pp. 335, 432, 675과 p. 747, 그리고 S. Gopal, *The Viceroyality of Lord Irwin 1926-1931*, pp. 68-69를 참조하라.

필리핀 컴퓨터 기술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Mercado, People Power, pp. 67, 75-76을 참조하라.

노르웨이 교사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Gene Sharp, "Tyranny Could Not Quell Them, "Pamphlet (London: Peace News, 1958, and later editions)을 보라.

1953년 동독 봉기에 대해서는 Stefan Brandt, *The East German Rising* (New York: Praeger, 1957)과 Theodor Ebert, "Non-violent Resistance Against Communist Regimes?" in Roberts, *Civilian Resistance as a National Defence*, chapter 8.을 참조하라.

미국 식민지들의 비협조운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Conser et al., *Resistance, Politics, and the American Struggle for Independence*를 참조하라.

영국 상품에 대한 인도의 불매운동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TPONA, pp. 751-752, nn. 184-189를 참조하라.

아랍 원유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Mohammed E. Ahrari, *The Dynamics of Oil Diplomacy: Confiict and Consensus* (New York: Arno Press, 1980), chaptr 6, 과 Sheikh Rustum Ali, OPEC: *The Failing Giant*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6), chapter 5를 보라.

Kapp Putsch에 대항한 스트라이크에 대한 인용은 S. William Halperin, *Germany Tried Democracy: A Political History of the Reich from 1918 to 1933* (Hamden, Conn: Archon Books, 1963 [1946]), pp. 179-180에서 따온 것이다.

총파업에 대한 나찌의 금지에 관해서는 TPONA, p. 532, n. 43을 참조하라. 원 출처는 Jacques Delarue, *The Gestapo: A History of Horror* (New York: William Morrow, 1964), p. 8이다.

나찌가 군인들의 사임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에 관해서는 TPONA, p. 753, n. 192를 보라. 원 출처는 Walter Gorlitz, *History of the German General Staff, 1647-1945*, trans. by Brian Battershaw (New York: Praeger, 1962), p. 319이다. p. 341도 참조하라. 동독 봉기 기간동안 일어난 반란에 대해서는 TPONA, p. 753. n. 194를 참조하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러시아 군대의 사기문제와 그로 인한 군병력 대체에 대해서는 Robert Littell, editor, *The Czech Black Book: Prepared by the Institute of History, Czechoslovak Academy of Sciences* (New York: Pareger, 1969), pp. 212-213을 참조하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용문구는 *The Politics*, trans. by T. A. Sinclair, revised by Trevor J. Saunders (Harmondsworth, England, and Balitmore, Md: Penguin Books, 1983 [1981]), pp. 227 and 353에서 따온 것이다.

"單一體의 깨진 틈"("Cracks in the Monolith")이란 문구는 Karl Deutsch에게서 따온 것이다. 그의 저서, Karl Deutsch, "Cracks in the Monolith", in Carl J. Friedrich, editor,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p. 308-333을 참조하라.

獨裁體制의 脆弱性에 대해서는 Gene Sharp, "Facing Dictatorships With Confidence." in *Social Power and Political Freedom* (Boston: Porter Sargent, 1980), pp. 91-112을 참조하라. 원 출처도 그 책에서 따온 것이다.

(譯者 : 朴炳一,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원)

第 4 章

民間主導민간주도의 防衛방위

새로운 防衛戰略방위전략의 개발

非協助비협조와 抵抗저항을 통한 민간인의 투쟁은 투표권 획득에서 독재자 제거에 이르는 다양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천되어 왔다. 제1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이러한 투쟁들이 독일, 프랑스, 체코 등지에서 내외의 침략자에 대한 공식적인 국방정책으로서 추진되었다.

이 章장에서는 시민 저항에 의한 防衛방위가 앞으로 몇십년동안 현실적인 選擇代案선택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지, 만약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安保威脅안보위협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市民시민의 자유와 자결권과, 그들이 선택한 社會體系사회체계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軍事的군사적인 防衛力방위력의 심각한 한계와 단점들로 계속 고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民間主導민간주도의 방위를 주의깊고 철저하게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非暴力비폭력 行爲행위의 여러 방법들을 보다 더 세련되게 결합하는 方法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 비폭력행위의 수단들을 戰爭

抑止전쟁억지와 國際防衛국가방위라는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방법, 이러한 작용방법을 새로운 지식과 견해, 새 전략과 대응준비로서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분석, 戰略分析전략분석, 위기대처계획, 훈련 등을 통해서 다양한 戰略的전략적인 代案대안과 함께 세련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축적된 연구결과들은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의 效果효과를 배가해 줄 것이다. 과거의 즉흥적인 비폭력 투쟁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보다 적어도 열배 이상의 效力효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本章은 의도적으로 개발된 脫탈-軍事化군사화 防衛政策방위정책(post-military defense policy)의 윤곽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국민들은 국내의 권력찬탈이나 외국침략이 있을 때 저항할 準備態勢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된다. 준비태세라는 것이 이런 정책에 의해서 전쟁억지력이나 방위능력을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

領土侵略영토침략과 大量虐殺대량학살

침략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유의하는 것이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 계획수립에서 매우 중요하다. 침략자들이 영토확장이나 대량학살과 같이 극단적인 목적들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적 방위정책을 흔히들 순진하고 부질없는 것으로 不信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라면 군사적인 방위의 효용성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사실상 防衛戰爭방위전쟁이나 폭력적인 저항도 대량학살을 유발하며, 침략자에게도 "전쟁상의 필요"나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기방어적 조치라는 "정당화"의 편리한 구실을

줄 수 있다. 침략자들은 심지어 그들의 침략과 대량학살이 유감스러운 사실이나 희생당한 적대세력이 계획했던 몰살기도를 막기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戰爭狀況전쟁상황은 독가스, 生化學생화학무기, 中性子彈중성자탄과 같이 광활한 지역의 인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사용하기 쉬운 여건들을 제공한다. 이런 살인 武器무기들이 非暴力비폭력 抵抗者저항자들에게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또 그런 실제 사례도 없었다.

대량학살이나 영토확장이 시도되었다면 그런 경우 침략자들은 분명 침략받은 국민이나 사회를 오래동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피침략자들로부터 방위의 중요한 수단을 빼앗아 버리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영토를 장악하려 하거나 대량학살을 저지르는 침략자들도 어떤 단계에서는 침략당한 국민들로부터 복종이나 협조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소련점령지역에서의 독일의 정책이 戰時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實用主義的실용주의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찌는 동유럽과 소련의 슬라브민족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여 독일인들의 植民식민과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그들을 추방하거나 전멸시키려고 들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독일인 공직자들은 그런 인간 이하의 존재들(untermenschen)로부터 협조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찌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무릅쓰고 일부 독일인 관료와 장교들은 "東方地域동방지역"에서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애버리려 했던 그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했음을 마지 못해 인정해야만 하였었다. 그러한 많은 사례들은 "Alexander Dallin의 독일점령지 연구에서 인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allin은

Belorussia의 총독(Generalkommissar)이던 Wilhelm Kube가 1942년 "그 지역사람들의 협력 없이는 독일군이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음"을 마지 못해 인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Dallin은 在蘇 독일군 사령관의 1942년 12월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은 명백히 이 지역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러시아는 러시아인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 Harteneck 장군은 1943년 5월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우리는 러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오직 그 안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의사에 합치해서만 征服정복할 수 있지, 그들 意思의사에 反해서는 정복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大量虐殺政策대량학살정책에 대항하여 잘 준비된 非協助비협조운동은 대량학살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의 중간단계에서 주민통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그 진행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다. 저항없는 땅을 원하는 침략자들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그 영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非暴力비폭력 行爲행위들이 대량학살을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었다. 만약 大量虐殺대량학살의 의도나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전파된다면 침략자 본국의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 정부들 및 국제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大量虐殺대량학살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로운 학살기술들은 일단 시작만 하면 학살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앞당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잔학행위들을 무력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탐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체념적·숙명주의적인 태도는 버려져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비폭력 투쟁과 관련된 특이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이런 검토를 할 수는 없으나, 주목해야 될 점은 대량학살을 반대하는

여러 형태의 非暴力비폭력 抵抗저항이 독일과 그 연맹국 및 나찌 점령 지역에서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人種인종말살과 대량학살을 어떻게 중지시키며 방지하는가에 관해서는 아직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영토확장이나 인종말살이라는 목적들은 공격 행위 중 오히려 드물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적인 권력찬탈이나 외국의 군사적 침략들은 다른 목표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극단적 경우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서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를 옹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든 간에 국내적 권력찬탈이나 외부의 침략, 점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民間主導防衛가 개발될 수가 있다. 이 章장의 나머지 부분이 다루는 문제는 이처럼 훨씬 더 보편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다.

目標목표나 成功성공에 대한 攻擊者공격자들의 計算계산

국내권력 찬탈자들과 외국 침략자들은 모두 어떤 목표들을 성취하려고 행동한다. 쿠데타나 정부전복과 같은 내부의 권력탈취도 그런 행동을 이끄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는 의도를 갖거나 또는 좀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인 목표들을 겨냥할 수도 있다. 외국의 침략이나 점령도 대부분 괴뢰정권이나 꼭두각시정권을 세우고, 국민과 영토를 고스란히 합병하고, 경제를 착취하며, 어떤 원자재를 손에 넣고, 새 국민들에게 어떤 이념이나 종교를 주입하며,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며, 제3국을 공격하기 위해 군장비나 군대를 수송하려는 것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모든 국내외 침략의 성공은 그런 目標목표의 成就與否성취여부에 달

려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발적인 분노의 폭발이나 무분별한 大量破壞대량파괴 행위를 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계산된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Ruhr지방에 대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침입은 예정된 戰爭賠償金전쟁배상금의 지불을 확보하고 Rheinland지방을 獨逸독일로부터 분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68년 소련은 체코에 강경파 共産主義政權공산주의정권을 회복시키고자 원했었다. Kapp Putsch(반란)와 프랑스 장군의 쿠데타에서처럼 내부의 권력찬탈자들은 언제나 前정부를 내쫓으며 국가기구와 사회를 통치하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攻擊者공격자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산해야만 한다.

그들 目標목표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확보하려면 침략자들은 점령지역도 통치해야 한다. 정치적인 통치는 그 자체가 주요한 목표가 아니지만 침략자들의 다른 목표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경제착취, 원자재 확보, 이념주입, 주민의 철거 등 모두가 피침지역의 기관들이나 주민들의 적지 않은 협조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그 나라의 영토를 지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侵略者침략자들은 그 주민과 사회기관들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저항하는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침략지도자들의 침략결정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적인 침략자들은 침략의 결과로 오는 利益이익이 豫想費用예상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의도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勝算승산을 따지게 된다. 만약 성공의 기회가 적은데 비용만 크다면, 잠재적인 침략자들은 침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공격이 抑制억제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여, 전쟁억제란 꼭 군사적 수단에만 결부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핵무기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순수한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도 戰爭抑止전쟁억지는 달성될 수 있다.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가 어떤 상황에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 어느정도의 억지력을 갖는가의 문제는 주로 다음 두 가지의 要人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1) 侵略者침략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방지하고 그들에게 감당키 어려운 비용을 부가할 수 있는 사회의 실제 능력, (2) 侵略者들의 목표를 방해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社會사회의 能力능력에 대한 잠재 침략자들의 認知度인지도.

이러한 要人요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군사적인 수단과는 대조적으로 시민의 억지력은 침략자의 본국에 대한 물리적인 파괴와 대량살상의 위협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침략받는 사회가 침략자들의 목표달성을 저지하고 너무 많은 비용을 들게 한다는 것을 침략자들의 인식할 때 비로소 억지력이 發效발효될 수 있다. 그 代價代價들이란 침략자들 정권이 國內的국내적(내부적 반란이나 소요) 國際的국제적(외교적 경제적 비용)으로 입게 되는 손해, 피침된 나라 자체내에서의 목표달성 실패, 효과적인 정치적 통제의 봉쇄, 침략군, 행정요원들, 침략국민 사이의 불만유도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民間主導防衛의 억제력은 직접 실천적인 방위능력에 달려 있다. 이는 核抑制力핵억제력이나 대규모의 통상적 軍事力군사력에 의한 억제력과 크게 대조가 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억제력들의 경우 오늘날에도 공격당한 후에 때로는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생활양식, 그리고 제도 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공격에 대한 방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용될 軍事武器군사무기는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市民社會시민사회를 보호하지 못한다.

연구정책개발과 평가,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초기단계를 넘어서는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의 抑制力억제력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핵심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번째 요소는 모든 국민과 사회기관전체의 철저한 준비와 訓練훈련이다. 때때로 이러한 준비에는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따른다.(그 변화란 권력이양이 더 많아지고 개인들, 집단들, 사회기관들이 더 많은 책임성을 지게 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사회의 탄력성, 자주성 및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침략자들의 어떠한 목표달성도 좌절시키는 능력과 침략자들의 정치적 통제력강화를 방지하는 방어자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방위능력은 또한 침략자들의 그러한 모험의 代價를 올려주며, 侵略者침략자들에게 부가되는 국내적, 국제적인 우려를 배가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 요인은 새 防衛政策방위정책에서 동원될 수 있는 강력한 방위능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모든 가상 공격자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진실로 강력하고 잘 준비된 방위능력만 있다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弘報홍보(단순한 개방이 아님)는 국내의 반란자들이나 외국의 침략자들 모두에 대한 억제력을 증가해 준다.

제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抑制力억제력은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방법중의 핵심 부분이다. 그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념케 하는 방법 중에는 합리적 설득, 도덕적인 호소력, 思考轉換사고전환과 도발성이 적은 정책들의 영향들이 있다. 民間主體抑止能力민간주체억지능력을 쌓는데 추가하여 自國자국에 대한 공격을 단념시키려면 다른 나라 국민들로부터의 존경과 동정을(sympathy) 얻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그

나라가 행동해 온 대외관계를 통하여 만들어 질 수가 있다. 대외원조와 긴급 구호노력 및 기타의 건설적인 국제관계가 이러한 조치속에 포함될 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은 民間主體防衛政策민간주체방위정책을 선택하는 나라들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호감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비록 꼭 그렇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이러한 대외정책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공격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외정책들만으로는 불충분치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民間主體前進防禦戰略민간주체전진방어전략(civilian-based forward strategies)은 어떤상황하에서도 외국의 침략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수단이다. 그러한 전략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격을 저지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목적들이란 해군기지, 공항, 광물자원 획득 등과 같이 영토의 한 부분만 점령하는 경우도 포함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일상적인 市民主體防衛戰略시민주체방위전략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民間主體민간주체의 방위에서는 침략자들의 본국 혹은 다른 피점령군에 있는 불만세력들의 효과적인 비폭력 저항을 수행하거나 대규모 시민반란을 일으킬 기술적인 방법들을 전파시킬 수가 있다. 이 방법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화, 인쇄매체, 편지, 카세트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들을 이용하여 전파시킬 수 있다. 본국에서 하는 저항과 반란은 잘 준비되고 방위태세가 갖추어진 나라를 해외로 군대나 기능요원들을 파견하는데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軍事的이건 비군사적이건 간에 어떠한 억제력도 그 억제력을 행사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패가능성에 대비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군사적인 수단과는 대조적으로 民間主體防衛민간주

체방위의 抑制力억제력은 직접 자체의 방위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市民主體防衛시민주체방위의 준비태세가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도 핵억제력과는 달리 전멸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정한 방위력을 처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방어가 어떻게 가동될 수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民間主體防衛의 戰鬪能力전투능력

우리가 보아 왔듯이 공격을 방어하는 이러한 정책능력은 침략자들의 목적달성을 저지하는 능력이나 국내적·국제적으로 비싼 代價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능력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民間主導민간주도의 防衛방위를 하려면 사상자 발생에도 굴복하지 않고,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때처럼 저항하고 잘 준비된 투쟁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아마도 모든 국민들과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투쟁에 참가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침략과 공격이 일어나면 초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공격받은 국민들은 흔히 방향감각을 상실하며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1940년 4월, 나치스의 침공 직후 Norway가 그런 경우였다. 저항이 끝난 후 사람들은 Quisling의 파시트당(Nasjonal Samling)에 대해, 또한 게쉬타포의 지원을 받는 독일의 군사적 점령에 대해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생각해 내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만약 국민들 중의 여러 계층들과 사회기관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과 책임등을 포함한 抵抗저항운동의 일반지침을 알고 있고 미리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이러한 막막한 감정과 혼란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다가오는 위기를 결의에 차고 높은 기개와 자신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반대행위나 침략자에 대항하여 사회를 방어하려는 욕망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큰 行動戰略행동전략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 전략은 방위의 일반적 목표들과 투쟁을 집중시킬 爭點, 일반적 抵抗저항행동의 선택, 방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다른 수단들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大戰略은 다시 특정상황과 특정목적을 위한 다양한 個別的개별적인 鬪爭戰略투쟁전략들로 개발되어야 한다. 각 전략들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어떻게 각 부분이 함께 작용하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각 전략은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戰術전술이나 보다 더 한정된 行動計劃행동계획을 갖출 것이다. 그런 戰術전술과 개별적 行動方法행동방법들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서 각 특정전략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주도방위의 무기나 방법은 비폭력적인 방법이며 이미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분야에 걸쳐 있다. 과거의 임기응변적인 비폭력 투쟁에서 사용된 것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상징적인 항의, 수송방해, 사회적 보이콧, 특정 또는 전면파업, 시민 불복종운동, 경제적 보이콧, 특정 또는 전면파업, 시민 불복종운동, 경제적 보이코트, 정치적 비협조, 공공시위, 신문증 위조, 사업장 폐쇄, 금지된 신문발간, 명령수행과정에서의 고의적 비능률 조장,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각종 지원, 저항적인 라디오나 텔레비전방송, 입법부를 통한 공적인 저항, 사법적 저항, 공식적인 정부 반대, 권력탈취자들에 대한 정당성부여 거부, 공무원들의 비협조, 입법지연과 연기, 전술저항 선언, 폐기된 정책과 법들을 계속 지키는 것, 학생들의 저항, 아이들의 데모, 결탁행위 거부, 개별적·집단적인 사퇴, 대대적·선별적 불복종, 독립 기관이나 조직의 자율성 유지, 반란군대의 내부파괴와 폭동 선동 등이 그것이다.

民間主導민간주도의 防衛能力방위능력과 抑制力억제력을 위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단일 계획이나 청사진이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시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인 군사적 대결이나 핵무기 대결에서는 갈등의 초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기들이 압도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파괴하고 살상한다. 그러나 민간주도방위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무기들이 문제된 쟁점을 생각해서는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방법의 선택은 제3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침략자들의 목표 달성을 저지하기 위해 채택된 특정 전략에 의해 그리고 비폭력 투쟁의 일반적 戰略原則전략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自治政府의 正統性과 效率性을 유지해야만 한다

건실한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의 전략이 지키는 기본적인 戒命계명이 있다면 침략자들의 통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自治政府자치정부의 정통성과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防禦者방어자들은 언제나 침략자들의 정통성을 거부해야만 한다. 침략자들이 현존하는 정부를 접수하려고 하든 혹은 정부를 새로 세우려고 하든 간에 침략받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기도를 방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防禦者방어자들은 이러한 침략자들의 목표 두 가지 모두에 대항하며 또 실패하게 만들어야 한다.

설사 침략자들의 주요 목표가 침략한 나라의 정치를 자기들 모델에 따라 개조하려는 것이 아닐지라도 被侵國피침국의 정치체제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侵略者침략자들이 시간이 걸리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피침국 국민들이나 사회기관들의 전반적

협조를 얻어야만 한다. 그래서 피침국 정부기구의 복종과 협조를 얻어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으며 또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새 統治機構통치기구를 강요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침략자의 正統性정통성을 일체 거부하며, 기존정부가 침략국에 복종하거나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에서는 공격자들이 피침국 정부의 상징이나 정통성, 행정기구, 사회적·정치적 통제기관들, 경찰력, 군사력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침략자들이 새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미 성공했거나 또는 새로 만들려고 할 때에는 (1) 防禦者방어자들이 다양한 非協助비협조의 수법으로 그 정부를 고립시키며, (2) 防禦者들의 정부를 침략자들이 수립한 정부와 병존·대립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침략자들이 피침국의 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면 방어자들의 대항 정부는 종전의 정부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다. 아니면 그 대항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형태를 유지할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이든 이러한 대항 정부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구조와 더불어 운영되어야 한다.

대항정부(parallel government)는 제3장에서 토론되었지만 그 사례들은 주로 革命的혁명적 狀況상황에서 발생한 것들이었다. 대신에 여기서는 공격받은 정치체제의 도덕적·법적 권위를 유지하는 것과 반란자이든 침략자이든간에 효과적인 통치기구들을 공격자의 통제권 밖에 놓아 둔다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대항정부에 대한 概念定義的개념정의적 분석이나 민간주도방위투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아직 행해진 바가 없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자율적이고 정통성있는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반란자들이나 침략자들의 정치적 통제력 획득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1장에 서술된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쿠테타에 대한 방어사례를 보

더라도, 제한된 형태로나마 정통성있는 정부가 갈등의 전기간동안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비록 Ebert정부가 베를린으로부터 도망가버리고 首都수도는 점령되었지만, 高位公務員고위공무원들은 그들의 직위를 유지하였고 地方政府지방정부도 전혀 교체되지 않았다. 정통성 있는 정부에 복종하는 관료들과 여러 정부기관들이 존재하는 동안 반란분자들은 아무런 통제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의 de Gaulle-Debre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Algier 쿠테타가 끝내 붕괴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란군들은 처음에는 정부기구를 장악했지만 그 통제능력은 곧바로 허물어져 버렸다. 프랑스와 벨기에가 루우르(Ruhr)지방을 점령한 기간동안 바이마르정부가 계속 존재했던 것도 非協助政策비협조정책을 만들거나 지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차 세계대전동안 런던에 있었던 많은 命令政府망명정부들도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정부들은 독일점령치하에서 수립된 괴뢰정부와는 반대로 정통성을 가진 대체 기구들로써 기능하였으며, 수시로 본국의 抵抗活動저항활동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亡命政府망명정부는 체포된 비폭력 저항자들의 가족들을 돕고자 점령상태에 있는 노르웨이에 돈을 보내려고 힘썼다. 네덜란드 亡命政府도 연합군의 進攻진공을 돕기 위해 네덜란드 철도노동자들이 1944년 9월에 파업을 하도록 호소하였고 이 파업은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1968년-1969년의 체코 사례에서는 정부와 공산당이 처음에는 소련점령에 대항하여 전면적 非協助비협조의 政策정책을 택하였다. 이러한 초기단계의 반응은 模範的모범적인 것이었으며 그 기간동안 소련은 새政府 비슷한 기구조차 수립할 수 없었다. 체코 防衛鬪爭방위투쟁이 끝내 실패한 것은 체코에 진주한 바르샤바조약군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모스크바 협상에서 정부와 당료들이 소련측에 양보하려는 시도에

서 비롯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로는 수개월에 걸쳐 소련에 조금씩 양보를 계속하게 되어 결국에는 1969년 4월 Dubcek의 통치를 대체하라는 소련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침략 받기 전의 政治體制로부터 비롯된 비타협적인 리더십은 투쟁의 첫 일주일정도만 지속되었다. 非暴力的비폭력적 防衛鬪爭방위투쟁은 당시 정부가 소련점령군의 명령을 무릅쓰고 정통성 있는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에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가 점령군과 기존 정부안에 있었던 스탈린주의 동조자들을 무시했던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소련군이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자 정치적인 압력을 점진적으로 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체코지도층은 끝내 이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防禦戰略을 選擇선택하려면

공격자들이 정치체제의 통제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추가하여 공격자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다른 목표달성도 방지하고자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攻擊者공격자들의 목적이 경제적인 착취에 있다고 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방위전략과 방어수단은 경제적 방법이다. 이것은 공격자들의 목적들이 정치적・이념적 영토적 혹은 대량학살이나 기타인 경우의 적절한 방어수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벨기에가 침공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루우르(Ruhr)지방의 석탄단지를 채굴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일 방위노력의 상당한 부분은 점령자들의 방대한 석탄단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광부들의 파업, 광산의 점령, 수송기관 노동자들의 보이콧 등이 사용된 저항수단 중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다.

반면에 정치적인 爭點쟁점일 수도 있다. 앞에 언급된 노르웨이 사례에서 학교를 파시스트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과 같이, 어떤 순간에 鬪爭투쟁의 爭點쟁점이 되는 것은 매우 제한된 것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저항의 주요 수단은 社會的·政治的사회적·정치적 非協助비협조의 형태를 취하지만(가정에서 즉흥적으로 학교수업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象徵的상징적 抗議항의와 다양한 妨害方法방해방법들도 취할 수 있다.

일찍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체코에서의 러시아의 초기목적은 Dubcek 정권을 순종적인 스탈린주의자집단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것이었고 거대한 규모의 목표였다. 그래서 초기의 저항은 아주 강력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스탈린주의자들이 괴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民間主導의 防衛計劃방위계획을 가짐으로써 방위자들은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들의 전략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다. 또한 공격이 오기 전에 對應戰略대응전략과 選擇代案선택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계획은 또한 대안적인 전략과 임시대책을 개발케 하였으며 방어자들로 하여금 民間主導의 防衛鬪爭방위투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할 수가 있다. 평화시에 마련된 이러한 모든 전략분석들은 戰時전시상황에서 방위자들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民間主導防衛戰略민간주도방위전략과 그 실천수단의 선택은 아래에 기술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중요도에 따른 순서는 아님)

공격하는 정권과 집단의 성격 ;

양측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느껴 온 상호 親疎感친소감의 정도 ;

공격자의 行爲手段행위수단과 抑壓措置억압조치의 성격 ;
제3자가 공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影響영향이나 壓力압력의 정도 ;
방어자가 제3자들로부터 影響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 ;
공격받은 사회와 그 非國家機關비국가기관의 이같은 잠재적인 역량 ;
공격자측의 政權정권과 政治體系정치체계의 脆弱性취약성 ;
사회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사전준비의 정도와 그 성격 ?
공격자들과 방어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爭點쟁점의 상대적인 중요성 ;
방어하는 사회가 경제적, 특히 식량, 급수, 연료의 사정 自立자립을 할 수 있는가, 또는 脆弱한가 ;
방어자들의 방위의 대가로서 死傷者사상자까지도 감수하려는 意志의지 ;

제3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市民防衛者시민방위자들은 어떤 변화의 機制기제(mechanism)가 승리쟁취에 가장 좋은지 숙고해야 한다. 방위자들은 목적과 공격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공격자들이 생각을 타협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防衛鬪爭방위투쟁에서는 대체로 공격자들과의 타협이 그리 찬양할 만한 목표가 되지 않는다. 그 대신 방위자들은 공격자들의 원래 目標와 공격행위 그 자체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려고 들 것 같다.

특별한 경우에는 強制力강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부침략자들 본국의 정권이 자국민들을 탄압하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방위하는 나라로부터 침략군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침략국을 분열시키기 위해 침략 본국내의 저항자들과 협조하는 목표도 세울 수 있다. 만일 공격이 국내적 권력탈취에서 왔다면 목표를 그 세력의 해체에 둘 수도 있다. 공격집단이 항복

하려는 경우에서도 하나의 정치 조직체로서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라도 남아서 장래에 유사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思考轉換사고전환, 妥協타협, 비폭력강제 등의 방법들은 서로가 긴밀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며, 사고전환과 비폭력 강제가 혼합됨으로써 공격이 해소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 방법, 메카니즘(機制)이 선호 되느냐 하는데 따라 防衛의 大戰略대전략이나 구체적 행동방법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民間主導防衛에서 어떤 다른 행동유형을 비폭력적 투쟁과 함께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 해답은 단지 행동이 "폭력적"이냐 "비폭력적"이냐고 물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구분은 재산의 파괴를 포함하여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행동유형중의 두 가지 범주유형일 뿐이다. 이러한 수단들이 과연 民間主導防衛와 공존할 수 있으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軍事的군사적인 抵抗저항과 非暴力的비폭력적인 투쟁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러한 행동에는 거의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기계나 자동차로부터 핵심부분을 제거하는 것, 안전수칙 안에서 자동차 연료를 없애거나 새게 하는 것, 인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 부서나 경찰과 같은 부속기관들의 컴퓨터정보, 서류, 기록들을 파기하는 것 등이다. 또한 장차 공격자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끼치는 행위, 가령 침략군을 봉쇄하기 위해 중요한 다리나 터널을 파괴하는 것도 民間主導의 防衛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 수송수단, 건물, 다리, 시설 등의 파괴와 같이 殺傷

危險살상위험이 따르는 행동들은 비폭력 투쟁의 효율성을 위태롭게 한다. 이것은 반드시 倫理的判斷윤리적판단은 아니지만 實用主義的실용주의적 판단이라 하겠다. 자료와 증거물 들을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잘해도 너무 위태로우며 잘못하면 民間主導防衛에 크게 역효과를 미치게 된다. 1923년의 루우르투쟁(Ruhrkampf)에서 보았듯이 이런 유형의 사보타지는 군부대와 공격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殺傷살상할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까지도 죽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 극단적인 억압을 불러 일으키며, 鬪爭方法투쟁방법을 비폭력적 투쟁으로부터 재산파괴행위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저항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지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루우르(Ruhr)투쟁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보타지는 기존의 강력한 비폭력 투쟁의 기반을 손상케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파괴나 그와 유사한 행동은 전반적으로 민간주도방위의 武器庫무기고(amory)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民間主導의 防衛투쟁들의 하나같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르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公式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민간주도방위의 효과가 적어도 다음 7개의 요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열거된 것이 아님.)

* 공격에 저항하여 防禦방어하려는 국민들의 意志의지 ;
* 공격받은 사회의 內部力量내부역량 ;
* 권력의 뿌리를 보존하고 이를 공격자들에게 내주지 않는 국민들과 사회기관들의 능력 ;
* 방위자들이 부릴 수 있는 戰略的전략적인 지혜 ;
* 공격자들의 목표달성을 방지하는 防衛者방위자들의 능력 ;

* 억압을 무릅쓰며 비폭력투쟁의 규율을 유지하고 저항을 계속하는 등 효과적인 非暴力鬪爭을 하는데 필요한 守則수칙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民間防禦者들의 능력 ;
* 공격자들의 體制와 政權의 약점을 더욱 확대 이용할 수 있는 防衛者방위자들의 기술 ;

侵略者들의 暴力에는 抵抗해야

사람들은 鬪爭투쟁의 압력을 견더내는 방법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억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지속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또한 中間단계의 勝利승리를 어떻게 영속성있는 최종 승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해와 계획, 잘 알고 하는 일치된 행동들은 국민들의 잠재력을 동원하며 防衛能力방위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非暴力方法들의 성공은 억압을 무릅쓰고 지속되는 실천능력에 달려 있다. 또한 도발적인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비폭력의 규율을 견지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폭력으로 전환하면 폭력적 무기에 대해 비폭력적으로 투쟁하는 불균형한 갈등(市民防禦者들에게 매우 유리한 갈등임)이 쌍방이 다같이 폭력적 무기를 사용하는 균형적인 갈등으로 바뀌고 만다.(이러한 균형적인 갈등은 보통의 경우 더 좋은 장비를 가진 공격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갈등이 되고 만다).

市民防衛者들에 대한 억압도 가혹할 수 있다. 저항자들과 가족들, 친구들이 체포되거나 고문받고 처형되기도 한다. 모든 국민에게 식량과 물 또는 연료가 공급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시위자들과 파업자들, 그리고 방해적인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射殺사살될 수도 있다. 市長시장들과 市議會議員시의회의원들, 교사들과 聖職者성직자들이 수용소에 보내지며 인질들이 처형될 수도 있다. 抗議者항의자들이 대

량학살되는 경우도 있다. 防衛방위를 위해 인간피해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방위투쟁으로 생기는 死傷者사상자들이나 기타 희생자들은 핵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재래식 전쟁이나 게릴라전으로 생기는 막대한 희생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다. 고통이나 죽음은 사실상 격렬한 갈등에서는 회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非暴力的鬪爭은 사상자와 파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제3장에서 언급했듯이 사상자율은 제한된 자료를 보아도 일상적인 전쟁과 특히 게릴라전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과 같은 주요 갈등상황에서처럼 공격자들의 폭력 앞에 도망가거나 항복을 하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市民防衛者들은 혹독한 억압이나 잔혹성에 놀라지 말아야 하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防衛者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抑壓억압이란 저항 때문에 공격이 성공키 어렵다는 인식에서 생겨난다. 저항을 줄이거나 끝내야만 공격자들의 가혹한 폭력이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격자들에게 장래에는 더욱 심한 폭력을 되풀이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격이다. 왜냐하면 그런 폭력이 攻擊者공격자들이 소망하는 결과인 복종을 낳게 했기 때문이다.

防衛者방위자들은 공격자들을 자극하는 다른 비폭력행동방법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폭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많은 경우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수단인 정치적 柔術유술(jiujitsu)의 과정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初期段階초기단계의 두 가지 戰略

모든 시민주체의 투쟁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靑寫眞청사진이

만들어질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민간주도방위의 주요 構成要素구성요소와 전략의 윤곽을 그려낼 수는 있다.

만일 民間主導防衛 준비의 抑制效果억제효과나 다른 국내외정책의 저지 효과들을 가지고도 외부침략이나 내부 권력탈취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정상적 방위정책이 실시 되어야 할 때이다. 어떤 방위전략은 공격의 초기단계부터 즉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격당한 사회는 단순히 공격자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防衛者들의 初期戰略초기전략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형태를 취하기가 쉽다. 하나는 防衛者들의 抵抗意志저항의지를 전달하며 장차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警告경고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역시 의사전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후반단계에 보여 줄 보다 강력한 저항을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계획된 전략이다.

비록 위의 두 전략이 과거의 사례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어느 것도 발달된 戰略전략으로서 정확하게 들어 맞는 역사적 先例선례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68년의 체코에서 처음으로 위의 두 戰略의 일부 요소들도 구성된 여러 초기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란 소련군 수송차가 건너야 할 다리를 봉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는 것, 소련군인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는 것, 상징적인 파업, 국회의 반항적 선언, 소련군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군중이 둘러싸는 운동 등을 말하는 것이다. 잘 계획된 민간주도방위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이러한 방법들이 結合결합되어 과거의 어떤 다른 비계획적인 비폭력 저항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초기단계의 행동들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意思傳達의사전달이나 警告경고의 戰略전략은 애당초 저항 그 자체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 전략은 무엇보다도 공격자들에게 통고하는 것이나, 제3자와 심지어는 국민들에게까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된다. 공격자들은 문자나 상징적인 행동수단을 통해서 그 사회가 결의에 차있고 잘 준비된 대규모 民間主導防衛에 의해서 수호될 것이라고 통보받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쿠테타나 행정부의 반란보다도 외국의 침략에 더욱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외국 침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력한 非協助비협조와 거부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戰略의 중요한 요소는 大衆的대중적인 非協助와 결합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意思傳達의사전달이나 警告경고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단계의 행동은 후기단계의 非協助비협조나 거부의 전략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온건한 편이다. 그렇다고 그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장차 강력한 非暴力비폭력 抵抗저항을 할 것이라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은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행동이 총을 실제로 발사하는 것보다 온건한 것이라는 것과 비유될 수 있다.

"非暴力비폭력 電擊戰전격전(blitzkrieg)"의 전략은 의사전달 전략과 대조적으로 대중적인 비폭력 저항이나 거부를 드라마틱하게 과시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아마도 의사전달전략의 일부 방법과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전격적"전략은 국내권력 찬탈자에 대항하는데 적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침략이나 혹은 외국군대의 지원을 받는 쿠데타에 대항하는 데에도 적절하다.

비폭력적인 "電擊戰" 戰略은 공격자의 권위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 전면파업, 대규모의 정치적 비협조, 공격군에 보내는 광범위한 호소문과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될 유사한 수단 등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명백한 단결력의 과시로 인해 공격자들이 충격을 받아 즉시 철수하게 되는 확률은 대체로 매우 적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꽤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경우에든 "電擊戰전격전"戰略전략은 공격이 결의

에 찬 방어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의사전달을 모든 관계 당사자들에게 하게 된다.

意思傳達의사전달과 警告경고의 戰略전략

이 전략에서 시민방어자들은 말과 行動으로서 대처하거나 패배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유형의 강력하고 정력적인 防衛鬪爭방위투쟁이 감행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들 것이다.

이러한 意思傳達의사전달은 일부는 공격측 지도자들을 목표로 한다. 그 지도자들은 공격에 저항하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는 그 공격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정책의 산물이었다면 공격자들이 民間主導防衛의 힘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 둘 중의 어느 경우이든 공격자들의 誤算오산을 고쳐주고 약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그들의 공격을 중지하게끔 하는 조그마한 기회는 있을 법하다.

침략의 경우에 일부 警告경고나 意思傳達의사전달은 직간접적으로 공격자 본국의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쿠데타의 경우 警告는 自國자국 사회의 내부로 향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든 공격을 정당화하는 거짓말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 정부의 공직자들이나 군대가 반란에 개입될 수도 있고 또는 소련이 초기에 체코에서 변명했듯이 외국군대의 개입을 스스로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자신이 자도자에 의해 강행되는 비헌법적이고 정통성이 결여한 행동들을 식별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防禦者방어자들이 군사적인 수단보다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주로 內戰내전을 피하려고 하다보니 군사쿠데타에 대하여 종종 수동적으로 복종

하기가 일쑤였다.

방어하려는 의지를 전달하는 언어와 행동, 그리고 방어에 사용되는 수단들은 이웃나라들, 즉 국제사회를 향하게 된다. 民間主導防衛條約機構민간주도방위조약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同盟國동맹국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사전달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1) 피침국에 도움이 되는 원조 ; (2) 방어에 害해를 끼칠 행동을 회피하는 것 ; (3) 공격자들에 대한 외교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압력들을 촉진하는 일.

공격자들에게 보내진 意思傳達의사전달이나 警告경고는 피침국의 국민들에게도 알려진다. 여태까지 방위정책에 거의 관계하지 않았던 국민들이나 방어정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실천할 방위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시민주체방어가 미리 적절하게 준비된 곳에서는 이러한 과업이 그처럼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지방의 지도자들이 방위하는 국민들과 직접 의사소통하기 위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전달들을 사용한다. 체코침공과 점령의 초기단계에서도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라디오와 텔레비전, 저항신문 등 모두가 사용되었다. 비폭력 저항운동에서 국민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라디오방송이 매우 중요하였다. 사전에 계획하고 準備준비를 한다면 이 모든 통신수단들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自國民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침략자에 대한 것이든, 사람들은 意思傳達의사전달 행위를 통하여 공격의 뉴스 이상의 사항을 듣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 전체가 대단히 중요한 방위투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으며 각자도 防衛鬪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메세지를 듣게 된다. 이런 소식은 이웃이나 직장에서 하는 준비활동에 도움이 되며 국민 모두에게 抵抗精神저항정신을 고취한다.

이런 기간을 틈타서 기회주의적으로 富貴榮達부귀영달을 꾀하려는 사람과 공격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들은 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며 賣國奴매국노들에게는 비록 신체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항대상이 됨을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전달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배신한 자들로 간주되며, 攻擊者공격자들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방지될 것이다.

攻擊者공격자들의 군대와 공무원들은 이러한 투쟁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표적물이 된다. 이들은 방어하는 나라의 상황이나 그 국민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심지어는 이들이 침략한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들어왔을 수도 있다. 政權인수나 占領野慾점령야욕를 무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격하는 정권의 군대나 공무원의 충성심, 신뢰성, 복종심 등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거짓말들을 시정해 주며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이해하도록 정확한 認識인식을 주어야 한다. 市民防禦者시민방어자들은 군대와 공무원들에게 紛爭분쟁의 焦點초점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공격받고 있는 사회의 성격에 대해, 공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들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공격이 중지되고 점령이나 정권탈취를 그만두는 것이 양측의 국민들에게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방어자들은 또 공격에 抵抗저항하는 방어행위가 정력적이고 결의에 차있으며 끈질긴 것이면서도 방위투쟁이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위의 목적은 공격군내의 생명이나 신분안전을 위협함이 없이 사회를 방어하고 공격을 패배시키는데 있다. 이런 情報정보와 實踐方法실천방법은 공격하는 군대와 공무원

들의 마음을 돌려 놓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전달은 그 후에 할 呼訴호소의 기초작업이 된다.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의도적으로 온화하게 혹은 統制통제와 抑壓억압도 비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사주받는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저항자들을 방조하며, 가혹한 탄압명령을 무시하며, 폭동을 일으키거나, 시골로 가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도와줄 방어자들 속에 숨어버리도록 권유받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격자들의 억압이나 행정능력이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아니면 급속히 해체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모든 집단들에게 전달되게끔 다양한 의사전달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언어적인 의사전달수단은 편지, 전단, 신문, 개인적인 대화,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 오디오와 비디오테이프, 벽보에 적힌 구호, 포스터, 깃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그림으로 된 상징물, 중요 색깔, 거부적인 국기흔들기, 半旗揭揚반기게양, 종치기, 침묵, 사이렌 울리기, 특정의 가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여러 변형들이 사용될 수가 있다. 모든 이러한 방법들은 그 단계의 防禦鬪爭방어투쟁이 필요로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

공격하는 쪽의 軍隊군대들에게 意思疎通의사소통을 하는데는 직접적인 상징적 간섭(direct symbolic intervention)이나 방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거나 앉거나 누움으로써 그들의 몸으로 교량, 고속도로, 길, 마을입구, 도시, 건물 등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행동방법들은 주로 심리적, 도덕적 영향력에 충격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기계를 이용하는 방해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고속도로와 공항을 폐차들을 이용해서 막을 수 있다. 또는 항구, 철도, 공항의 시설들을 작업불능상태로 만들기 위해 기계를 부셔버릴 수도 있다. 기계에 의한 妨害作業방해작업이 군대의 배치나 혹은 어떤 장소나 시설들에 대한 점령을 부분적으로

방해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으나 그런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방해 공작도 주로 심리적인 충격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다른 종류의 행동들도 처음에는 상징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總罷業총파업, 經濟閉鎖경제폐쇄, 모든 마을과 도시를 텅 빈 것처럼 만드는 杜門不出두문불출, 모든 공공기관의 폐쇄와 같은 協助拒否협조거부 方法방법도 일시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은 非暴力비폭력 電擊戰전격전 또는 장기적인 방위투쟁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잠시 빌려온 것 뿐이다. 1968년 8월 23일, 바르샤바조약군이 침략한지 겨우 하루 반만에 체코인들은 한 시간동안의 항의 스트라이크로서 거의 전면적인 操業中斷조업중단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단기간의 행동은 抵抗저항의 潛在力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反對반대와 抵抗저항의 意志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침략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앞으로 보다 심각하고 실질적인 방위수단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고를 해준 것이었다.

防禦者방어자들은 意思傳達의사전달이나 警告경고의 初期戰略초기전략에서도 극적인 방해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通行禁止통행금지에 대한 대중적 반항 ; (적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리축제의 개최, "일상적 商行爲상행위(business as usual)"의 지속, 군대와 下級하급 實務者실무자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리는 대대적인 노력등이 그런 예이다.

이러한 初期活動초기활동을 통해서 침략당한 국민들에게 격렬하고 단호한 저항의지, 저항방법, 고도의 준비와 오늘의 투쟁 필요성에 따라서 각자의 책임 완수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意思傳達의사전달과 警告경고의 초기적 형태에 대한 침략자들의 대응방법은 예측하기 어렵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매우 온건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지극히 잔인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非暴力비폭력 電擊戰전격전"의 戰略전략

두번째의 初期戰略案초기전략안은 국민과 사회기관들을 즉시 대대적 抵抗저항이나 거의 전면적인 협조거부운동으로 몰아 넣는 것이다. 이 전략은 攻擊者공격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공격하려는 초기 결정에 불확실하거나 분열되어 있는 경우, 또 방어하는 사회가 자신들이 강력하다고 自身자신하며 또 그들의 방위능력이 잘 準備준비되어 있고 강력하다고 느낄 때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목표는 대대적인 저항운동에 직면할 때 공격자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부대를 철수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總罷業총파업, 경제폐쇄, 도시 철수, 외출중단, 정치체제의 마비, 침략자의 요구를 무시, "일상적 商行爲상행위의 계속(continuation of "business as usual")", 데모대가 거리를 장악하거나 거리에서 인적을 완전히 끊어 버리게 하는 행위, 攻擊軍공격군을 동요하게 만드는 시도, 과격논조의 신문간행, 攻擊공격과 抵抗저항에 관련된 방송뉴스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저항행위는 攻擊者공격자세력 지도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 市民防禦者들의 투쟁으로 인하여 攻擊者들이 승리로 얻는 열매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방어자들의 행동이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군대와 공무원의 士氣사기, 충성심, 服從心복종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戰略전략으로 短期的단기간에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폭력 전격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공격당한 사회가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공격자들에게 분

명히 전달할 수 있다. 앞으로 사용될 防衛방위의 성격이 어떠한지 또 침략자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 전략이 채택되었을 때 초기전략과 후속적인 방위투쟁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市民防衛者시민방위자들은 두 가지 초기 防衛戰略방위전략들 중 어느 것이 갈등단계에서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성공을 거두려면 민간방위자들이 매우 놀랄 만한 초기저항을 보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격군에게도 가장 비범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또는 초기의 공격군 지도자들이 보다 모험을 싫어하는 새로운 指導者지도자로 대체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리더십은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하며 퇴각할 때도 체면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오로지 이렇게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투쟁의 빠른 종결이 가능해 질 것이다.

비록 비폭력 電擊戰전격전 전략이 반드시 조속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방위자측은 매우 중요한 所得소득을 얻었을 것이다. 자신의 세력을 동원한 것과 널리 抵抗저항의 意志의지와 防衛政策방위정책의 특수 성격을 알려준 일이다. 이러한 소득은 바로 意思傳達과 警告전략의 결과와도 비슷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전개할 장기투쟁에 보다 더 적합하고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보다 잘 대처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初期段階초기단계에서는 어떠했던 간에, 방위 혹은 투쟁은 연기되며 또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방위를 준비해야 한다. 초기 행동이 意思傳達의사전달과 警告경고 캠페인이든, 非暴力 電擊戰이든, 또는 兩者양자 모두(양자의 결합 또는 한쪽의 연속이나 다른쪽의 연속이든)이든, 初期段階는 어디선가 마감하게 된다. 그리고 보다 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防衛鬪爭방위투쟁의 시간이 오게 된다.

防衛鬪爭방위투쟁과정이 戰略

군사력에 의한 전쟁에서는 방어자들도 빠르고도 명백한 승리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그 意圖의도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꼭 士氣사기의 저하나 패배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다음의 鬪爭段階투쟁단계를 위해 戰略전략을 전환하려고 든다. 市民의 防衛鬪爭에서도 그러하다. 군사적 전투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캠페인도 勝利승리를 얻기 위해 장기간의 강력한 투쟁을 要求요구될 수도 있는 비폭력투쟁의 초기단계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보다 적절한 戰略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士氣低下사기저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러한 戰略變化전략변화는 最終최종 승리를 가져올 투쟁을 전개하는데 방위자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전 계획과 準備준비의 利點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방위조직에서 나왔는지를 가릴것 없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항의하고 협조를 거부하는지 알려줄 一般指針일반지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만 비상사태하에서 설령 어떤 指導者지도자 集團집단이 체포되거나 意思傳達의 경로가 아무리 엄격하게 봉쇄되어도 抵抗運動저항운동이 계속 추진될 수가 있는 것이다. 공격자들의 행동 자체가 방위활동을 발동시키는데 충분할 것이므로 이러한 一般指針일반지침만 있다면 특별한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지침 속에 명시된 바 "總體的총체적 抵抗저항(general resistance)을 불러 일으킬 특정한 쟁점들과 상황들은 사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 攻擊者공격자들이 새 대체정부를 수립하거나 그 사회의 정치기관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때 : 社會組織사회조직이나 기관의 自律性자율성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때 : 교육, 종교, 정치이념을 통제하려고 기도할 때 :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제도를 實施실시하려고 들 때 : 官製的관제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려고 할 때 : 사회의 어떤 영역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이나 살상을 저질렀을 때.

이러한 爭點쟁점을 미리 제시하거나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의 여러 가지 方法방법으로 미리 국민들을 훈련함에 따라, 국민과 사회기관은 좋은 戰略的전략적 判斷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니시어티브로 총체적 抵抗저항을 전개할 수가 있다. 계획된 總體的총체적 抵抗은 초점이 흐린 爭點이나 규율이 없는 역효과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생기는 害毒的해독적 결과를 회피하면서 자발적인 저항의 생동력을 활용하는 길을 열어준다.

總體的총체적 抵抗저항의 사전지침은 공격자들이 방어지도자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교묘하게 防禦者방어자들을 패배시키고 공격자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한 허위 "抵抗指令"(resistance instructions)을 만들 수 없게 한다. 그런 지령은 防衛便覽방위편람, 팸플릿들, 삐라들에서 오래전부터 세워둔 기준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것이므로 쉽게 거짓임이 판명되어서 도전행위로서 배척될 것이다.

總體的총체적 抵抗저항과는 반대로 "組織的조직적 抵抗"(organized resistance)은 저항조직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집행되는 저항행동과 사전계획이나 집단적 준비를 요구하는 행동들을 말한다. 組織的조직적 抵抗저항은 책임있는 방위의 영도력이 존재하고 전체 국민에 대한 意思傳達의사전달 수단을 활용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은 치밀한 戰略的전략적 分析분석과 계획에 토대를 둔 利点이점을 가지므로 구체적 행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長期的 防衛장기적방위의 전략적 문제에서, 市民防衛者들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戰略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 非暴力비폭력 電擊戰

전격전과 유사한 "전면적 비협조"(total non-cooperation)캠페인이나 "선택적인 저항"(selective resistance)이 바로 그것이다. 방위자들은 방위의 필요성에 따라 이들 두 개의 중요한 전략을 다른 시기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全面的전면적 協助拒否협조거부

이 전략은 "全面的전면적 抵抗저항"(total resistance)이라고도 한다. 이 전략은 사회전체가 침략자들의 政權정권과 政策정책에 대하여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협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전략은 대체로 방위투쟁의 어떤 단계에서나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면적 저항은 짧은 기간이 아닌 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장기간 지속되려면 그 사회가 예외적일 만큼 강력하고 잘 준비되어 있으며 자주성 있는 사회라야만 가능하다. 전면적 비협력의 결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폐쇄하는 代價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대가는 공격자들이 가혹한 탄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우 크다. 방어하는 쪽의 국민들은 모두 전쟁에서 그러하듯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방위투쟁 동안에도 살아남아야 한다. 식량과 食水식수, 연료의 공급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準備준비가 있어야만 전면적 비협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全面的 非協助비협조는 어떤 民間主導의 방어투쟁들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아왔다.

만일 全面的전면적 非協助비협조 戰略전략이 초기를 넘긴 뒤에 오는 중요한 방위 기간에 사용되었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一時的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다. 이 전략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방위자들이 그 투쟁의 초점들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한다. 이 戰

略은 충분한 준비없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攻擊공격 그 자체나 敵적들의 잔혹한 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때문에 채택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 戰略전략이 합리적으로 선택된 상황하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全面的 非協助는 선택적 저항이 주로 사용되는 大戰略 안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제한된 시기에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시민방위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攻擊者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선택적 저항을 지속하여 왔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攻擊者들이 교회를 효과적인 정치적 통제하에 두려고 기도하여 왔다고 하자. 選擇的선택적 抵抗저항의 결과로 그러한 조처가 약화되거나 實行실행을 저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攻擊者들은 여전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러한 예에서 攻擊者들은 교회들이나 기타 사회부문의 저항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들의 독립을 파괴하려는 노력을 일시적으로 철회했다고 하자.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회가 허락되면 다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때에 全面的 非協助는 攻擊者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들을 모두 포기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 모든 사회부문이 攻擊者들, 그들의 제도, 그리고 그들의 규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것도 취약한 攻擊者들이 종교제도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존중할 것을 공식 서약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될 수 있다.

示威隊시위대나 일반 국민에 대해 무자비한 잔학행위가 자행될 경우 抵抗의 결심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全面 抵抗行動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적 목적을 위해서는 보통 하루면 충분한다. 敵들이 매우 취약한 입장에-예를들어 적군이 反亂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든지-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또 결정적일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동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全

面的 抵抗戰略을 지속하는 것은 攻擊者들의 통제유지능력이 치명적으로 약화된 때나, 방어자들의 잔인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全面的 非協助를 계속해 나갈 만큼 강한 입장에 있을 때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주로 다양한 選擇的선택적 抵抗저항 캠페인들로 구성된 장기투쟁의 최종단계에 채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全面的 비협력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全面的 抵抗의 목적은 攻擊者들의 政權을 무너뜨리고 해체하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데 있다. 아울러 침략적 모험을 계속하는 그들의 능력을 파괴하고, 사회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예외들을 제외한다면 選擇的 抵抗戰略이 사회방위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選擇的 抵抗저항

이 전략에 있어, 防衛鬪爭방위투쟁은 어떤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쟁점으로 집중된다. 이러한 쟁점들이 잔체사회와 정치체제를 攻擊者들의 통제로부터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택된다. 이러한 전략을 또한 "非暴力비폭력 陣地戰진지전" 또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저항"이라고 불리운다. 국민의 어떤 집단들은 투쟁 과정의 여러 시점에서 어떤 쟁점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전략은 공격자가 사회전체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다른 쟁점들을 표적으로 할 수도 있다.

選擇的선택적 抵抗戰略저항전략은 방위활동에 매우 중요한 어떤 목표들에다 계획적으로 저항활동을 집중시킨다. 이 전략은 방위활동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도록 하며, 그러므로 덜 소모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방위활동을 추진하는 주요책임이 저항의 쟁점과 목표가 바뀜에 따

라 국민의 어떤 부류에서 다른 계층으로 바뀌게 된다.

선택적 저항의 논점들을 선택하는 데에는 다음 6개의 주요한 질문이 고려되어야 한다.

* 攻擊者공격자들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가?
* 방어자들의 국가기구 또는 그 중요 부분들에 대한 통제력을 공격자들이 확보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
* 공격자들이 사회기관의 독립성과 저항능력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 공격자들의 體制현제, 政權정권, 또는 政策정책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만일 파괴된다면 목적을 성취하고 모험을 계속하는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논점들에) 방위능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 防衛者방위자들이 방어를 진척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강한 자질, 능력, 국민의 영역을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의 활용을 피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무엇인가?
* 어떤 특정 쟁점이 투쟁의 일반원칙과 목표를 대표하는가? 방어자들간에 정당한 저항정신을 고취하며, 침략자들의 목적들과 수단들을 가장 부당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만드는 쟁점들은 무엇인가?

선택적 저항(selective resistance)은 공격자들이 주요 목표달성을 못하도록 하는 논점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지배자들은 방어자들이 協力협력, 支援지원, 服從복종을 철회함으로써 고의로 약화하거나 단절할 수 있는 權力권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저항은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격이 쿠데타나 권력찬탈이었다면 합법정부의 방위자

들은 찬탈자들이 국가기구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방어자들은 憲法原則헌법원칙의 준수를 고집하며 찬탈자들의 권위를 부인하며, 국가기구와 사회전체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방해하면 되는 것이다. 非協助비협조는 공무원, 관료, 정부기관, 주와 지방정부, 경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조직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다. 제1장에서 본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이 카프반란(kapp Putsch)에 저항하여 널리 실행되었다. 이러한 措置조치가 잘 준비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들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야만 한다. 그 결과는 권력찬탈자의 정통성 부정이고 효과적인 지배의 공고화 방지이다.

만일 외국 지배자들이 선택한 政府를 강요하기 위하여 침략하였다면 모든 차원에서 協助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력하려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여러 정부부서, 행정기구, 경찰조직, 감옥, 군대들의 기능 수행도 방지되어야 한다. 방위자들은 어떠한 새 政權정권의 정통성도 부정해야 하며 복종과 협력도 대대적으로 거부하고 종전체제의 원칙들과 관습들에 충성을 계속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은 애국적인 저항자들의 색출·체포를 거부한다. 저널리스트와 편집인들은 1980년대 계엄령하의 폴란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검열을 거부하고, 발매금지에 대해 저항하면서 신문을 발행한다. 1968년 체코에서와 같이 秘密비밀 發信者발신자들로부터 저항 라디오 프로그램이 발송될 것이다. 성직자들은 나치체제하의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 목사와 카톨릭 신부가 한 것과 같이 공격자들에 대한 도움을 거부하는 의무에 대해 설교한다.

정치가, 공무원, 판사들은 적의 불법적 명령을 무시하거나 반항함으로써 정부의 정상적 기구와 재판부를 그들의 지배로부터 수호한다. 사법적 비협력도 하나의 防禦武器방어무기가 된다. 판사들은 내부의

저항자들과 침략자들의 관료들에게 명령권이 없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공격이 법률과 헌법에 따라 법을 운영하고, 비록 法院법원이 폐쇄되는 한이 있더라도 침략자들에게 도덕적, 법적 지지를 거부한다. 공무원과 관료들은 때로는 파업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협력적으로 집무계속(work on without collaboration)"을 할 때도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攻擊者들이 내린 명령에 무관심 또는 반항의 태도를 보이고 반대되는 합법적인 기존의 정책, 計劃계획, 그리고 의무들은 계속하여 수행해 나간다.

만일 攻擊者들이 경제적 목적 때문에 공격하였다면, 방위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행정가, 그리고 모든 관련 기관들이 協力협력과 支援지원을 거부할 때 이러한 拒否거부가 성취될 수가 있다. 이러한 거부는 천연자원의 조달, 연구, 계획, 운송, 제조, 에너지와 부품의 공급, 품질관리, 포장, 선적의 과정의 모든 적절한 단계에서 채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은 선택적인 파업과 작업지연으로 1923년 Ruhr지방에서와 같이 자국에 대한 착취를 방해했다.

만일 공격자들의 목적이 理念的이념적인 것이라면, 방어자들 사회의 신념들을 훼손하고, 공격자들의 정치적 신념들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만 한다. 이런 노력은 교육, 종교, 대중매체, 출판, 청소년활동, 그리고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과 기관들에 의한 여러가지 非協助運動비협조운동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교에서 宣傳선전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거부한다. (제3장의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라.) 학교를 통제하려는 企圖기도는,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현안의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교육을 계속하면서, 학교의 커리큘럼 변경 또는 침략자들의 선전 교육에 대한 거부운동에 봉착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학교는 자진 폐쇄하여 개개인의 집

에서 수업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치 점령하의 폴란드에서 이러한 超法的초법적인 교육체제가 운영된 적이 있었다. 교육체제와 커리큘럼의 통제에 대한 거부에 덧붙여,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思想自由사상자유의 가치와 이를 실천하고 수호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選擇的선택적 저항은 제2장에서 논의된 권력의 뿌리가 되는 사회의 독립적 기관들을 방어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 공격자들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지배를 확립하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효율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뿌리뽑아 사회전체를 全體主義的전체적의적 모델로 재편성하려는 의도를 가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기존의 모든 독립적 기관의 自律性자율성을 폐지하여, 그들을 거세되고 순종적인 형태로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예 완전히 파괴해 버리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반대로 공격자들은 전체주의적 모델에 부합되고 그 구성원들을 통제할 능력을 갖는 중앙통제적인 제도들을 새로이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파시스트에 의해 통제된 노르웨이 교사들의 조직은 抵抗이 금지된 대표적인 기구였다. 그러한 기도나 다른 직업들에 대한 비슷한 시도들을 좌절시킴으로서 노르웨이에서의 조합국가의 건설은 방지되었다. 사회 기관들을 통제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선택적 저항의 초점이다. 방위계획과 準備준비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저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데 기여해야만 한다.

또한 선택적 저항은 침략정권의 특별히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그들 군대와 공무언들의 충성심을 흔들어 놓아야 한다.

물론, 공격자들이 비록 비폭력 방법이라고 하나 이런 격렬한 방위노력을 달가와 할 리가 없다. 그들은 저항을 효과적으로 중지시키고, 無力化무력화하고, 분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제3장과 4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市民防衛者들은 모든 이러

한 탄압을 견뎌내고, 방위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정치적 柔術유술의 과정들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끈질긴 저항과 강력한 비폭력 규율로서 공격자들이 모험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추구를 스스로 자제하고 공격을 중단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군대와 政權정권을 해체하게 만들 수 있다. 공격자들이 약화되고 방어자들이 강해지면 여러 유형의 선택적 저항운동이 방위자들을 점진적으로 승리로 접근시킨다.

어떤 民間主導防衛鬪爭민간주도방위투쟁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지만 그 갈등은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오래 지속된다면 그 투쟁도 어려워질 것이다. 攻擊者들의 탄압이 매우 가혹하고, 방어자들의 위협 부담이 커져서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최악의 상태에서는 루르 투쟁(Ruhrkampf)의 최후 몇달에 발생한 사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勇氣용기를 잃고 士氣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피로에 찌들어 휴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때는 戰略전략의 전환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특히 公的行動공적행동의 책임을 어떤 집단에서 더 행동능력이 있는 다른 집단으로 옮기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저항투쟁을 보다 小數소수의 한정된 쟁점으로 집중하게끔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저항에 지친 상황에서는 폭력투쟁으로 전환하자는 要求요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고 희생자들의 숫자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집단 또는 개인들의 폭탄 장치 또는 암살의 기도와 같은 자포자기적인 수단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무장투쟁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을 기분좋게 만들지는 몰라도, 거의 彈壓탄압의 加重가중이나 政治的정치적 損失손실을 가져다 줄 뿐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폭력이 비폭력투쟁의 효율성을 훼손한다

는 점이다. 暴力폭력으로의 전환은 더 철저한 기밀유지를 요구한다. 그 때문에 저항자들의 숫자를 줄일 소규모 비밀집단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로 줄일 필요를 만들 수 있다. 非暴力비폭력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항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文化的문화적 抵抗저항"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生活方式생활방식, 言語언어, 관습, 信念신념, 社會組織사회조직, 그리고 儀式의식등 중요 요소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저항의 발판이 되어 온 대규모의 조직들과 기관들이 무력화되고, 통제되고, 또는 파괴되었을 경우에도, 비폭력 행동들이 개개인들의 단독행위로 또는 극히 소규모의 가끔 단명한 집단들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이들은 "小抵抗(micro-resistance)"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극단적인 곤경의 시기를 통하여 국민정신이 비록 자신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욕구마다 흔들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들에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問題解決방법의 硏究와 戰略의 연구가 필요하다.

때로는 상황의 변화, 예상치않았던 사건들, 새로운 저항의 주도권, 재생된 정신력과 에너지로 인하여 防衛行動이 증강되고 투쟁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투쟁이 가장 어려워졌을 바로 그 시점에서 비폭력저항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들이 드러나지 않게 발전하는 수도 있다. 공격자 자신의 진영에서의 의심, 不和불화, 반발세력의 등장이나 격화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극단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던 안 오던 간에 방어자들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戰略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選

擇的선택적 저항이라는 制限제한된 운동에 집중하는 대신에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저항을 하게 되는 기회들도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유리해지면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全面的 非協助비협조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상이한 게임종결 戰略들이 요구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防衛鬪爭을 성공적으로 결말짓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民間主導의 防衛에 대한 國際的국제적 支持지지

民間主導의 방위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雙務的쌍무적, 多辯的다변적, 地域的지역적, 世界的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나라들이 단순히 군사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고립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런 국제적 활동들의 상당수는 전쟁 억제력이나 방위의 요구와 거의 직접적인 關係관계가 없다. 어떤 활동들은 절박한 상황을 완화하며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解決해결한다. 또 근거없는 의혹과 오해들을 불식하에 상호이해와 우의를 돈독히 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장차 국제적 갈등들의 빈도나 강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들의 국제적 협조와 자원은 민간주도 방위의 준비와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집중할 수가 있다. 이러한 防衛政策방위정책의 성격상 군사적 방위문제가 보통 그러하듯이 꼭 비밀스러울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하여, 이미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나 이를 조사연구하는 나라들간에는 지식이나 技法기법을 광범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相互利益상호이익을 위해 연구 결과, 정책 분석, 준비와 훈련의 계획, 그리고 잠재적 공격자들에 대한 정보지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들은 어떤 공격에 대한 저항전략, 방

위효과를 최대화하는 수단들, 彈壓탄압에 맞서서 저항을 지속하는 방안, 공격을 받았을 때 사회의 物資難물자난을 해결하는 조처 등에 관한 情報정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준비와 훈련에 관한 기초연구나 비상계획은 초기에는 개별국가나, 사설연구기구에서, 몇몇 국가나 협동적으로 일하는 조약상대국들, 지역기구들이나 유엔기구들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 위에서 열거된 機構기구들은 條約조약관계나 어떤 위기에 대응해서 공격에 직면하여 민간주도의 방위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에게 비군사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적절한 지원 형태란 (1)공격당한 국가를 위해서 인쇄나 방송시설들을 제공해 준다. (2)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한다. (3)방위투쟁이나 침략자들의 행동에 대한 뉴스를 외부세계로 송출한다. (4)공격자들에 대한 국제적 경제, 외교 制裁제재를 동원한다. 그리고 (5)공격자들의 군대, 정부요원, 국민 등에게 공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가령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 사용되고 있는 억압과 저항의 형태, 공격자들의 일상적 지지자들간의 의견대립에 관한 뉴스, 공격을 종식시키고 국제적 우의와 협력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탄원서에 관한 보고 등이 이속에 포함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모든 國際的국제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방위의 부담은 역시 공격받은 사회의 주민들이 주로 질 수밖에 없다. 민간주도방위에서는 自助性자조성, 착실한 준비, 진정한 力量역량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成功성공과 失敗실패

攻擊者들이 잘 준비되고 정교한 민간주도방위에 봉착할 때 당면하

는 어려움들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저항력을 동원하여 직접·간갑적으로 공격자들의 힘을 무너뜨리는 방어자들의 능력이 권력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진정한 내면의 힘, 전략과 전술의 지혜, 탄압에 저항하는 지구력과 규율의 상대의 취약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市民防衛者시민방위자들은 적들을 좌절시키고 마침내는 패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成功"과 "失敗"라는 용어자체도 정확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민간주도 방위를 適用적용할 때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정책을 군사적 방위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주도방위에서 "성공"이란 방위자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아닌가, 즉 공격을 해체시키며 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자신들의 원칙과 제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못했는가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반면에 민간주도방위에 있어 "실패"란 공격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투쟁과 마찬가지로 민간주도방위를 적용하려는 모든 시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투쟁은, 제3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효율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군사적 패비는 방대한 물리적 파괴, 살상, 사기저하,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認識인식에서 오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조건은 민간주도방위에서도 실패를 가져올 수 있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대신 어느 한쪽이 일시적으로 힘을 얻거나 잃게 되어 일부 시급한 목표만 달성할 때도 있을 것이다. 시민방어자들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많은 희생자를 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리라는 권유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방위의지를 유지하는 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기관을 강화하여 비폭력 투쟁을 수행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방어자들은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협박과 탄압에 견뎌내면서 새로운 전략을 적용시켜야 그들의 노선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명백히 패배했더라도 영원한 敗北패배는 아니다. 비록 방어자들이 주어진 시간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終局종국에는 이를 성취할 수도 있다. 저항정신과 사회의 독립적 기관들의 탄력성이 유지되는 정도에 따라 주민들은 다시 어느 때라도 방위투쟁을 재개할 수가 있다. 그러는 동안에 휴식, 사회의 힘과 공격으로 부터 만회될 수 있는 능력의 회복, 새로운 전략이 개발, 초기에는 제한되어 있으나 성취 가능한 새로운 목표들의 선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에 성공함으로써 보다 야심적인 目標를 내세우는 전략들을 채택할 수가 있다. 환언하면, 住民과 社會가 생존해 있는 한 민간주도방위에서 결정적인 패배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비계획적 비폭력 투쟁의 경우가 이러한 예였다. 1968-1969년 바르샤바조약군의 침략에 따라 Dubcek지도부가 붕괴되고 Husak정권하의 가혹한 시기가 이어졌다. 〈77憲章〉(charter 77)회원과 같이 자유의 옹호자들은 모욕과 투옥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1989년 후반 민중의 비폭력 운동이 부활되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共産主義공산주의 지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權利를 되찾았다.

비폭력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방어자들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좌절로 고통받는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그들이 이룩했던 업적과 역량을 충분하게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비폭력투쟁들에서 종종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들은 잘 싸우고 중요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目標목표들을 성취하지 못하

였다는 이유로 자신은 패배하였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士氣를 상실하여 저항이 시들어 버리거나 붕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실은 그들이 항복함으로써 스스로를 패배시켜 버린 격이다. 민간주도방위에서는 이런 일을 피해야 한다.

"지속적인 투쟁의 한 가운데서" 시민 방위자들은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어느정도 성공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 어느 정도로 시민방위자들의 저항의지를 유지, 약화, 또는 강화시켜 왔는가?
* 어느 정도로 공격자들 중에서 사람들과 집단들이 공격을 계속하여 초기의 목적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유지, 약화 또는 강화하여 왔는가?
* 방어하는 사회의 자율적 기관들(권력의 출처)이 공격자들과 싸우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힘의 뿌리를 부정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 상실, 증대시켰는가?
* 어느 정도로 방어자들이나 공격자들이 제각기 뛰어난 또는 어리석은 전략적 판단을 보여 주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판단들이 질적으로 저하되었는가 향상되었는가?
* 어느 정도 시민방위자들이 비협력과 저항을 확산시키는 능력, 규율있는 행동능력, 비폭력투쟁의 효율성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 등을 증대시켰는가?
* 공격자들의 국민, 억압기관이나 행정가들이 어느정도 높은 사기, 공격에 대한 지지, 적극적인 지원을 경험하였는가 아니면 낮은 사기, 분열, 공격에 대한 불신과 반대를 받아 왔는가?
* 공격자들이나 방어자들의 국제적 우방과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정치적 파트너들이 어느 정도 그들과 원래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를 보내거나,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협력을 철회했는가?

* 방위자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성과 능력을 유지해 왔는가?
* 防禦者들은 조작과 탄압의 수단들이 방어를 중단시키며 공격자들의 목적들을 성취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었는가? 또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방어자들의 저항을 증대시키며 공격자 진영내부의 반대를 일으키고 국제적 행동을 유발시켰는가?
* 탄압이나 야만적 행위에 봉착하여 방어자들이 어느 정도 그들의 저항을 지속시키거나 증대시켰가?
* 攻擊者들이 본래의 목적(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또는 기타)을 달성하였는가?
* 갈등관계에서 어느 진영이 주도권을 행사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방어자들이 어느정도 소득도 있었지만 손실도 있었다고 대답할 때에는, 자신의 成功機會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행동을 고쳐야 할 시기이다. 그러면 그들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들 개개인의 力量을 증대한다. 그들의 사회적 力量을 유지하고 확대한다. 攻擊者들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파악하고 채택한다. 戰略的전략적 判斷판단을 향상시킨다. 공격자들의 취약점에 저항활동을 집중시킨다. 신중하고 용기있고 확고하게 행동한다.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투쟁의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공격자가 물리적 힘으로 파괴되었는가, 더 탁월한 군사력에 굴복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 어떤 민간방위투쟁이 성공적이었는가 실패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決定판정되어야 한다.

방어자들이 침략 정권의 정통성을 계속 부인하였으며 자신들 나라의 行動原理와 자기나라 체제 및 정책을 선택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수하였는가?

방어자들이 점령되거나 또는 강탈된 정권하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自律性자율성을 유지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여 왔는가?

공격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또는 거부당했는가, 그 정도는 어떠했는가.

攻擊者들이 중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었는가, 잃었는가?

攻擊을 하는 자들의 공격의지가 유지되었는가, 또는 바뀌었는가?

防禦者들이 어떤 형태의 대체 정부의 수립이나 강화를 저지하였는가?

攻擊者들의 군대는 철수했는가, 또는 해체되었는가?

攻擊者들이 장래에도 유사한 모험을 하려고 들 것인가?

侵略者들의 정권이 살아남았는가, 아니면 교체되었는가?

모든 民間主導 防衛鬪爭들이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명백하게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제3장에서 본바와 같이 때로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었다.

민간주도방위가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공격당한 사회가 적군부대의 지원을 받는 자칭 통치자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自己方向性자기방향성(self-direction)과 自律性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제2장과 3장에서 논의된 권력의 뿌리인 민중과 사회집단이나 기관들의 力量과 決意여하에 달려있다.

攻擊者들의 목표달성을 저지하는 역량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그중의 몇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새 政權의 정통성을 얻

으려는 공격가의 기도가 저지되고, 국민들이 침략이전의 합법적 체제에 계속 충성하여, 기존의 관료기구나 집행기관을 계속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새 정부를 강요하려는 노력이 실패한다. 정부기관은 계속해서 정통성있는 정책이나 법률을 적용하여 공격자들이 만든 政策이나 法律의 집행을 거부한다. 사회 전체가 공격자들의 만들어낸 관료기구나 기관들을 고립시키거나 무시해버린다. 공격자들의 검열과 발간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사실상의 自由出版이 계속된다. 숨겨진 무전기나 또는 동정하는 인접국지역으로부터 저항을 지지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계속된다. 宗教組織종교적조직을 통제하려는 企圖기도가 종교단체나 신도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친다. 어떤 정치적 반대도 금지하려는 기도가 활발한 政治集團정치집단들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것은 정치집단과 국민들간의 정치적 관심과 활동을 증가케 한다. 자주적인 직업단체나 노동조합들을 교체해 보려는 시도도 오히려 그들의 저항력을 강화시킬 뿐이며, 보다 강력한 抵抗단체로 만들어 버린다. 園藝協會원예협회에서 스포츠 클럽에 이르는 여러의 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기존원칙에 충성하는 정치적 의사소통이나 활동의 중심이 된다. 새 통치자에게 봉사하고자 경제를 억압하려는 노력은 생산품의 질이나 양을 낮추는 파업, 보이콧, 고의적인 비효율 행위, 怠業태업등 역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동시에 경제도 공격자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다가 이득보다 그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도 몇배로 더 불려서 예시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민간인 방어자들은 공격자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대한 統制機構통제기구의 설치함을 저지하고, 효과적인 협조행위자나 또는 대체정부의 설립을 방지하며, 공격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또는 기타 목표 달성을 좌절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 왔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攻擊者공격자들 자신의 군대나 행정요원들이 점점 더 그들의 모험과 자신들의 개인적 역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 과거 한때 공격자를 방조하기도 했던 협력자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어 신뢰할 수 없게 되며,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저항에 동참하게 된다. 그들의 저항자들이 추진하는 "공모자 빼내기"활동의 표적이 된다. 攻擊者 나라의 국민들조차도 서서히 그런 모험에 대해 의심을 품고 반대하기 시작한다.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더더욱 공격자를 비난하게 되고, 마침내, 말로만 하는 비난에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制裁제재들을 포함한 국제적 활동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진전들이 결합해서 일어날 때, 攻擊은 해체되고 공격받은 사회의 독립성과 선택된 생활양식이 회복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 장은 주로 Gene Sharp의 "Civilian-based Defense: A New Deterrence and Defense Policy"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이 논문은 원래 UNESCO의 부탁을 받아 작성하였고 그후 요시카즈 사카모토(Yoshikazu Sakamoto)編, *Strategic Doctrines and Their Alternatives* (New York: Gordon and Breach, 1987), pp. 227-262에 수록되었다. 서구적 맥락에서의 이러한 전략적 원칙들에 대한 관련논의는 Gene Sharp, *Making Europe Unconquerable* (London: Taylor & Francis, 1985 and Cambridge, Mass: Ballinger, 1985, Second American edition, with a foreword by George Kennan, Cambridge, Mass: Ballinger, 1986)에 게재되어 있다.

"전진방어"에 관한 논의는 Sharp, *Making Europe Unconquerable* (Second American edition), pp. 60-61을 참고하라.

비폭력운동에 있어 사보타지를 채택하는 문제들에 관한 보다 진전된 논의는 Gene Sharp,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Porter Sargent, 1973), pp. 608-611를 참고하라.

저항운동에서의 라디오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H. Gordon Skilling, *Czechoslovakia's Interrupted Revolu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777-778. 참고하라. 그리고 Joseph Wechsberg, The Voices (Garden City, N.Y.: Doubleday, 1969)를 참고하라.

체코슬로바키아의 항의파업에 관해서는 Skilling, *Czechoslovakia's Interrupted Revolution*, p. 775를 보라.

점령된 소련에 있어 주민에 1대한 나찌정책들의 변화에 관한 인용문은 Alexander Dallin, *German Rule in Russia, 1941-1945: A Study of Occupation Policies* (New York: St.Marlin's Press, 1957 and London: Macmillan, 1957), pp. 218-491, 그리고 550에서 인용하였다. 동유럽에 대한 나찌의 태도들과 의도들도 언급되어 있다.

유태인 대학살에 관한 초보적인 에세이는 Gene Sharp, "The Lesson of Eichmann, A Review-Essay on Hannah Arendt's *Eichman in Jerusalem*", in Social Power and Political Freedom (Boston: Porter Sargent, 1980)을 보라. 민족말살에 관한 적절한 연구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 Gerald Reitlinger, *The Final Solution: The Attempt to Exterminate the Jews of Europe 1939-1945* (New York: A. S Barnes, 1961); Raul Hilberg, *The Destruction of the European Jews* (Chicago: Quadrangle Books, and London: W. H. Allen, 1961 and revised edition, New York: Holmes and Meier, 1985); Nora Levin, *The Holocaust: The Destruction of European Jewry 1933-1945* (New York: Schocken Books, 1973); Helen Fein, *Accounting for Genocide* (New York: Free Press, and London: Macmillan, 1979) "비폭력 전격전"이란 용어는 Theodor Ebert에 의해 소개되었다. "총체적 저항"과 "조직된 저항"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Lars Porsholt에 의해 자극되었다. Lars Porsholt, "On the Conduct of Civilian Defence", in T. K. Mahadevan, Adam Roberts and Gene Sharp editors, *Civilian Defence : An In troduction* (New Delhi: Gandhi Peace Foundation and Bombay: Bharatiya Vidya Bhavan, 1967). pp. 145-149.

"소규모 저항"이라는 용어는 Arne Næss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Arne Næss, "Non-Military Defence and Foreign Policy", in Adam Roberts, Jerome Frank, Arne Næss, and Gene Sharp, *Civilian Defence* (London: Peace News, 1964), p. 42.

(譯者 : 金煉喆, 한남대 교수)

第 5 章

武裝方法무장방법의 轉換전환을 위하여 (Toward Transarmament)

즉흥적인 非暴力 闘爭과 民間主導防衛

민간주도방위는 防衛危機방위위기를 맞기 이전부터 연구 고찰하고 채택해야 할 하나의 정책으로써 개발되어 왔다. 이 정책이 실천되려면 주민들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방위상의 위기는 이 정책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기 쉽다. 侵略침략에 대하여 降伏항복과 굴복할 의사는 없지만,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자멸적일 때, 침략이나 쿠데타에 대항하여 즉흥적으로 해온 비폭력투쟁이 십중팔구 지속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설사 사전준비가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투쟁은 제1장에서 서술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추진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非暴力的비폭력적 행동과 민간주도방위의 효용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이 급속히 확산되어 왔으며, 둘째, 점차 많은 나라들이 여러가지 목적을 위하여 비폭력 투쟁의 방법을 직접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를 위한 즉흥적인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만으로는 民間主導防衛가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즉흥적인 非暴力的 저항은 준

비와 계획이란 利點이점을 갖지 못하므로 잘 준비된 民間主導防衛政策과 비교한다면 현저하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준비가 없이는 애당초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억제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즉흥적인 투쟁은 계획과 준비기간 동안에 획득할 수 있는 기술, 훈련, 전략적 재능, 자원들을 하나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군사적 노력에서도 그렇지만 계획과 준비는 방위를 위한 비폭력적 투쟁을 실제로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 준비작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戰爭抑制전쟁억제와 說得效果설득효과의 개발, (2) 전략적 평가와 계획, (3) 혼란, 두려움,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마음의 준비, (4) 침략을 받을 경우 사회기관, 공무원, 경찰, 주둔군대, 정부기관들에게 비협조와 반항적 태도를 취하게끔 하는 것, (5) 非常計劃비상계획의 작성, (6) 장비, 식량, 물,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및 다른 자원수단의 비축, (7) 民間主導防衛戰略 전문가조직의 설립 등이 마련된다.

계획과 준비와 더불어 일반적 出版物출판물(카세트와 비디오같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도)과 운송, 대중매체, 학교, 종교집단, 노동, 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특정 팸플릿 및 小册子소책자들의 보급이 민간주도방위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확대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이것은 만일 초기에 드러난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죽는다 할지라도, 계획과 훈련이 비폭력적 투쟁과 정해진 전략계획의 지침안에서 그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전준비의 이점은 防衛危機방위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이 민간주도방위를 軍事군사위주 政策정책의 보조수단으로써 혹은 기본적 戰爭抑制전쟁억제와 防衛戰略방위전략으로서 채택하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民間主導防衛를 도입하는 動機동기

대부분의 경우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를 도입하려는 동기들은 전쟁에서 싸워보았고 현재도 방위를 위한 武力戰爭무력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改善개선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도덕적, 애국적 또는 종교적 의무라고 믿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다. 한편 사람들은 정치, 사회정책, 심지어 基本原則기본원칙들에 관해 서로 논쟁함을 즐기면서도 어떤 외국 정부 혹은 내부의 독재자 집단이 자신들을 통치함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단결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민간주도방위에 가담하게 되는 強강한 동기들이다. 武力戰爭무력전쟁에서처럼 이같은 사회적, 정치적 動機동기들이 종종 인격전, 개인적 동기들과 결합한다. 이 동기 중에는 보람있는 삶을 살려고 하며 중요 人物이 되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려 하며, 자신의 용감성, 주도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까지도 감수하려는 열망이 있다. 또한 개인적, 종교적 또는 윤리적 이유 때문에 폭력적 방법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반대해 온 일부 소수파그룹도 민간주도의 방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주도방위에서 모든 연령집단과 남·여 모두가 비폭력적 투쟁의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의 참여동기와 의도는 방위의 본질이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허용함으로써 충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같은 방위정책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침략과 국내정권탈취에 저항하는 민간주도방위의 능력과 힘에 대한 認識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 활기있고 단호하고 끈기있게 방위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고무하는데 기여한다.

근본적인 변화가 민간주도방위를 위한 전제조건인가

여러 지식인들은 때때로 인상적으로 들리는 이유들 때문에 대중의 비폭력투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같은 이유들 중에는 유전학, 양육습관, 문화, 사회체제의 왜곡 효과, 교육체제 유형, 가족패턴과 남녀의 역할, 용납되는 종교 교리, 혹은 통제받는 정치체제 등이 들어 있다.

대중의 비폭력 투쟁의 불가능성에 대한 그같은 모든 이유와 더불어 민간주도방위정책의 불가능성에 관한 이유들은 다음의 토론을 위해 무시될 수 있다. 즉, 대중의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중의 몇가지는 인간사회와 개인적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계획들의 장점은 분리해서 고려되어야 하며, 非暴力的 鬪爭이나 民間主導防衛政策민간주도방위정책의 필요조건들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몇몇 지식인들은 여전히 民間主導防衛政策이 실제적인 방안이 되려면 인간이나 세상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보다는 훨씬 적어졌지만 이따금씩 민간주도방위를 주의깊게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좋아, 그런 것도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에 가서야 그런 방위방법을 지지할테야."

이런 우호적인 논평가들은 민간주도방위가 실현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들 중의 하나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즉 (1) "인간성"이 변화하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협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2) 국제환경이 변화되어 군대제도가 사라져야 한다. (3) 전쟁의 "원인"이 제거되면서 사회체제가 더욱 위대한 社會正義사회정의와 平等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變化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성취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 것은 사실이나 그 세 가지 중의 어느것도 민간주도방위를 도입하는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비폭력적 투쟁이 천 년 동안은 아니더라도 '현실세계'에서 수세기동안 존재해 왔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技法기법이 敵적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이미 즉흥적으로 실천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민간주도방위가 현실적인 것이 되려면 인간이나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앞서 제시된 주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인간성"의 변화

사회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은-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인간성(human nature)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이 매력적인 또는 지루한 토론은 모두 적절치 못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 투쟁을 하는데 있어 인간성의 변화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과는 달리 사실은 비폭력투쟁은 인류역사에 걸쳐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不完全불완전하긴 하지만 적어도 인간들에 의해 실천되어 온 것이다. 폭력없이 저항하는 능력은 반드시 利他主義이타주의, 寬容관용, 사랑에 대한 신뢰, 다른 뺨도 돌려대기, 혹은 惡악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희

생의 욕구 등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신,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은 길들여진 많은 동물들(노새뿐 아니라 애완용 개와 고양이를 포함해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완강하며, 금지된 것을 기여코 하려고 들며 또 명령받으면 거부하려는 人間性인간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이런 완강함은 요즘 어린이들에게도 쉽게 관찰될 수 있다(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함을 상기해야겠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협력도 할 수 있고, 利他主義的이타주의적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완강함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때로는 우리 人性인성의 귀중한 요소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것이 비폭력적 저항의 가장 근본적인 心理學的심리학적 基礎기초이다. 非暴力的 鬪爭은 단순히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완강함의 집단적 표현일 뿐이다.

國際體制국제체제의 변화

軍事的 防衛로부터 民間主導防衛로의 전환은 국제체제의 사전변화라든가 군사적 위협의 消滅소멸, 또는 민간주도정책의 보편적 채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의 安保안보에 대한 外部외부 위협은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천연자원,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이데올로기, 地理지리, 사회・경제적 발전모델 등을 둘러싼 대립은 국제무대에서 좀처럼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이 民間主導防衛政策을 고려하고 개발해야 할 이유중의 하나이다. 갈등으로 가득찬 세계에서 모든 사회는 지속적인 準군사적 갈등이나 대량학살 같은 것으로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는 수단들을 통해서 공격을 저지하고 격퇴시킬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민간주도방위는 그와 같은 現實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원래 민간주

도방위는 사회의 실제적인 억제력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따라서 잠재적 적들이 그 방위정책을 채택할 때까지 그 防衛政策방위정책의 채택을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마치 어느 나라의 정부도 敵國적국이 새롭고 보다 강력한 군사무기를 먼저 구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과도 같다. 군사적인 '武器體制무기체제'로부터 민간주도방위라는 武器手段무기수단으로 바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비폭력적 무기들이 적어도 군사적 무기들 만큼 강력하다고 인식될 때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체제의 변화

民間主導防衛의 비판자 뿐만 아니라 옹호자들까지도 이 정책의 채택과 효과적인 수행은 먼저 民主主義민주주의와 平等평등, 그리고 권력의 분산화를 향해가는 사회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주로 어떤 윤리적 원칙이나 사회주의자, 무정 부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오직 '正義社會정의사회'나 '非暴力的 社會'라야 非暴力的 手段수단으로 防禦방어될 수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비판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역사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제1장에서의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 즉흥적인 非暴力鬪爭은 사실상 '불완전한'사회를 내부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공해 왔다. 이런 불완전한 사회들은 때때로 社會的 不義, 계급지배, 人種的인종적 또는 언어적 異質性이질성, 심지어 극단적인 內部내부 갈등에 시달려 왔다. 이것은 1920년대의 독일의 예에서 잘 나타나 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결코 사회적으로 잘 조화된 사회가 아니었다. 그러나 1920년의 Kapp Putsch와 1923년의 벨기

에와 프랑스의 침공과 점령에 저항하여 즉흥적인 비협조 활동이나 비폭력적 거부행위를 公公然공공연하게 감행한 바 있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아래서 때로는 외국의 침략자들, 군부도당들, 그리고 국가내 독재자들에 대항하여 세계 도처에서 비폭력적 투쟁이 되풀이 발생해 온 것은 이러한 유형의 방어수단이 미래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다.

비록 社會的 調和, 보다 큰 社會正義, 活氣활기있는 민주주의가 민간주도방위정책의 활용가 성공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民間主導防衛의 채택과 실천을 위하여 理想的이상적인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떤 急進主義者급진주의자들은 민간주도방위가 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회질서를 어떻게든지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런 급진주의자들은 기존사회의 不義불의와 여러 유형의 억압, 어떤 理想의 毁損훼손 등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그들의 전부터 비난해 온 政府정부와 體制체제를 방어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역정을 낼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기존체제를 보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거나 대치해서, 보다 큰 정치적 자유, 보다 활기찬 민주주의 또는 보다 정의로운 社會的, 經濟的 체제를 이룩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이런 급진적 비판가들까지도 民間主導防衛政策을 지지해야 할 훌륭한 이유들이 있다.

사회가 국내외로부터 독재권력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공격받을 때, 그 공격을 받는 불완전 사회의 방어를 위해 단결함은 심지어 가장 급진적인 사회변화의 주장들에게도 부여되는 책임이며 기회이다.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前提條件전제조건은 사회가 더욱 惡化됨을 방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民間主導防衛가 성공한 다음 변화의 주장자들도 그들의 제안에 대

한 지지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대중들은 그 자신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내의 사회적 변화를 비폭력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입장에 서게 된다. 급진주의자들도 정치적 집단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狀況상황을 오로지 자신들의 黨派的당파적 利益이익을 챙기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공격자에 저항하는 시민적 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信賴性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흥적인 비폭력적 투쟁을 통해서 매우 불완전한 사회들이 방어되어 오긴 했지만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과 민간주도방위의 효율성과는 무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방어해야 할 사회의 특성과 그렇게 해야 할 민간주도방위의 능력 사이에는 相關關係상관관계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그 사회를 방어하고자 하는 대중적 의지의 강도와 潛在的잠재적 협력자들의 수는 기존 사회질서에 사람들이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 사회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권력이 분산될수록 그 사회의 탄력성과 방어능력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주도방위를 위한 장기적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質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어떤 군사전문가들은, 이를테면 옥스포드대학의 故 Norman Gibbs교수와 런던戰略硏究所전략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n London)를 창설한 故 Hon. Alastair Buchan는 민간주도방위를 위한 준비로써 사회가 정상적 평화시에 권력 분산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見解견해들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조치들의 독자적인 장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정치적 결과들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회에서 不義불의를 제거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조치들이 취해

지지 않을 때에도 효과적인 비폭력 투쟁은 여전히 가능하다. 만약 공격받은 주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해서 국내 문제가 훗날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공격자들을 먼저 격퇴해야 한다는 확신이 퍼져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방위투쟁은 주민들이 防衛危機방위위기후에 사회의 민주화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自信感자신감과 自立心자립심을 갖는데 이바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정치체제가 非暴力鬪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방어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명백한 부정적 사례는 극단적인 독재의 경우이다. 독재체제는 그 殘忍性잔인성으로 주민들 사이에 격렬한 증오를 받아왔으며 민간주도방위를 동원하고 수행하는 권력의 출처로서 기여할 수도 있는 사회의 독립적인 기관들을 심하게 제한하거나 제거하여 왔다. 그러한 獨裁體制독재체제속에서는 주민들에게서 민간주도방위투쟁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능력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억압적인 체제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외국의 침략자들에 대항해서는 즉흥적인 非暴力鬪爭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만약 그 주민들이 침략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혐오감을 갖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自決權자결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동원할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가 침략받으면 그 정부와는 별개로 國家국가를 위해 열성적이고 효과적인 즉흥적 비폭력 방어를 수행할 수 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과거의 정치체제를 방위하는 동시에 재구성된 새로운 독립적 기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대중 동원은 정치생활에의 참여를 증가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자율적 제도를 건설하며 과거 체제를 개선 교체하는 행위로 유도될 수가 있다.

그와는 달리 고르바초프의 소련과(프랑코의 후계자들 치하의 스페

인의 발전이 보여주듯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사회의 관리들은 의도적으로 분권화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한 개혁정부가 진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하고자 한다면 民間主導防衛政策의 요소들의 도입을 숙고해 볼 일이다. 그 정부는 불만대중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대중적 불만을 해결하고 제도를 분권화하고, 정책결정에 대중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며 시민의 투쟁으로 그 사회와 성장하는 자유를 방어하려는 대중적인 열망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집권당, 정치경찰, 군대사이의 강경분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쿠테타를 봉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합리적 요구들을 수용한 정치체제 안에서 추진되는 民間主導防衛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民間主導防禦政策에 대한 초파당적 접근

모든 민간주도방위정책의 내용들이 이데올로기적 부담없이 그 잠재적 유용성에 기초하여 주장된다면 그런 정책은 어느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색채를 초월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 정책의 長點장점만을 공정하게 고려한다면 민간주도방위정책의 제시와 평가를 초파당적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주도방위정책은 어느 특정한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집단이나 주장들과 밀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개발국가들이나 정치집단 등은 그 정책이 그들 자신의 理想이상이나 이데올로기와 충분히 양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구되고 있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防衛政策방위정책이 배타적으로 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民間主導防衛는 대단히 다양한 政治的 見解견

해와 軍事的군사적 手段수단 그리고 과거의 전쟁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납득이 되고 또 그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어떤 평화주의자 집단이나 급진주의적 정치조직도 그 자신을 民間主導防衛의 主導者주도자로서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새로운 정책은 미래 정책을 수행해 나갈 책임을 떠맡고 있는 독립적인 사회집단이나 기관 또는 보수주의자들이나 현존하는 국방당국자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주창되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모든 부문들도 民間主導防衛를 연구하고 평가하는데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 정책을 채택하는데 많은 사회부문들이 가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민간주도방위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집단세력 혼자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사회전체 주민들과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合意합의와 連帶연대는 순전히 파당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한 사회의 현존하는 防衛政策방위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새 민간주도방위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해 그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들과 合流합류해야만 한다.

초당파적 접근이라고 해서 사회내부의 중요한 정치적 相異性상이성을 무시하거나 제거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민간주도방위의 채택과 개발을 위해서 뭉치게 하는 것이 초파당적 접근의 목적이다. 이를테면 당면하는 政策提案정책제안은 오로지 소수의 민간주도 요소들만을 그 사회의 기존군사위주의 방위준비들과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민간주도방위를 전면적으로 채택하자는 집단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에 제한된 구성요소들을 지지할 것이다. 즉 앞으로 더 알게 되겠지만 이 민간주도방위

에 대한 대중의 確信확신이 차츰 더 커져서 언젠가는 이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기존 軍事政策군사정책의 지지자들은 작은 규모의 민간주도방위요소를 병합할 것을 지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 군사적 태세에 추가적인 전쟁억제와 방위계층을 추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 같은 소규모 민간주도요소를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며 또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처음의 소규모, 민간주도방어요소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완전 채택의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에 관한 미래의 결정은 부분적으로 현존하는 민간주도방위요소에서 나타난 장점과 그 능력에 대한 그 후의 조사와 정책연구 등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주도방위요소의 확장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것은 한 때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점차 명백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政策을 거부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또는 전면적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관한 궁극적인 결정은 민간주도방위가 국내적인 쿠데타와 외국의 침략에 대항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방어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책은 어떠한 나라도 활성화되고 발전된 民間主導防衛政策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또 그것을 가질 때까지 軍事的 代案대안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위에 집필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새로운 방위방식의 채택은 사회의 현존 방위 당국의 참여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비폭력 저항의 요소들을 방위정책 속에 도입하고 있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로부터 수집된 잠정적인 증거들은 민간주도방위의 구상과 발

전에도 국방부의 참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유익함을 시사하고 있다. 노르웨이, 핀란드 그 밖의 여러나라들에서도 군사기관과 요원들이 이 정책의 검토에 참여해 왔다.

민간주도방위의 구상과 채택을 군부가 관여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군대가 없을 수 있으며, 어떤 나라는 국제협약에 의해 영구히 非武裝化비무장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地政學的지정학적 상황이나 군사적 현실들이 효율적인 군사 능력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다른 例外예외는 군대가 주로 주민들에게 獨裁독재하는 기관으로 행동하는 경우이다. 어떤 革命的혁명적 상황에서는 그러한 軍部組織군부조직이 밀려나서 해체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다른 상황에서는 '超派黨的'초파당적 接近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접근은 전통적인 파당적 障壁장벽이나 정치적 유대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사회의 여러 정당, 전통적인 군사방위기관들, 비정부조직들, 간단히 말해, 그 사회의 國家機關국가기관이나 非國家機關비국가기관, 全體住民전체주민 모두를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武裝方法무장방법의 轉換過程전환과정

軍部主導防衛군부주도방위로부터 민간주도방위로의 변화 과정은 '무장방법전환'(transarmament)이라고 불려진다. 만약 그 용어가 防衛能力방위능력의 축소나 포기로 이해된다면 그 말은 武裝解除무장해제와 다른 것이다. 그대신 무장방법전환은 軍隊군대와 武器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장에서 약술된 바와 같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무기를 사용하며 전체주민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그 무장 유형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 토론은 정부가 民間主導防衛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나라에서는 무장방법전환이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패턴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 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정부계획은 건전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 특히 정부의 민주적 능력이 부족할 때 사회 집단과 기관들은 정부의 評價평가와 政策決定정책결정에 앞서 가거나 또는 병행해서 민간주도방위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도 있다. 職能集團직능집단과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여 비국가기관이 추천하는 정책은 정부가 채택한 정책을 위한 기초가 되며 포괄적 계획 속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主導權주도권은 비국가기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기가 쉬우며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킬 전체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장방법의 전환과정, 계기, 정도, 시기선정 등은 상황에 따라 분명히 매우 다를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現政策현정책의 상황과 능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民間主導防衛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또한 潛在的잠재적 攻擊者공격자에 대항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평가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

대부분의 경우,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는 軍事的군사적 防衛방위에 대한 완전한 代替物대체물로서 신속하게 채택될 수 없었다. 국가전체의 방위체제를 바꾼다는 것이 복잡할 뿐더러 별로 검증되지도 않은 민간주도방위정책의 특성 때문에, 군사적 방위를 빨리 폐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軍事體制군사체제를 갑자기 폐기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잘못된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런 주장들은 그러

한 변화가 국민 대중이 平和主義평화주의로 전환해야만 성취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런 변화가 다른 목적을 위해 생겨난 비폭력적 저항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것이라는 주장, 또는 社會革命사회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군대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소견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에서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으로 바꾸려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종교적 비폭력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역사적 증거는 없다. 인도, 이란 및 그 밖의 나라들의 경험을 보아도 민간주도방위로의 전환이 외국의 지배 또는 국내적 독재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폭력 저항을 감행한 결과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민간주도방위정책은 또한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니카라과로 부터의 事例로 보여준 바와 같이, 계급억압이나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할 목적을 가진 革命혁명의 産物산물로서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다.

민간주도방위로의 빠른 전환은 잘 계획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고 파멸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충분한 준비가 없는 가운데 民間主導防衛政策을 시험하게 되면 아마도 즉흥적인 비폭력 저항보다 조금 더 효과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잘 준비되지 못한 방위노력은 약점만 드러내고 실패하기가 쉽다. 민간주도방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잘 준비되지 못한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저항은 민간주도방위정책의 전부를 불신하게 만들 뿐이다.

민간주도방위는 군사 정책에서 革新혁신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 같다. 새로운 개념이나 무기체제는 과거의 방위개념, 계획, 무기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정책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의 전반적인 군사위주의 방위태세에다 서서히 민간주도방위요소들을 결합시키며 검증

하는 점진적, 축적적 접근(incremental approach)을 하게 된다. 이 요소들은 특별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政策代案정책대안들이며 또한 달리 다루어질 수 없는 업무를 위한 補充的보충적인 防衛能力방위능력을 제공하므로 필요해진 것이다.

무장방법전환에 대한 이같은 축적적인 접근 속에서는 준비와 훈련이 비교적 적은 범위로 시작되며 기존 군사정책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므로 민간주도구성요소는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군사적 능력은 처음에는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간주도방위정책이 代替物대체물로서 제대로 활성화 될 때까지는 사람들은 군사적인 대응준비를 감축하기를 꺼릴 것이다. 둘째, 변화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軍事政策군사정책으로부터 民間政策민간정책으로의 轉換전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정책이 발전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주민들의 훈련, 그리고 다른 조정들이(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전환을 포함하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장방법전환을 강조하는 주요목적은 새로운 민간주도정책의 발전을 통하여 방위능력을 효과적으로 증대하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군사적 무기를 감축하거나 포기하려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새로운 비폭력적인 억제력이나 방위체제에 대한 信賴感신뢰감이 생겨난 뒤에야 생각할 수 있다. 발전하는 새로운 정책의 戰爭抑制力전쟁억제력이나 防衛能力방위능력에 대한 신뢰가 보편화 되어야만 현존하는 군사적 무기는 차츰 덜 필요해질 것이다. 이것은 특히 무장방법전환 과정의 최종단계에 가서야 나타나는 경우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마치 활이나 화살같은 舊式武器구식무기들이 줄어들다 사라진 것처럼 현재의 군사장비들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폐기될 것이다.

危急위급한 공격에 직면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서는 防衛政策방위정책

을 바꾸느냐 마느냐는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이 5장은 민간주도방위를 고려하며 그 능력, 역동성, 요건 및 전략적 원칙들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가정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民間主導防衛를 점전적, 축적적으로 채택하는 단계들은 그 내용과 지속기간이 다양할 것이다. 모든 국가와 개별적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단계나 시간 일정에 관한 青寫眞청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나라 마다 사려깊고 독특한 계획이 그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생각해 보고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 조사연구
* 공공교육
* 政策정책 및 實行可能性실행가능성 연구
* 公組織과 私組織, 공공기관, 국방부서, 입법부 등에서 평가할 것
* 민간주도구성요소의 조심스러운 도입(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 국민의 준비와 훈련이 요구됨
* 民間主導防衛를 사용하는데 다른 목적의 추가를 고려함
* 군사적 구성요소와 민간주도구성요소를 다같이 유지하거나 아니면 민간주도방위쪽으로 보다 많이 또는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활성화될 수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함
* 이런 결정들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함
* 민간주도방위능력의 강화
* 방위정책을 통일하는 문제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민간주도방위와 軍部主導防衛군부주도방위의 장점과 단점, 능력과 무능력에 대한

비교분석에 主要關心주요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은 그 사회가 처음 민간주도방위를 준비하기로 결정한 초기 단계에서나 혹은, 그러한 새로운 전략이 본래의 목적에 적절한가 아닌가 결정할 후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별 국가의 안보요구에 대한 민간주도방위의 적실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다.

* 그 나라의 외부 狀況과 安保威脅안보위협의 성격과 환경
* 그 나라의 내부 상황과 정권탈취위험의 성격과 환경
* 抑制力억제력 防衛力방위력에 대한 그 나라의 認知된 정책방안, 民間主導防衛가 안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인식

정책고려사항과 무장방법전환의 모델들

모든 나라의 개별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정책 모형이나 부분적 또는 전면적 무장방법전환의 모델을 고안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民間主導防衛가 한 나라의 防衛政策방위정책의 중심요소가 되거나 아니면, 보다 넓은 군부주도 정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몇가지 일반적 모델을 생각해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일반적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1. 어떤 특별한 위치나 조건 때문에 강력한 군대나 동맹관계를 가질 수 없는 작은 나라들이 그 국가의 방위정책으로서 민간주도 방위 모델을 전면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채택하는 경우

2. 전반적인 정책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끔 그 구성요소들을 확장하려는 의도없이, 하나 그 이상의 특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군사위주적 방위정책에다 민간주도요소를 추가하는 모델

3. 궁극적으로 무장방법의 완전한 전환을 실현할 목적으로 민간주

도방위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모델

4. 군사무기의 단계적 감축을 요구하는 민간주도방위요소를 채택하는 동시에 인접하고 있는 여러나라들과 협상하면서 단계적이며 다변적인 무장방법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이제부터 여러 가능한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자.

민간주도방위를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채택하는 모델

신속하고 완전한 무장방법전환은 중요한 군사정책방안을 갖지 못한 나라들이나 그 나라의 군사정책 대안을 사용하다가는 慘禍참화를 입게 될 나라를 위해서만 있을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코스타리카나 이이슬란드와 같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나라들은 매우 강력한 국내 경찰관 외국의 지원을 받거나(코스타리카) 또는 海外軍事同盟해외군사동맹의 동맹국이 되어 있는 나라(아이슬란드)이다. 만약 이들 국가의 주요목적이 진정한 독립이라면 이러한 해결방안들은 두 가지 모두 불리한 것이 된다.

이 정책의 신속한 채택은 새롭게 독립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팔레스타인, 티벳같은 나라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 이 나라들은 軍事的군사적으로 보다 강력한 이웃나라 즉 과거의 통치국가로부터 계속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주적이고, 충분한 군사적 방위능력을 구축할 방법이 없다. 만약 그 작은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게 된다면 과거의 지배국가들은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 침공하게끔 자극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은 용의주도한 가능성연구와 사려깊은 考察고찰을 통해서 군사정책 보다 현실적이며 완전한 대안이 되는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를 채택하려

고 할 것 같다. 그래야만 침략이나 정권탈취에 폭력적이면서도 무력한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굴복을 택하느냐는 선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新生독립국가들이 民間主導防衛를 채택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국가구조를 가져왔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신축성을 보인다. 民間主導防衛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주도권이 때로는 비국가기관들의 생각보다 앞서 있다. 그러한 주도권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전체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사회의 주민과 기관들은 제안된 防衛政策방위정책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정책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도 준비할 수가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민간주도방위를 채택하는 주도권이 주민들과 그 사회의 독립적인 기관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 주도권과 더불어 아마도 독립투쟁의 경험에서 생긴 처음의 준비조치들은 정부의 평가나 정책결정에 앞서거나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독립적인 사회기관들이나 職能集團직능집단의 권고들은 정부가 채택할 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계획 속으로 통합될 것이다.

민간주도방위는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대부분의 現代軍事武器현대군사무기를 바꿀 때처럼 준비와 훈련에 기초하여 방위잠재력을 발휘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정확히 그 모델에 따라 민간주도방위를 채택한 전례는 없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상황이 어느정도 비교가 될 수 있다. 독일은 戰後전후에도 여전히 군대를 보유했지만 베르사이유조약의 조항 때문에 중요한 국제적 요인이 되기에는 너무 약화되어 있었다. 독일 군대는 여러가지 이유로 1920년 Kapp반란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을 전복시키고자 했던 自由軍團자유군단(Freecorps)의 私兵組織사병조직에 대해서도 조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1923년에도 여전히 무력한 독일군대는 Ruhr지방을 침공했던 벨기에와 프랑스

군대와의 전투에 배치되지도 못하였다. 이 두 경우에 당시의 獨逸政府독일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방위를 위한 즉흥적인 비폭력 투쟁을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새로 독립하는 나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1920년대의 독일의 상황보다는 有利유리한 입장에 설 것 같다. 그 이유로서 훨씬 더 많은 역사적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고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과 민간주도방위의 본질이 보다 잘 이해되고 있으며, 방위적 투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국민들을 훈련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특수목적을 위해 民間主導要素를 추가하는 모델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 이론가들이 보통 내세우는 일반적 모델은 수년 간의 정책보다 완전한 무장방법전환을 위한 정책이다. 이 이론가들은 防衛效率性방위효율성에 기초하여 군부가 주도하는 방위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위의 영구적 결합보다는 완전한 무장방법전환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간주도방위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완전한 탈폭력화를 생각했던 몇몇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실은 민간주도구성요소를 강력한 군사위주 정책에다 결부시키는데 훨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민간주도요소가 강력한 군사위주의 정책에 추가될 때, 사회 또는 정부가 구성 요소들을 운용의 초기 수준이나 원래의 특수목적을 위해서만 유지해야 한다는 영구적인 약속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구성요소들은 전쟁억제력 및 방위능력에 관한 미래의 평가에 의해서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災害재해나 破壞파괴를 겪지 않고도 침략자들을 격퇴할 수 있는 승산이 있으면 그런 군사정책을 가진 나라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상당기

간동안 군사적 수단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그들은 스웨덴,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가 이미 그러했던 것처럼, 어쩌면 어느 시점에서 영구적인 민간주도방위 구성요소를 그 나라의 군사위주의 防衛政策방위정책에 추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또 다른 非軍事的비군사적 및 준군사적 구성 요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82년 4월 오스트리아의 국방장관 Otto Rosch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국가방위계획의 군사적 부분은 민간적인 저항과 함께 사회적 방위의 여러 형태를 군사적 국가방위에 필요한 보완책으로써 간주한다. 이 맥락에서 이런 요소들은 국가방위의 이데올로기적, 시민적, 경제적 영역 속에 체계적으로 통합되며, 그 안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985년에 간행된 오스트리아 國家防衛計劃국가방위계획은 "민간인의 저항이 군사방위에 불가결한 보완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방위계획은 또한 오스트리아 영토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점령당했을 경우에 조직화된 민간인의 저항이 전쟁에 대한 國際法국제법 조항을 지키면서 해당 지역내의 오스트리아 戰鬪部隊전투부대를 지원하는데 "效果的효과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스웨덴은 1986년 4월 滿場一致의 의회표결로 민간주도요소를 스웨덴의 "총력방위"(total defense)정책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의회나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정당, 학자들, 종교집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거의 20년동안에 걸친 토론과 연구조사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다.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내각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한 위원회는 국방부 안에서 市民抵抗시민저항을 스웨덴 防衛政策방위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활용하는 계획을 만들고자 작업하였다. 그 위원회는, '총력 방위' 당국이 그들의 계획을 확장시켜서 전쟁시에 占領점령당한 영토에서는 '非軍事的비군사적 抵抗저항'을 하게끔 건의하였다. 그 위원회는 또한 총력 방위정책의 다른 민간인 구성요소들을 이미 조정해온 여섯개의

'최고지역사령부(High Regional Command)'들 중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계획을 단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常設委員會상설위원회의 設立설립을 건의하였다. 군사적 방위와 비군사적 방위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응용연구와 조사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1987년 6월 1일, '非軍事的抵抗研究委員會'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작하였다.

①정부과 개개인들에 대한 諮問자문과 建議건의를 통해서 비군사적 저항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②국제법의 문제와 비군사적 저항의 심리 및 다른 조건들을 연구한다.

③그 분야의 연구를 촉진한다.

이 위원회의 前책임자인 Gunnar Gustafsson은 평화시에 시민저항을 준비하면 잠재적 침략자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처신하여 본래의 계획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등 값진 정신적 준비를 하게 만든다"고 기술한 바 있었다. 이런 사례들과 아래 인용된 다른 경우들에서 보듯이 국가 방위를 위한 비폭력 투쟁이 어떤 국가들에서는 총력적인 國家防衛計劃국가방위계획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군사적 수단들이 다른 상황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지만 민간주도 방위요소들은 특별한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왔다. 軍部主導防衛군부주도방위와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의 결합은 영구적인 것으로 의도되었던 것이지 완전한 무장방법전환으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서 간주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혼합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 조건아래서만이 변화될 수가 있다. 곧 그것은 민간주도방위가 본래 평가된 것보다 억제력과 방어를 위한 훨씬 더 큰 억제력과 방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그 사회가 갖게 되었을 때이다.

군사적 행동이나 비폭력적 투쟁의 역동성이나 성공을 위한 요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군부가 주도하는 방위정책내부에서 제한된 범위로 나마 삽입된 민간주도방어요소의 역할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특수 목적을 밝히는 것이 민간주도방위 요소를 채택하는 결정에서 대단히 중요하였다. 특별한 民間主導要素민간주도요소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침략자에 대한 군사적 저항이 명백히 소용없고 자멸적인 상황에서는 방위의 第一線제일선에 선다.

2. 군사적 저항을 했으나 침략자들을 격퇴하는데 실패하였을 때에는 후방 방위선에 선다.

3. 쿠데타와 같은 국내적 권력 強奪行爲강탈행위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방위의 主力部隊주력부대가 된다.

군사적 저항이 소용없고 자멸적인 경우. 어떤 나라들은 潛在的잠재적 공격자의 군사적 실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분적인 민간주도저항을 채택할 여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 한다. 공격자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군사적 저항을 취하는 것이 좋다. 공격자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軍部主導防衛努力군부주도방위노력이 분명히 소용없고 자멸적이 될 것이므로 그때 민간주도방위요소가 防衛第一線방위제일선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

제1장에서 저술한 즉흥적인 비폭력 저항의 두 사례 즉, 1923년 프랑스 및 벨기에의 侵攻침공에 대항한 독일의 루르투쟁(Ruhrkampf)와 1968년 바르샤바조약 침공군에 대항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저항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지식의 증진,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준비와 훈련을 위한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한 방위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주도 방위요소는 일부 그런 돌발

사태를 다루기 위한 총력 방위정책 속에 편입될 수가 있었다.

군사적 저항이 실패한 경우. 민간주도요소는 또한 어떤 나라의 군대가 침략자들을 격퇴하려고 시도했는데도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말았던 곳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 1940-45년 사이 독일점령기간 동안의 노르웨이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나치와 싸웠던 네델란드의 저항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이다.

1967년에 노르웨이 내각의 지시에 의해 노르웨이 防衛硏究協會방위연구협회(Norwegian Defense Research Institution)가 내놓은 연구에서는 군사적 방위가 실패할 경우 그동안 준비한 비폭력 저항을 활용할 것을 거론하였다. 군사적 방위에 의한 영토보존이 실패한 경우 비폭력적 방위가 진짜 防衛類型방위유형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非暴力防衛비폭력방위가 군사위주인 총체적 방위의 보완책으로서 작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것이 敵적의 공격에 저항한 노르웨이의 抵抗力저항력과 抑制力억제력 강화에 이바지 했다는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

1989년 3월 1일, 노르웨이의 大西洋委員會대서양위원회(Norwegian Atlantic Committee)는 "補完的보완적 防衛形態방위형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노르웨이의 "總力총력 防衛政策방위정책"내에 민간인 저항을 편입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1967년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이자 당시 노르웨이 국방장관이었던 Johan Jorgen Holst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러한 구성요소가 한동안 스위스 防衛政策방위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왔다. 스위스의 "總體的총체적 防衛"정책에서는 군대가 외국의 침략자들을 격퇴하는데 실패할 경우, "무장 저항"(게릴라와 준군사투쟁)

과 함께 "消極的소극적 抵抗저항"도 스위스의 점령당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폭력적 저항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신 민간인들은 國際法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협력을 거부하도록 교육받았다. 비록 폭력적으로 抵抗저항하지 않고 그러한 폭력을 돕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령자들에게 어떠한 최소한의 양보도 하지 않으며 일체의 모든 和解화해 시도도 거부한다. 占領者점령자들에 대한 冷待냉대와 共助거부, 주민들에게 침략자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한 협력 거부도 1969년 스위스의 모든 가정에 배포된 '민간주도 방어수첩'(Civilian Defense Book)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들의 중요한 義務의무들이라고 적혀있었다.

핀란드는 비폭력적 抵抗저항 요소를 총체적인 防衛政策방위정책 안에 편입시킨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1917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필란드 心理戰防衛計劃委員會심리전방위계획위원회는 민간주도방위에 관한 첫번째 공식적 연구를 발표했다. 그 위원회는 새 정책이 군사적 능력을 완전 대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그 위원회는 비폭력 저항 요소를 핀란드의 강력한 군사위주의 정책에 추가하는 것이 有益유익함을 인정하였다.

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러나 어떤 危機狀況위기상황에서는 무기없이 하는 저항방법이 무장저항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實用的일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침략자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는 의문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나라의 경험에서 나온 實例들은 武裝抵抗무장저항과 결합한 이런 방법들이 점령기간동안 사회기간들의 행동의 자유를 확복하는데 적합함을 입증하였고 마침내는 점령국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民間主導防衛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검토한 끝에 위원회는 1971년 핀란드가 군사적 준비와 병행해서 비폭력 저항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判斷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며, 또 그러한 작업은 가능한 빨리 착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집행되지 않았다.

과거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시절의 유고슬라비아는 총체적인 國家防衛政策국가방위정책 속에 非軍事的비군사적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왔다. Nikola Ljubicic 장군은 軍事力이 합리적인 戰略體系전략체계에서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全人民전인민의 防衛戰爭방위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모든 유형의 저항들이 조화롭게 기능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政策정책은 점령당한 지역에서 비폭력 저항의 활용을 명백히 허용하고 있다. "당연히, 작전중의 군대나 地域防衛지역방위는 종종 더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시나 居留地거류지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철수해야 할 입장에 처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형태의 행위로 鬪爭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군사·정치조직은 남겨두어야만 한다."

Adam Roberts가 약술한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아의 독특한 저항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동과 전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종래의 정부기구를 유지한다. (2) 경제적 저항-抵抗勢力저항세력을 위한 생산과 공급, 재산보호는 추진하나 侵略者침략자에게 이로운 작업수행을 거부한다. (3) 문화와 교육에서도 저항한다. (3)소극적 저항-사회적 보이콧, 협력 거부, 전반적 불복종과 적대의 태도. 유고슬라비아의 방위체제는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조직의 전체적인 관여를 요구한다. 그들은 계획을 수행하는데 뿐만 아니라 계획을 입안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Croatia와 Bosnia-Herzegovina 두 공화국이 유고 연방으로부터 각각 1991과 1992년에 독립을 선포한 후, 양 지역이 끔찍한 전쟁에 휘말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총력적 국가 방위 정책에서는 매우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에 반하여(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듯이) 주요 방위수단으로써 게릴라 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가 유고의 비극적 사태로부터 배울 것은 많을 것 같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심각한 민족갈등이나 투쟁의 역사로 점철된 나라에서는 국방의 한 수단으로써 게릴라 전투 기법을 국민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주도요소가 한 나라의 군사위주의 防衛態勢방위태세와 결합되어 온 곳에서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주로 防衛責任방위책임을 맡은 사람과 집단들은 군사적 요소와 비폭력적 요소의 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抵抗者저항자들은 침략군의 사기와 信賴신뢰, 그리고 복종심을 약화하기 위해서 1968년 체코의 경우에서처럼 방위투쟁중 비폭력적 특성을 이용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공격자들의 군대로부터 과거 武力侵攻무력침공을 받았거나 그들의 친구들이 죽거나 부상당했다면, 또는 그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노력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暴力的폭력적 技法기법과 非暴力的비폭력적 기법을 결합하는 문제도 매우 곤란하다. 특히 같은 全面的 防衛戰略 안에서 게릴라전과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제안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se) 또는 비공격적 방위의 여러가지 모델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 만약 비폭력적 抵抗저항과 게릴라전이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저항자들에 의해 동시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상자를 낼 뿐 아니라 비

폭력적 투쟁의 효율성마저 완전히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군사적 방위정책에 민간주도 방위요소를 첨가하는데 있어서도 게릴라전 또는 "방어적 방위"같은 군사적 요소가 수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요소와 민간적 요소를 혼합한 防衛政策방위정책은 군부주도적인 정책들에 비교한다면 한층 진보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혼합식 방위정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상극성과 그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民間主導防衛政策의 연구·개발과 실천의 경험이 원래에 있었거나 인식되어왔던 것보다 훨씬 큰 방위능력을 증명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아마도 무장방법전환으로 가는 進步的진보적인 운동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간주도 요소로 성공하게 된 그 요인들이 군부의 요소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체적으로 그 문제들은 만약 군부주도방위체제와 민간주도방위체제의 운영을 분리시키거나 격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훨씬 덜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내부적 권력탈취에 대항하여. 부분적인 탈폭력 무장방법전환의 다른 가능한 모델은 특히 쿠데타, 행정권찬탈, 혹은 국가기구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다른 비합헌적 시도들을 방지하고 좌절시킬 목적으로 민간주도방위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국가 내부의 공격은 중대한 방위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몇십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합헌적 민주정부와 여러 정치체제들이-권력을 찬탈당하였으며 정치적 지도자들도 살해되었으며, 새 독재정권이 협박이나 武力使用무력사용 등을 통해서 수립되었다.

태국과 같은 국가 등에서는 보다 많은 民主主義민주주의와 社會正義

사회정의를 성취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수십년에 걸친 군사적 또는 정치적 쿠데타에 의해 거듭 좌절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콰테말라 그리고 브라질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심각한 문제였다. 군부조직들이 市民社會시민사회보다 훨씬 잘 조직되어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독립 이후 그 지역의 정치체제를 형성하는데 쿠데타가 결정적 요소였다. 유럽도 지난 수십년간 쿠데타의 負擔부담을 안아왔다. 그러므로 매우 다양한 유형의 나라들이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정책대안을 유지하면서 국내적 권력강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民間主導防衛를 채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쿠데타는 대체로 순수한 軍事作戰군사작전이다. 어떤 쿠데타는 독재정당이나 정보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장악을 시도한다. 쿠데타는 때때로 민간집단과 군부집단이 결합해서 수행하기도 하고 지지받기도 한다.

그러한 권력장악이 불법적이며, 非合憲的비합헌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수가 없다. 사실 쿠데타를 감행하는 자들은 기존 憲法헌법과 法律법률의 禁忌금기들을 서슴지 않고 위반한다. 이같은 쿠데타기도를 막기 위해 국내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게다가 군부가 쿠데타를 수행하거나 지지할 때, 헌법수호를 바라는 민간인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쿠데타 가담자들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소규모 집단일 뿐이며 군대가 압도적으로 헌정질서에 충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적 해결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해결책도 없다.

民間主導防衛는 국내전쟁의 위험없이 독재권력의 수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제1장에서 서술한 두 경우-1920년의 독일과

1961년의 프랑스-는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국내적 권력찬탈을 막는 문제의 기본적 해답이 그 事例들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세련되고 발전된 정책속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한 권력찬탈에 대항하는 民間主導防衛의 기본 패턴은 제4장에서 서술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행동들에 가깝다. 권력찬탈자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 권력찬탈자의 정부수립과 효과적인 行政權행정권 장악을 저지하는 것, 공무원, 경찰, 군대를 찬탈자의 통제권 밖에다 놓아두는 것, 찬탈자들의 통치권력을 거부하기 위해 시민사회기관과 대중을 동원하는 것, 찬탈자의 군대와 지지자들의 내부붕괴를 시도하는 것, 立憲政府입헌정부의 再建재건을 위해 국제적인 비폭력지원을 최대화 하는 것 등이다.

사회, 정부기구, 市民精神에 대한 준비로서 그러한 권력찬탈을 비협조와 무시의 방법으로 물리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한 권력탈취를 과거에 경험해 본 나라들 일수록 이 가능성에 주목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前歷전력이 없는 나라들은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1987년 미국의 "이란게이트"청문회(Irangate)조사는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한 소규모의 집단이 개입되었음을 폭로해 주었다. 그들은 미국정부의 헌법적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면서 바라거나 필요한 일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秘密政府비밀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내부의 政權掌握정권장악이나 전복의 기도가 전혀 없었던 정부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경고해 준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권력탈취에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체제와 사회일수록 같은 유형의 조사, 공개토론, 정책연구, 정책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 민간주도방위를 채택할 때 하는 것과 같다. 보다 구체적인 입법과 공공교육이 憲法體制를 폐지하여 스

스로 새로운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지지와 복종을 거부하는 도덕적, 법적 책임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치 상황아래서 국내적 권력찬탈을 방지하는 정부의 고려나 준비가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모델이 존재한다. 권력찬탈을 방지하는 정책이 신문, 잡지, 소책자,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이나 국민들과 권력의 출처인 사회 기관에 의해서 토론될 수가 있다. 이 조직들은 그 사회의 교육, 사회, 종교, 노동조합, 기업, 문화 등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그 교육프로그램은 政府官僚정부관료, 公務員공무원, 警察경찰, 軍人군인, 정당원 및 다른 집단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민간주도방위의 성격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의 기본적 책임과 구체적 방위반응이 보다 잘 이해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아래서 非憲法的비헌법적인 권력장악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국내적 권력찬탈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할 목적만을 위해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를 채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정책의 이런 측면들에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방식에 상관없이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正統性정통성, 대중의 容認용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며 쿠데타에 의해 그 자리에서 손쉽게 축출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武裝方法의 완전한 轉換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

潛在的잠재적 攻擊者공격자(가상적국)와 비교할 때 군사력이 너무 제

한되어 있어서 본격적으로 군사적 방어의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많다. 어떤 나라에서는 군대가 주로 상징적 역할만 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군대가 심각한 국내위기에 대처하여 鎭壓行爲진압행위만을 하고 있다. 군사력은 한정된 자원, 경제적 한계, 적은 인구 등과 같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가 있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國際條約국제조약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국내사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또 한편 폴란드는 經濟問題경제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큰 군대조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러시아아 NATO의 군사력에 대항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사실 1980년대 폴란드 군사력은 주로 국내 억압용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불가리아 등과 같이 독립을 한 동구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런 나라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완전한 무장방법의 전환(full transarmament)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완전한 무장방법의 전환이라는 목표는 적어도 초기에서는 본질적으로 受諾수락되거나, 적어도 폭넓게 용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10년 내지 15년의 어느 기간동안 단계적 계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나라들의 완전한 무장방법전환은 대개 제한적인 민간주도적 요소를 군사위주의 정책에 가미함으로써 시작된다. 실질적 무장방법 전환은 사회기관들을 통한 防衛能力방위능력의 準備준비, 訓練훈련, 動員동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와 정부는 제한적인 민간주도적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형태의 방위를 어떻게 準備준비, 訓練훈련, 實行실행할 것인지 경험할 수 잇다. 準備와 經驗경험이 정책의 생존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가정하에 초기의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요소들이 여기에 첨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능력과 신뢰가 증가됨에 따라 완전한 무장방법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적 요소들에

대한 의존성이 점차 감소되어 갈 것이다.

완전한 무장방법전환을 통하여 이런 나라들은 여러가지 利點이점을 챙길 수가 있다.

첫째, 이런 나라들은 이웃 나라들에게 군사적 위협을 주지 않는다.

둘째, 이런 나라들은 戰爭抑止力전쟁억지력과 防衛力방위력을 향상시켜 왔다.

셋째, 이런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쿠데타 또는 행정권 찬탈의 가능성을 이러한 공격을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함으로써 제거하였다.

어떤 나라 방위의 긴박성이나 국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방위와 해방을 위한 비폭력투쟁의 개발은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중요한 정치적 진전을 내딛기 시작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변적인 武裝方法의 전환

民間主導防衛의 정책은 정부가 새로운 무기를 추가하거나 완전히 新武器體系신무기체계로 바꾸는 방식과 비슷하게 언제나 일방적인 결정으로 提案제안되어 왔다. 신무기는 군대의 戰鬪力전투력을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인접국가나 적대국가와 협의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그래받자 좋은 일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新武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사용되어 온 군사무기를 교체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또 한편에는 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기의 양이나 형태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도 여러번 있어 왔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노력이 눈에 띄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만일 民間主導防衛가 정말로 공격에 대항해서 억제하고 방위할 만

큼 강력한 정책이라면 인접국가나 假想敵國가상적국이-부분적이던 전면적이던간에 -스스로 무장방법을 전환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어떤 다변적이고, 단계적이며 실행가능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무장방법전환 유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의 선택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공식적인 協商협상이나 조약없이도 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서는 이러한 선택방안이 방위나 군사력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민간주도요소들의 다변적인 도입과 점진적 확대는 북유럽, 중미, 중유럽과 같은 지역에서 잘 추진되어 있다. 5개의 북유럽 국가중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4개국의 防衛政策방위정책에서 민간주도요소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조사와 정책연구의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이슬란드에서는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

中美중미지역에서는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곳은 또한 군대가 군부독재와 정치적 독재를 지원하거나 실시해 왔으며 때때로 인접국가가 침략을 위협하거나 공격해 왔다. 국제적 긴장과 국내독재를 감소하는 하나의 방법은 민간주도방위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무기와 군대의 감축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民間機構민간기구의 강화는 이 지역에 새로운 防衛政策방위정책을 도입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

특히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 변화와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방위와 안보정책에 대한 폭넓은 재평가를 고려한다면, 國際協約국제협약에 의한 武裝方法의 轉換은 중유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완전한 무장방법전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주도방위는 적어도 북유럽으로부터 남유럽에 이르는 폭넓은 回廊회랑(Corridor)지대에서 주요한 군비감축에 이바지 할 것이다. 민간주도 방위요소는 軍事力의 형태와 양이 감소됨에 따라 合意합의된 스케줄에 맞춰서 단계

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 非軍事化에 대해 합의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防衛力이 유지될 수 있을 때 군비감축과 비폭력무장화의 협상을 방해해온 장벽이 부분적으로나마 제거될 수가 있을 것이다.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와 超强大國초강대국

현재의 초강대국 및 潛在的잠재적 초강대국은 방위문제에서 中小國家들보다 民間主導防衛의 응용가능성에 관심이 훨씬 적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연방은 분명히 초강대국에 속한다. 초강대국으로서 美·러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서라기보다는 미·러의 영토와 인구의 크기, 국가구조의 규모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도 역시 이런 범주(종류)에 속한다. 통합된 유럽도 비록 다른 나라들로부터 큰 차이점이 있지만 역시 초강대국이다. 영토와 인구의 규모에 덧붙여서 중앙통제의 정도와 군사력의 크기도 또 다른 중요 기준이 된다.

초강대국의 경우 民間主導防衛의 적용가능성은 정권의 성격과 목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들 강대국들이(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접국가들을 지배하고 자기나라의 주민들에 대해 엄격한 중앙통제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政治정치, 經濟경제, 軍事政策군사정책의 방향 조정을 추구하는 등, 대개는 침략적이거나 압제적인 나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강대국은 民間主導防衛나 기타의 비폭력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공격자와 동일하게 간주될 것이다.

한편, 초강대국의 공격적인 대외활동과 국내적 억압이 국제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으로만 보여지는 한 民間主導防衛가 이러한 사

회의 발전이나 공격적인 성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탈린에 의하면 외부위협에 대처하다 보면 勞動者노동자 民主主義민주주의의 理想實現이상실현이 '不可能불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스탈린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공산당내부의 토론 자유에 대한 요구를 묵살했다. 그는 또 "관료주의자들로부터 국가를 해방하고…… 완전하게 안전한 국내의 평화조건"을 가져야만 "다른 정부기구에 그들의 흔적을 남기게 될 거대한 軍隊幹部組織군대간부조직이 불필요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민간주도방위가 超強大國초강대국에게 有用유용해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들 초강대국들은 전적으로 방대한 軍事的資源군사적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완전한 무장방법의 전환을 한다는 것은 급속한 변화이든 아니면 장기적인 모델로든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우선 초강대국에 있어 民間主導防衛政策은 쿠데타의 防止手段방지수단 또는 과거부터 의존해 오던 동맹국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군사위주정책의 부조수단으로서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와 연방과 같은 초강대국에서의 民間主導防衛의 가능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미국과 러시아 연방의 상황은 유사성과 함께 동시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가(특히 서유럽국가들과 일본)들은 이 민간주도방위정책을 통하여 그들 자신이 방위에 대해 완전한 또는 적어도 일차적인 責任책임이라도 맡게 된다면 이로서 미국은 그 軍備군비를 대폭 (아마 절반이라도) 감축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同盟國家동맹국가들이 민간주도방위를 연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정책에 관한 조사결과, 실현가능한 연구나 다른 지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同盟國동맹국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유럽과 일본의 무장방법 전환도 미국의 안보문제를 훨씬 단순화 할 것 같다. 냉전시대가 끝남

으로써 민간주도방위 代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처럼 의존적인 동맹국들의 防衛負擔방위부담이 없어짐으로써 미국에 대한 주요한 安保威脅은 이론적으로 核戰爭, 침략, 국내의 政權奪取정권탈취라는 세 가지 문제로 축소될 수가 있다. 미국대륙에 대한 군사침략이나 점령은 기술적·兵站병참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마도 최소한의 민간주도방위 준비만 되어 있어도 외국 점령의 어려움이 커지므로 안보위협은 없어진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쿠데타, 행정권 탈취, 비밀정부에 의한 정권인수에 대항하는 민간방위준비는 전쟁억지와 방위의 수단으로서도 필요해진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나 기타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에 의한 공격의 가능성만이 유일하게 심각한 지속적인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다변적인 협정과 일방적인 조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러한 위협을 감축하는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그러한 공격을 하게 되는 동기를 줄이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민간주도 방위가 미국의 모든 안보문제를 제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크게 단순화하며 또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 중 몇가지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 연방은 어떤한가? 만일 러시아의 인민과 정치지도자들이 진정 민주화하고 권력분산 하기를 바란다면 민간주도방위야말로 그들 자신의 安保要求안보요구를 위해서도 고도의 적실성을 가질 수가 있다. 러시아나 동부유럽에서 민주화의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민간주도방위는 동부유럽나라들이 러시아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도 않으면서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준다. 동부유럽 나라들도 무장방법의 전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위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게됨으로써 러시아는 군사비지출을 감축할 수가

있게 되었다.

러시아내부의 민족문제도 유사한 경우이다. 예를 들자면 Latvia, Lithuania, Armenia, Georgia와 같이 소련안에 편입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독립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新生獨立國家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비무장상태로 남아있어야 하며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립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민간주도 방위는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잠재적으로 합리적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생각해 볼 때, 이미 군사적 침략이나 점령이 성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잘 준비된 민간주도방위정책은 공격에 대한 강력한 抑止力억지력이며 효과적인 防衛政策방위정책이 될 수가 있다. 이 정책은 국내민주화의 進展진전, 분권화(decentralization), 국민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인적자원을 투입하는 행위와 일치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러시아는 현체제가 갖는 고도의 중앙집중화 때문에 국내의 정권탈취에 취약하다. 공격의 형태는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에 반대하고 강력한 중앙통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네오 스탈린주의자나 조금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체제를 다시 세우길 바라는 軍部군부나 政治集團정치집단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다.

쿠데타의 경우 민간주도방위능력은 민주화된 러시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억지력이며 防衛방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도 비계획적인 민간주도방위의 전형적인 사례는 1991년 8월에 모스크바나 혹은 소련내의 여타 지역에서 기도되었던 強硬派강경파의 쿠데타의 "시민의 힘"에 의해 좌절되고 만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쿠데타기도를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해서만 막으려 했다면 러시아 연방내의 국민에게 위험한 결과들을 초래했을 것이다. (1) 만일 쿠데타가

高位軍幹部고위군간부 대부분에 의해서 지지받았더라면 쿠데타를 막을 유일한 수단은 無力무력해지고 말았을 것이다. (2) 만일 쿠데타가 군간부중 일부 分派분파로부터만 지지를 받았더라면 忠誠충성하는 군대가 投入됨으로써 군대에 유혈분열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방위력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 넣었을 것이었다. (3) 만일 군부가 쿠데타를 저지할 유일한 세력이며 위기시에 쿠데타 진압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러시아 정치에서 군부가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1993년 10월에 러시아의회 건물을 장악한 反옐친의회주의자들을 군대가 탱크와 특공대 투입으로 패배시켰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전에는 소련에 속했던 非러시아계 나라들이 철저한 脫軍事戰略탈군사전략이나 혹은 민간주도방위전략등과 같이 自主的인 防衛力을 높이게 된 것이 러시아에도 有益한 효과를 가져왔다. 국내적인 갈등에 비폭력 투쟁을 보다 많이 적용함과 동시에 국가바위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더라면 러시아 군대가 러시아 국경 밖으로 간섭하려는 압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었다. 또한, 러시아의 막대한 군비지출을 줄이는데도 이바지 했을 것이다.

중국, 인도, 통합유럽,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초강대국이나 대국들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안보요구에 대한 民間主導防衛의 적실성에 대한 고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民間主導防衛政策이 가질 수 있는 潛在的 利益

장기적으로 보아 민간주도방위는 軍事防衛政策군사방위정책이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잠재력을 갖는다. 그 이익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주도방위는 군대가 아니라 社會的사회적 力量역량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까지도 방위와 안보문제에서 자립능력을 증가 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군사무기나 보급 등으로 외국에 의존하거나 보다 강력한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런 從屬性종속성으로 인한 財政的재정적·政治的정치적 代價대가를 치룰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점은 自己防衛가 가능만 하다면 위기시에 약속된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同盟國동맹국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1939년 동맹국들에 의해 버려지고, 1968년 동맹국들에게 의해서 침략당했던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입증한다. 민간주도방위는 戰爭전쟁의 危險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전쟁억지력과 방위에서 최대한의 自主性을 제공해 준다.

2. 非軍事的 특성을 가진 민간주도방위는 國際的不安국제적불안과 危險위험을 줄임으로써 군부조직으로 외국을 공격하는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抑止力억지력과 防衛力방위력을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공격억지력과 防衛目的방위목적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었던 많은 軍事武器군사무기도 타국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정당화가 되던 안되던 이런 사실은 자주 국제긴장을 증가시키고 군비경쟁을 강화하며 전쟁가능성을 높여 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민간주도방위는 타국가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서도 전쟁억지력과 방위를 제공할 수 있다.

3. 民間主導防衛가 폭넓게 적용되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강력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국제적인 군사공격의 빈도가 감소될 것이며 潛在的잠재적 공격자가 타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소화하기 어렵고 공격자들의 목표달성을 좌절시키며 공격군대 내부에 불평을 퍼뜨릴 수 있는 나라들을 상대하게 된다는 전망을 주게 된다는 것은 공격자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등

적어도 몇가지 공격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민간주도방위를 채택하는 나라의 수가 증가하고, 잘 준비된 나라들을 처부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민간주도방위의 효과는 더욱 증대될 수 있다.

4. 민간주도방위는 在來式武器手段재래식무기수단이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나라들의 안보정책에 自主的자주적 대체수단을 제공함으로써 核擴散핵확산을 감축할 수도 있다.

핵무기에 관심을 갖는 한 가지 이유(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는 재래식 무기수단으로 불충분하다는 것과 군사강대국의 武器나 政策에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주도방위는 자주적인 억지력과 방위를 달성하는데 핵무기와는 다른 대체수단을 제공한다. 만약 이러한 것이 이해된다면, 民間主導防衛政策의 채택이 증가할 수록 核擴散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민간주도방위는 軍權에 의한 정권탈취와 국내억압의 빈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민주정부의 지지자에게 있어 가장 큰 아이러니중의 하나는,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진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와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軍隊군대가 오히려 그 정부를 공격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나라에서 군대가 立憲政府입헌정부를 전복하고 軍事政府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또한 "防衛방위"를 해야 할 군대가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며 보다 큰 자유와 社會正義사회정의를 위한 국내운동을 탄압한다. 심지어는 (1919년 영국의 Amritsar사태와 1989년 중국의 天安門천안문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大量虐殺대량학살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민간주도방위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군대조직과는 반대로 첫째, 민간주도방위는 正統性정통성있는 立憲政府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國內暴力能力국내폭력능력을 갖지 않는다. 둘째, 민간주도방위정책에서 요구되는 비협조와 저항의

준비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정권탈취를 견제하는 억지력과 합법적인 防衛力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비폭력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주도방위의 무기들은 鎭壓진압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만약 비폭력투쟁이 국내갈등에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열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국내의 평화 및 질서와 兩立양립할 수 있으며 국내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들을 피할 수 있다.

제1장과 제4장의 논의가 보여준 바와 같이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는 이러한 외국의 공격은 물론 국내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고안되었다.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불신받는 소수파가 아닌 경우 군사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전을 유발하기가 쉽다. 불행하게도 훨씬 더 많은 경우 軍隊군대, 警察경찰, 官僚관료는 진정으로 지지하기 때문이든 내란을 피하려는 바램 때문이든 아니면 기타의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든 간에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同調동조한다. 民間主導防衛는 국내폭력을 확산시킴이 없이 국내의 정권탈취에 대항해서 싸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6. 적어도 어떤 조건하에서는 민간주도방위정책의 채택과 준비가 不滿集團불만집단에 의한 국내폭력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비폭력 행위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표현하도록 고무한다.

국내폭력은 심각한 이념 대립, 고통 받아온 不正으로 인한 욕구 불만, 억압과 가난 등 때문에 유발될 수가 있다. 그런 폭력은 暴動폭동, 暗殺암살, 테러, 게릴라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폭력 행위자는 문제가 되는 쟁점의 심각함을 거론하며, 또 취할 수 있는 행위중에서 폭력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득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정당화할 것이다. 후자의 주장은 극단적인 국내외 위기에 대처하는 경우 군사적 행동에 의탁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리하여 국가방위와 같

이 "좋은" 명분을 가진 폭력이 높게 평가되고 정당화 되는 경우 첨예한 국내갈등에 예측할 수도, 알려지지도 않는 영향을 미친다. 강한 불만을 가진 사라들 일수록 폭력 이외의 다른 수단이 실패할 것 같고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진압하기 위해 조직적 폭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폭력사용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장방법전환의 성과로 인하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중에서 폭력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이 더 효과적인 행동방침으로 인정받고 있다. 좋은 명분 때문에 폭력에 주어졌던 정당성은 철회되고 그 대신 비폭력투쟁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7. 民間主導防衛를 군사적 방위와 비교하면 敵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차라리 갈등의 근본 목적에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한다.

군사전쟁의 悲劇비극 중의 하나는 적군, 주민, 국토를 얼마만큼 파괴하느냐 하는데 주된 목표를 두고 추진된다는 점이다.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쟁점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행동수단의 뒷자리로 밀려나고 종종 갈등의 근본 목표가 잊혀진 가운데 군사적 승리가 얻어지는 것 같다.

무장방법전환의 또 다른 운영원리가 작용한다. 비폭력적인 항의와 저항은 문제된 쟁점이 잘 표현되었을 때면, 가장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검열에 대한 저항도 반항적인 자유발언이나 자유로운 출판과 같은 도전적인 행위를 통하여 검열에 저항하는 것이 검열을 지시한 정부 관료를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8. 일반적으로 말해서 非暴力鬪爭비폭력투쟁이 그렇지만 민간주도방위는 군사적 갈등에 비해서 희생자나 파괴를 훨씬 적게 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점이다.

우리가 상세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찾을 수 있는 모

든 증거를 통해서 볼 때 在來式戰爭재래식전쟁, 특히 게릴라 전쟁동안 물질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자나 부상자의 수가 비폭력투쟁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증거는 문제가 되는 爭點쟁점의 중대성, 주민규모, 및 기타 요소들까지 고려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다.

9. 在來植재래식 무기와 核攻擊力핵공격력을 포기하면서 민간주도방위를 채택한 나라는 대량파괴무기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 받는 일이 훨씬 적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생겨난 현재 核抑制手段핵억제수단은 그러한 무기들을 가진 나라들을 겨냥했거나 극한 위기시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공격가능성이 있는 다른 핵보유국들에 대하여 先制攻擊선제공격을 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왔다.

10. 非軍事化政策비군사화정책을 취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적 敵對行爲적대행위를 줄이고 친선관계를 증가시킴으로써 민간주도방위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外交政策외교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을 발전시킴으로써 외국공격의 가능성을 역시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민간주도방위정책은 군사정책보다도 이러한 변화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군사정책으로부터 민간주도방위 정책으로 전환하므로서 보다 많은 경제적 자원이 국내민간경제나 국제지원을 위하여 활용될 수가 있다. 재정적,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더 이상 군사적 필요에 얽매이지 않게 되므로 자국 및 타국에서 인간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국제 문제도 폭력적 갈등에 이르기 전에 해결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도움은 그 자체가 값진 것이지만 민간주도방위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이런 방법으로 보다 많은 국제적 친선을 넓힐 수 있는

利點이점을 가진다. 국제적 친선관계는 공격의 의욕을 약화시키며 침략당한 경우에도 국제적 지원을 얻게 된다. 무장방법의 전환으로 이끌어갈 상호지원정책은 자기 나라의 안전보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간조건의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다.

11.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는 또한 정부규모를 줄이며 전쟁억지와 방위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쟁과 군사체계가 국가기구를 팽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으로 非軍事的 防衛體系방위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와 防衛機構방위기구의 규모와 비용을 확대해온 일반적 추세를 되돌리는데 도움이 된다.

민간주도방위정책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軍部主導政策군부주도정책에 비하면 부담이 매우 적다. 그것은 민간주도방위가 군사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防衛責任방위책임도 거대한 전문적인 군부체계로부터 일반국민과 독립적인 사회기관으로 이전된다. 전문저인 민간주도방위연구소, 전략기획그룹, 준비와 훈련 담당기구 같은 기관까지 포함하여 이런 기구들은 종래의 군대보다는 규모가 훨씬 적을 것이다. 민간주도방위의 주요업무도 거대한 전문기구보다 자율적인 사회조직과 기관을 통해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12. 민간주도방위는 군사체계 특유의 중앙집중적 영향력을 제거하며, 그 대신에 비폭력적 制裁를 하게 될 分權化분권화된 영향력을 도입하게 된다. 이것은 自主性(self-reliance)의 강화라는 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자주성이 증가되는 이 영향력은 권력과 책임을 사회전체로 확산하게 함으로써 덜 중앙집중적이며 大衆參與대중참여가 보장되는 더 多元化된 사회 및 정치구조의 발전에 貢獻공헌한다. 이 모든 경향은 물론 민주주의 체제의 理想이상도 일치하는 것이다.

13. 민간주도방위정책의 또 다른 利點이점은 시민들에게 그 사회가

내세우는 원리원칙을 존중하고 그 사회 규범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 반성하게끔 자극을 준다는데 있다. 그들 자신의 방위에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방위할 가치가 있는 사회의 특성들을 깨닫게 되며 또 어떻게 그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14. 市民鬪爭시민투쟁에 의한 전쟁 억지력과 방위를 조성함으로써 이 새 정책은 전쟁을 대신하여 차츰 덜 위험한 정책 방안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한 정책선택이 잘 운영된다고 보여질 때 모든 나라는 군사수단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포기할 수도 있다. 새로운 민간주도방위정책이 진정한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할수록 그 정도에 따라서 군사적수단에 대한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대안임을 증명하게 된다. 개별국가나 국가 집단들은 그런 정치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쟁포기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정책선택에서 더 고려해야 할 점

민간주도방위정책의 잠재력은 국내외의 방위문제를 안고있는 모든 사회 성원과 사회기관들에 의해서 폭넓게 검토되고 토론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말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主導權주도권이 정부나 군대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이나 여러 독립적인 사회기관내에서, 학문적 연구자나 政策分析者정책분석자들 수준에서 그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러한 政策代案정책대안의 本質본질과 잠재력에 관한 지식을 사회전체에 확산시키며 이 정책에 공식적 평가와 비정부적 평가를 광범하게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강구될 수가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지식의 확산, 思考사고의 자극, 이 정책의 실제적 잠재력에 대한 지속적 평가를 격려하는데 있다. 이러한 노력은 改宗者개종자나 '狂信者광신자'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은 개인과 소연구집단들이 民間主導防衛에 관한 지식을 얻고 확산하며, 더 나아가서 이 정책을 더 탐색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한 그 판단력을 평가하도록 自己敎育을 하는 것이다. 각 개인들은 대중연설이나 저술 등 교육적 노력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 분야의 연구와 政策分析정책분석을 준비하는 보다 더 높은 교육을 계속하고자 한다.

非暴力闘爭비폭력투쟁과 民間主導防衛민간주도방위는 우리들의 교육체계내에서 넓은 교육과정의 교과목들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이런 내용에 관련된 學科目으로 채택되고 확대되어야만 한다. 교육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확산하고 혼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특별한 見解견해를 주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非暴力闘爭비폭력투쟁의 본질과 잠재력에 대하여 특히 민간주도방위에 대한 조사, 정책연구, 교육사업의 대중적 확산을 지원할 財源재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방, 州지역, 국가, 국제조직들은 민간주도방위를 연구할 特別委員會를 설립하여 이런 政策이 根源集團근원집단(parent body)에서 더 많은 관심과 행동을 요구할 가치가 있는지 추천하게 해야한다.

필요한 공공 기초작업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때 각 입법기관, 의회, 국회 등의 특별위원회들이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이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제침략이나 국내정권 탈취로 인하여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인하여 현재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치자. 이 책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민간주도방위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데 중요한 증거가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전쟁 혹은 내전의 위험에서 민간주도방위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런 공격을 성공적으로 억지하고 방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代案的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정책의 문제점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철저히 연구되어져야 한다. 방위의 가능성, 문제점 등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어떤 위협에 대하여 현실성있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民間主導防衛 요소에 대한 고찰과 단계적 채택은 계속 성장할 것 같다. 그 이유의 일부는 많은 나라에서 군사적 수단에 의한 방위가 차츰 현실적 有用性유용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는 전세계에 걸쳐서 비폭력투쟁수단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주도방위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와 같은 노력이 가속화되고 또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이러한 노력은 더 낭비할 관심이나 자원이 없어진 시점에서 얻어진 최후의 발상이다. 어떤 우발적인 사건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없을 때 民間主導防衛가 적어도 군사적 수단을 대신해서 전쟁 抑止力억지력과 방위문제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 이것이 이 노력의 성과이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연구조사는 민간주도방위가 알려져 온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민간주도방위가 미래의 防衛政策방위정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국민들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한 방위체계인바 그것이 바로 탈군사적 방위형태(a post-military defense)임이 증명될 것 같다.

□참고문헌□

무장방법의 전환에 대한 관련논의는 Gene Sharp, *Making Europe Unconquerable* (London: Taylor & Francis, 1985, and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er, 1985, Second American edition with a forward by George Kennan,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ers, 1986)의 3장을 보라.

오스트리아 국방장관 Otto Rosch의 인용문은 그가 1982년 4월 30일 Dr. Andreas Maislinger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자료를 제공한 Dr. Maislinger에게 감사드린다.

오스트리아 방위정책에 있어 민간저항의 역할에 관한 자료는 *Landesverteidigungsplan* (국가방위계획) (Vienna: Federal Chancellery, March 1985)의 pp. 49, 55를 보라. 오스트리아 방위정책과 민간주도방위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를 제공해준 Dr. Heinz Vetschera에게 감사드린다.

스웨덴의 비군사적 저항위원회의 과업은 스웨덴 법률 "SFS 1987: 199 Forordning med instruktion for delegationen for icke-militart mostand", 1987. 4. 23.에 개요가 실려있다. 스웨덴의 비군사적 저항에 관한 上記 자료와 기타 여러 자료를 제공해 준 Lennart Bergfeldt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광범위한 문서를 읽게 해 준 스웨덴 국방장관과 워싱턴의 武官에게 감사드린다.

Gunnar Gustafsson의 인용문은 Hakan Wall의 *Motstand utan Vald* (폭력없는 저항), (Stockholm: Sveriges Utbildningsradio AB [스웨덴 교육방송국], 1988)의 서문, pp. 2-3에서 발췌한 것이다.

나찌점령에 대한 노르웨이인의 저항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보

려면 팜플렛 Gene Sharp, *Tyranny Could Not Quell Them* (London: Peace News, 1958, 그리고 개정판)을 참고하라. 독일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저항은 Werner Warmbrunn, *The Dutch under German Occupation 1940-1945*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a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을 참고하라.

1967년 노르웨이인의 연구에 관해서는 Johan Jorgen Holst, Eystein Fjæri, Harald Ronning, "Ikke-Militært Forsvar og Norsk Sikkerhetspolitikk"(비군사적 방어와 노르웨이인의 안보정책), (Kjeller, Norway: Forsvarets Forskningsinstitutt [방위연구소], 1967). pp. 44와 66을 보라.

점령당한 경우 스위스인의 민간행동에 관한 인용문은 Albert Bach-mann, Georges Grosjean, *Zivilverteidigung* (민간방어) (Miles-Verlag, Aarau: Eidg. Justiz-und Polizeidepartement in Auftrag des Bundesrates [연방의회의 명령에 의해 설치된 연방경찰국], 1969) pp. 273-300에서 발췌한 것이다.

핀란드에 대한 자료는 "Aseeton Vastarinta"(무기없는 저항) (Helsinki: Henkisen maanpuolustuksen suunnittelukunta, 1971), 복사본, pp. 27-28에서 뽑은 것이다. 1975년 무장저항의 보조수단으로서의 "무기없는 저항"의 유용성을 인정한 두번째의 핀랜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Aseeton Nastarinta Ja Sen toteuttamisede-llytykset Suomessa"(Helsinki: Henkisen maanpuolustuksen Sun-nitte lukanta, 1975) 복사본, p. 29를 참고하라. 조사와 인용된 핀랜드문서의 번역을 도와준 Steven Huxley에게 감사드린다.

Nikola Ljubicic장군의 인용문은 그의 책 *Total National Defense-Strategy of Peace* (Belgrade: Socialist Thought and Practice, 1977), p. 151에서 발췌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점령된 지역에서 군사적 방어가 종결된 후의 지속적 저항에 관한 인용은 Milojica Pantelic중령의 "Territorial Defense" Vukotic외, *The Yugosav Concept of General People's Defense* (Belgrade: Medunarodna Politika, 1970), p. 280에서 발췌했으며, Adam Roberts, Nations in Arms, Second ed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p. 210에도 언급되어 있다.

유고슬라비아에 있어 비군사적 형태의 저항에 대한 개괄은 논문 "Forms of Resistance in Nation Wide Defense", *Svenarodna* Odbrana (Zagreb) (August-September 1972)에서 발췌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방위계획과 수행에 있어 정치·사회·경제적 조직들의 역할에 관한 인용은 Roberts, *Nations in Arms*, p. 179를 보라.

"이란게이트"조사와 "비밀정부"의 적발에 관해서는, *Report of the Congressional Committees Investigating the Iran-Contra Affair*, 축약본, (New York: Random House, 1988)을 보라.

국내독재체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영향에 관한 Stalin의 견해는 Issac Deutscher,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p. 226, 258, 263, 285를 참고하라.

민간주도방위정책이 NATO의 유럽구성국들을 더욱 자기의존적으로 만들며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축소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Sharp, Making Europe Unconqnerable*을 참고 하라.

(譯者：白寅鶴·洪敏植, 강원대 교수)

GLOSSARY OF CIVILIAN-BASED DEFENSE AND RELATED TERMS[1]

ACCOMMODATION: A mechanism of change in nonviolent action in which the opponents resolve, while they still have a choice, to grant certain demands of the nonviolent actionists although the opponents have not changed their views nor been nonviolently coerced. The accommodation may result from influences which, if continued, might have led to the conversion, nonviolent coercion, or disintegration of the opponent group.

AGENT PROVOCATEUR: A person who deliberately encourages, stimulates, or commits violence in a nonviolent struggle or other peaceful opposition activity in order to discredit, weaken or help destroy it.

BOYCOTT: Noncooperation, either socially, economically, or politically. See "economic boycott," "political boycott," and "social boycott."

CIVIL DISOBEDIENCE: A deliberate peaceful violation of particular laws, decrees, regulations, ordinances, military or police orders, and the like.

CIVILIAN-BASED DEFENSE: A defense policy for the preservation of a society's freedom against possible internal threats (as coups d'état) and external threats (as invasions) by advance preparations to resist them with nonviolent struggle applied by the whole population and the society's institutions. The aim is to deter or to defeat such attacks by making successful usurpations impossible through massive and selective noncooperation and defiance. The policy is the adoption and adaptation of the technique of nonviolent action to provide a national defense policy. The term "civilian" indicates its nonmilitary character, and also that it aims at defense of the independence and democratic character of the society and its principles by act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COERCION: The forcing or prevention of change against the opponents' will. The opponents' ability to act effectively may be taken from them as a result of the inadequacy of their own forces, as by their mutiny, or the overwhelming strength of those acting against them, as by noncooperation that paralyzes the opponents' system. See "nonviolent coercion."

CONVERSION: A change of viewpoint by the opponents against which nonviolent action has been waged, such that they come to accept the objectives of the nonviolent group. This is one of four mechanisms of change in nonviolent action.

[1] Authored by Dr. Gene Sharp, Senior Scholar-in-Residence, Albert Einstein Institution. Contact address: Dr. Gene Sharp, Albert Einstein Institution, 50 Church Street, Cambridge, MA 02138, USA.

COUP D'ÉTAT: Seizure of the physical and political control of the State machinery, usually by an elite, political, military, or paramilitary group from within or without the established government.

CULTURAL RESISTANCE: Persistent holding to the way of life, language, customs, beliefs, manners, social organization, and ways of doing things of one's people, despite pressures of another dominant culture to abandon these in favor of its ways.

DEFEND: To preserve, ward off, protect, minimize harm, maintain, and the like, in the face of hostile attack. Diverse means, military and nonmilitary, may be used with the intent to defend but regardless of other results success is measured by whether these aims are achieved.

DEFENSE: (1) Effective action taken to defend; (2) The policy or activity -- whether military or nonmilitary -- employed to defend a group, society, or country against hostile attack; (3) Resistance to attack; the opposite of offense.

DETERRENCE: The process of inducing potential attackers not to commit an attack by making it clear that it might well fail to gain its objective and that the consequences of an attack could be unacceptably costly to them. The prospect of extreme costs or failure, or both, frightens off the potential attackers from carrying out the conceivable hostile action. Usually, this term refers to conventional military deterrence or to nuclear deterrence. However, the expectation of difficulties of ruling the resisting population of an occupied country, or of one which has experienced a coup d'état, may also provide deterrence. The expected unacceptable costs may be related to capacity to defend against the attack or to ability to retaliate against the attackers, or to both. The costs may potentially be imposed by either violent or nonviolent means. Deterrence is one of several processes which can produce "dissuasion."

DETERRENT: That capacity which frightens off potential attackers, producing "deterrence."

DISINTEGRATION: The fourth mechanism of change in nonviolent action, in which the opponents are not simply coerced, but their system or government is disintegrated or falls apart. The sources of power are removed to a sufficiently extreme degree that the opponents' system or government simply dissolves.

DISSUASION: The process of inducing a person, a political group, or a government not to carry out a course of action which had been considered or planned. Rational argument, moral appeal, deterrence, distraction, and nonprovocative policies may produce dissuasion.

DYNAMICS OF NONVIOLENT ACTION: The complex general processes and interplay of forces which operate during a nonviolent struggle to produce its outcome. These dynamics of assymetrical conflict, with one side using nonviolent struggle against violent opponents, tend to produce change by four mechanisms: conversion, accommodation, nonviolent coercion, and disintegration.

ECONOMIC BOYCOTT: The withdrawal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orm of buying, selling, or handling goods or services.

ECONOMIC NONCOOPERATION: The refusal to continue or to initiate specific

types of economic relationships. It includes the economic boycott and the strike.

ECONOMIC SHUTDOWN: A suspension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a city, area, or country on a sufficient scale to produce economic paralysis.

EMBARGO: An economic boycott initiated and enforced by a government.

FAST: Refraining from eating some or all food for a limited or unlimited time for any reason, religious, health, or political.

FORCE: An application of power including sanctions to achieve some action or result. The sanctions may be threatened or imposed, and may be either violent or nonviolent.

FRATERNIZATION: Friendly personal behavior by participants in nonviolent struggle toward soldiers, police, and subordinate functionaries of the opponents while continuing both resistance and deliberate efforts to induce their disaffection and unreliability.

GENERAL RESISTANCE: In civilian-based defense, attitudes and forms of action established by advance guidelines for resistance on predetermined issues by all relevant individuals and groups. In a defense emergency this action may be implemented without specific directives from officials or a leadership group.

GENERAL STRIKE: A work stoppage by a majority of the workers in the more important industries of an area or country, intended to bring its economic life to a standstill in order to achieve desired objectives. Certain vital services, as water, fuel, food, and health, may be exempted.

GRAND STRATEGY: The broad conception which serves to coordinate and direct all appropriate and available resources (economic, political, human, moral, etc.) of the nation or other group to attain its objectives in a conflict. Grand strategy includes consideration of the rightness of the cause, evaluation and use of diverse pressures and influences, and the decision on the conditions in which to launch open struggle. Grand strategy very importantly includes the selection of the technique of conflict (or the ultimate sanction) which will be used,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waging the struggle, the allocation of general tasks to particular groups, an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to them for use in the conflict. Grand strategy also includes consideration of how the struggle relates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conflict and its long-term consequences.

HUNGER STRIKE: A refusal to eat with the aim of forcing the opponent to grant demands but without serious efforts at conversion.

INDIRECT STRATEGY: A principle of strategy based on a view that greater success may often be gained not by direct frontal assault on the opponents' centers of strength but by oblique attacks which the opponents are unprepared or unable to withstand effectively.

LOCI OF POWER: Those social groups and institutions that are able to act independently, to wield effective social or political power, or to regulate the effective power of others, especially that of other loci, the ruler, or the State. (The singular is "locus of power.") They are likely to be such bodies as families, social classes,

schools, religious groups, cultural and nationality groups, occupational groups, economic groups, courts, towns, cities, provinces and regions, smaller governmental units, voluntary organizations, and political parties.

MECHANISMS OF CHANGE: The processes by which change is achieved in successful cases of nonviolent struggle. The four mechanisms are conversion, accommodation, nonviolent coercion, and disintegration.

METHOD: The specific means of action within the technique of nonviolent action. Nearly two hundred specific methods have thus far been identified. They are classed under the categories of nonviolent protest and persuasion, social noncooperation, economic boycott, strike, political noncooperation, and nonviolent intervention.

MICRO-RESISTANCE: Nonviolent resistance by individuals acting alone or in extremely small, often temporary, groups. This type of activity enables resistance to continue against opponents applying extreme repression when larg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hich have been bases for resistance, have been neutralized, controlled, or destroyed by the usurper.

NONCOOPERATION: Acts of deliberate restriction, discontinuance, or withholding of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cooperation (or a combination of these) with a disapproved person, activity, institution, or regime. Varying sectors of the society (such as state workers, judicial officals, labor unions, etc.) may employ noncooperation, creating several subcategories. See "economic noncooperation," "political noncooperation," and "social noncooperation."

NONVIOLENCE: (1) Abstention from violence because of moral or religious principle (e.g., "he believes in nonviolence") -- which is not usually the case in nonviolent struggle; (2) The behavior of people using nonviolent action who neither initiate violence nor retaliate with it (e.g., "the demonstrators maintained their nonviolence"). Hence, "nonviolent."

NONVIOLENT ACTION: A technique of conducting protest, resistance, and intervention without violence by (a) acts of omission -- that is, the participants refuse to perform acts which they usually perform, are expected by custom to perform, or are required by law or regulation to perform; or (b) acts of commission -- that is, the participants perform acts which they usually do not perform, are not expected by custom to perform, or are forbidden by law or regulation from performing; or (c) a combination of both. The technique includes a multitude of specific methods which are grouped into three main classes: "nonviolent protest and persuasion," "noncooperation," and "nonviolent intervention."

NONVIOLENT ACTIONIST: One who is participating in an application of the technique of nonviolent action.

NONVIOLENT BLITZKRIEG: A strategy of massive and vigorous noncooperation and defiance against an invasion or coup d'état, aimed at producing a quick victory by civilian-based defense. This strategy involves a short-term campaign of total resistance with massive noncooperation and defiance by all sections of the population, approaching complete refusal by everyone of all cooperation with the usurpers' forces and measures.

NONVIOLENT COERCION: A mechanism of change in nonviolent action in which the demands are achieved against the will of the opponents but short of the disintegration of the system.

NONVIOLENT DISCIPLINE: Orderly adherence to the intended course of group activities for a nonviolent action campaign. Nonviolent discipline includes both compliance with predetermined strategy, tactics, and forms of action (if planned in advance), and maintenance of persistent nonviolent behavior even in face of repression.

NONVIOLENT INTERVENTION: Direct interference in a situation by nonviolent means, as distinguished from both symbolic protests and noncooperation. The intervention is most often physical (as a sit-in) but may be psychological,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NONVIOLENT PROTEST AND PERSUASION: A large class of methods of nonviolent action which are largely symbolic acts of peaceful opposition or attempted persuasion (as marches or picketing). These acts extend beyond verbal expressions of opinion but stop short of noncooperation (as a strike) and nonviolent intervention (as a sit-in).

NONVIOLENT RESISTANCE: Nonviolent action conducted largely by methods of noncooperation, such as the various forms of the strike, economic boycott, and political noncooperation. It thus mainly involves refusal to perform certain acts and is generally a reaction to actions or policy of opponents.

NONVIOLENT STRUGGLE: The waging of conflict by strong forms of nonviolent action, especially against determined and resourceful opponents who respond with repression and other countermeasures.

NONVIOLENT WEAPONS: The specific methods of nonviolent action, also called civil weapons.

ORGANIZED RESISTANCE: Nonviolent resistance activities which are conducted by implementing special directives from a resistance organization, or which require advance planning and group preparations to be carried out. In civilian-based defense analysis, organized resistance is contrasted with both "general resistance" and "spontaneous resistance".

PARALLEL GOVERNMENT: A rival government in the same country, which in a serious struggle is a challenge to the authority and political power of the government of the opponents. The parallel government threatens to replace the opponents' government, and may do so if it receives overwhelming support.

POLITICAL BOYCOTT: See "political noncooperation."

POLITICAL JIU-JITSU: A special process during a nonviolent struggle in which the opponents' violent thrusts throw them off balance politically, because they are met with neither violent resistance nor surrender. The result of the assymetrical conflict can be a major shift in power relationships in favor of the nonviolent struggle group. The opponents' repression, when confronted with the discipline, solidarity, and persistence of the nonviolent challengers, puts the opponents in the worst possible light. Resulting shifts of opinion against the opponents and favorable to

the nonviolent actionists are likely to occur among third parties, the general grievance group, and even the opponents' usual supporters. Those shifts of opinion may then produce both withdrawal of support for the opponents and also growth of active support for the nonviolent group. These shifts produce changes in the absolute power of each side and in their relative power relationships.

POLITICAL NONCOOPERATION: A withdrawal of usual political cooperation, obedience, or other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system under existing conditions, or a refusal to initiate new such cooperation, obedience, and participation with opponents. The action may be aimed against a specific regulation, law, policy, usurping group, regime, or foreign government.

PRINCIPLED NONVIOLENCE: One of several types of beliefs which involve the rejection of violence on the basis of an ethical, religious, or political principle. Adherence to any of these is not usual among persons applying nonviolent struggle.

SELECTIVE RESISTANCE: A strategy of civilian-based defense in which resistance is concentrated at certain vital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points or issues, or a combination of them, because of their key role in keeping the entire social and political system out of the usurpers' control. Also called "nonviolent positional war" and "resistance at key points."

SOCIAL BOYCOTT: Forms of "noncooperation" applied against persons, as distinguished from ceremonies, observances, and the like.

SOCIAL NONCOOPERATION: Refusal to carry on normal social relations, either particular or general, with persons or groups regarded as having perpetrated some wrong or injustice, or to comply with certain behavior patterns or social practices.

SOURCES OF POWER: The origins of political power. They include: authority, human resources, skills and knowledge, intangible factors, material resources and sanctions. These are external to the person of the ruler or other power-holder, and derive from the society. Ea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and dependent upon the acceptance, cooperation, and obedience of the population and the society's institutions. Consequently, if these sources are restricted or denied by the refusal of the population to provide them, the ruler's power will be restricted or politically starved out of existence.

SPONTANEOUS RESISTANCE: Resistance which occurs without advance planning or organization, and without the decision of any special leadership group.

STRATEGY: The conception of how best to achieve objectives in a conflict. Strategy is concerned with whether, when, and how to fight, and how to achieve maximum effectiveness in a conflict in order to gain certain ends. Strategy is the plan for the practical distribution, adaptation, and application of available means to attain desired objectives. Applied to the course of struggle itself, strategy is the basic idea of how the battle or campaign shall develop, and how its separate components shall be fitted together to contribute most advantageously to achieve its objectives. Strategy in this application involves: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likely to follow from particular actions; the development of a broad plan of operations; the skillful determination of the deployment of combat groups in various smaller actions; consider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success in the operation of the chosen technique; and making good use of success. Strategy operates within the scope of the

grand strategy. Tactics and methods of action are used to implement the strategy. Tactics and methods need to be chosen and applied carefully so that they really assist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y and contribute to achieving the requirements for success -- not to be the result of thoughtless improvisation or unconsidered incorporation of specific types of action already used, unless they serve the strategic objective. In formulating strategy in nonviolent action, the following element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one's own objectives, resources, and strength the opponents' objectives, resources, and strength; the actual and possible roles of third parties; the opponents' various possible courses and means of action; and one's own various possible courses and means of action -- both offensive and defensive; the requirements for success with this technique, its qualities of dynamism, and its mechanisms of change. Hence, "strategic."

TACTIC: A limited plan of action, based on a conception of how in a restricted phase of a conflict to use most effectively the available means of fighting to achieve a limited objective as part of the wider strategy in the conflict.

TECHNIQUE: A broad means of conducting social or political action or struggle. Examples include parliamentary democracy, guerrilla war, conventional war, and nonviolent action.

TOTAL NONCOOPERATION: A suggested strategy for civilian-based defense involving the refusal of all cooperation with the usurpers—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TRANSARMAMENT: The process of change-over from a military armaments or defense system to a civilian-based defense. Transarmament always involves the replacement of one means to provide defense with another, and is not, as with disarmament, the simple reduction or abandonment of military capacity.

UNARMED: (1) Deprived of or without "armaments," usually understood as military armaments; (2) Lacking "arms" or "weapons" that protect, help, or strengthen in a conflict or during an attack, connoting helplessness and powerlessness. The term is therefore inappropriate for describing nonviolent struggle or civilian-based defense.

USURPATION: An unlawful or illegitimate seizure of control of the State by domestic or foreign forces, especially by coup d'état or invasion.

USURPERS: The group or government which has attempted to carry out a usurpation.

VIOLENCE: The foreseen infliction of physical injury or death on persons by any means, or the threat to inflict such harm, including the restriction of the person's freedom of movement by such acts or threats. Action and behavior are not divisible into only "violence" and "nonviolence." For instance, damage to material property is quite distinct from injury to persons (violence), but is still not nonviolent action. "Psychological violence" is also a separate category from physical violence.

WEAPONS: The tools or means, not necessarily material, which may be used in fighting, whether in military or nonviolent conflicts. Hence, "the weapon of economic boycott."